20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02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020. 09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주 관 기 관 : ㈜스토리미디어랩
연구 책임자 : 공병훈(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참여 연구원 : 조정미((주)스토리미디어랩 대표/공동연구원)
이민우(뉴스페이퍼 대표/보조연구원)
협 조 인 력 : 김보관(뉴스페이퍼 기자)

연구개요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연구목적 및 연구과제

○ 이 연구는 문예지 게재, 원고료 지급, 단행본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에 대한 문단의 불공정 사례 실태 및 문단의 인식 등에 대한 조사로 실행되었으며, 문단의 창작 발표물 발표 등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해 차기년도 사업 공고 및 실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과제

- 과제 1 : 원고 또는 작품 창작 절차 및 선정 기준 실태 조사
- 과제 2 : 원고료 등 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 지급 실태 조사
- 과제 3 : 현 문단의 불공정 사례 실태 및 이에 대한 문단의 인식 조사

■ 연구설계 및 추진방법

○ 이 연구는 첫째, 문학 생태계 관점, 둘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귀납적 연구, 셋째, 창작활동 불공정 관생에 대한 현장 연구, 넷째, 문예지/미디어 연구자와 문학 창작자들의 융합적 연구 등 네 가지 접근법을 적용함

- (문헌분석) 문화지원정책 자료, 정책사업결과 보고서, 정책 연구보고서와 논문, 저작권법, 저작권위원회 연구보고서, 불공정 사례 판례, 언론사 뉴스 자료 등의 자료들을 분석함
- (전문가 심층면접)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창작자 12명을 대상으로 하여 ①문예지 원고청탁, 작품발표 및 창작대가 지급과정에서의 불공정, ②작품집 발간계약 등 출판과정에서의 불공정, ③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서의 불공정, ④문학상과 유사 공모제도 참여와 저작권에서의 불공정, ⑤불공정 관행에 대한 창작자 인식 등을 내용으로 진행함
- (문학 창작자 설문조사)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동요, 동화, 평론, 장르문학, 웹소설 등에서 활동하는 문학창작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표본 2,126명, 유효표본 1,523명의 응답을 수집하고 분석함
- (문학 출판 관련자 심층면접) 문학 창작자 대상의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문예지와 문학출판사 측면의 인식과 개선방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예지/출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면접(depth interview)을 실행하였으며, 총 9개의 문예지가 참가함

■ 분석결과

○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불공정 관행은 문예지 게재, 문학도서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 모두에서 그 과정을 통해 발생되고 있음. 심층면접의 내용은 '문예지 발간, 문학도서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에서의 지배적 지위가 과도하게 남용되어 문학 생태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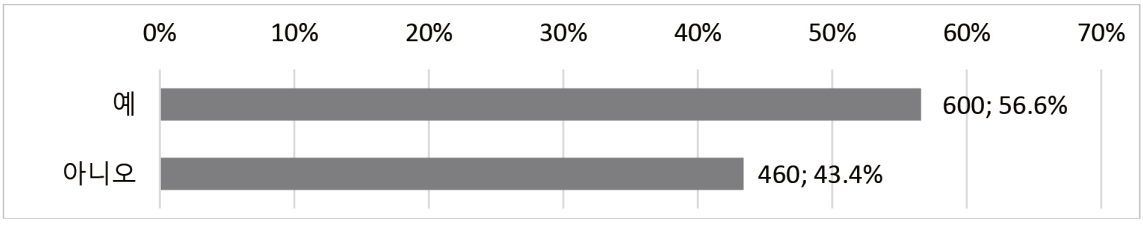
자유로움과 공정함, 투명성과 존중, 그리고 대화에 기초를 둔 공동 협력을 통해 작동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 문예지 게재 원고청탁서와 문학도서 출판과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그리고 공모전과 문학상이 공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 제기됨. 문학 창작자가 존중받으며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창작 대가에서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관점에서 '계약'이라는 사안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불공정 관행과 개선을 위한 실천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요구를 대변할 단체가 부재하거나 기존 단체들이 그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 작가들의 집합적 활동과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정보와 교육, 컨설팅 등이 필요함
- 문예지, 문학도서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을 운영하는 출판사와 개인들이 저작권법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불공정관행에 대해 인식과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규범과 강제성이 마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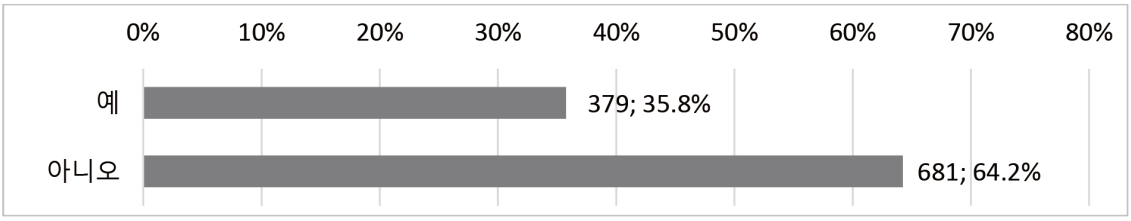
○ (문학 창작자 설문조사 결과)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은 문예지, 문학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 등의 모든 분야에서, '원고청탁에서부터 문예지 작품 게재와 보상, 문학 출판 계약에서 인세 지급, 공모전과 문학상 선정'이라는 모든 과정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설문조사에서 드러남

- (원고청탁서와 출판권설정계약서) 작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로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부실한 상태임
- (문예지 불공정관행 유형) 창작자의 56.6%가 원고청탁서 없이 구두로만 청탁받은 경험이 있으며, 35.8%는 원고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68.6%는 원고료를 다른 물건으로 받거나 기금납부를 요구받았으며, 25.4%는 문예지 원고게재를 조건으로 대량의 문예지 구입 및 금품지급, 의무없는 일을 강요받음

[그림 1] 구두로만 청탁받은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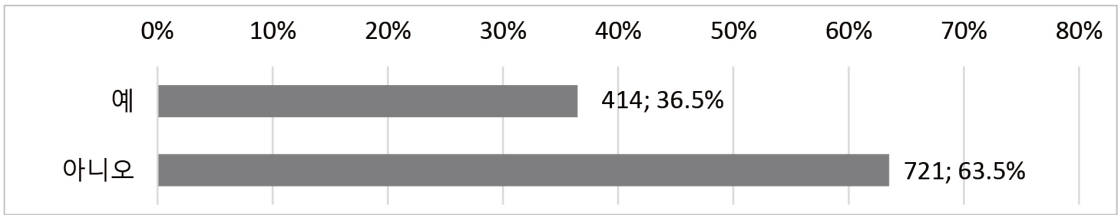


[그림 2] 원고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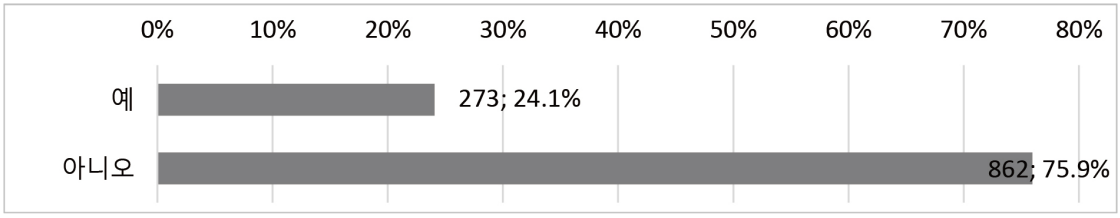


- (문학 출판 불공정관행 유형) 창작자의 13.6%는 문학 도서 출판 과정에서 구두로만 계약하고 출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4.1%는 무리한 원고집필 일정을 요구받았음. 11.2%는 출판 계약 과정에서 강압과 강요를 경험하였으며, 52.9%는 인세와 판매량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음. 36.5%는 인세를 현금이 아닌 기타 물건으로 지급받은 경험이 있고, 15.9%는 자신의 책을 다량 구입할 것을 강요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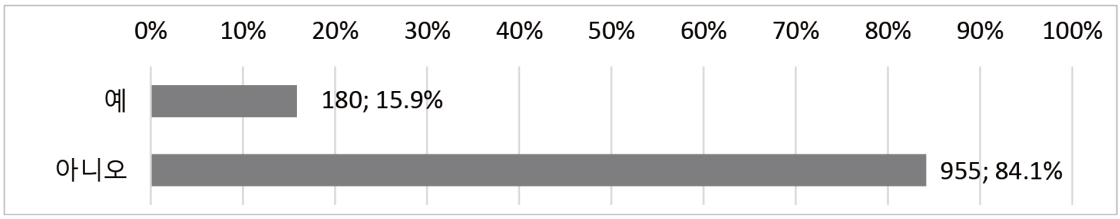
[그림 3] 인세를 현금이 아닌 기타 물건으로 지급받은 경험여부



[그림 4] 무리한 원고 집필 일정을 요구받은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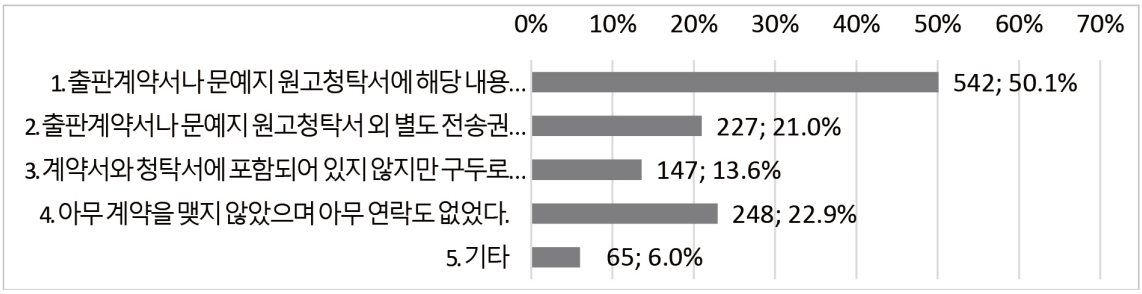


[그림 5] 자신의 책을 다량 구입할 것을 강요받은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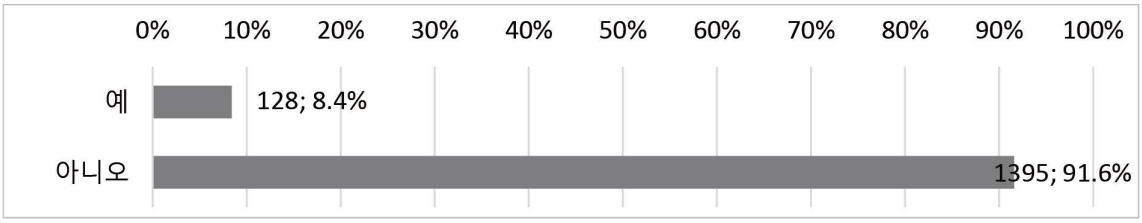


- (창작자의 불공정 사례 대응방식) 창작자들은 원고료 지급이 늦어지거나 인세 발생 및 판매량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상의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 해도 문예지/출판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고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는 문학생태계의 관례화된 사회적 관계와, 문학창작자 스스로의 권리 인식의 부족, 정보의 교류 및 학습과 집합적 활동과 노력이 불가능한 고립된 활동 양식 등으로 분석됨
- (2차 저작권과 전송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2차 저작권과 전송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창작자의 별도의 구체적인 계약 없이 출판권설정계약이나 원고청탁서의 부속 내용으로 간략히 취급되며,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작가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함. 창작자의 8.4%는 불공정한 2차 저작권과 전송권 계약을 거부하였다가 출판계약이 중도에 파기되는 경험이 있음

[그림 6] 디지털 형태 전송에 대한 계약 체결 방식(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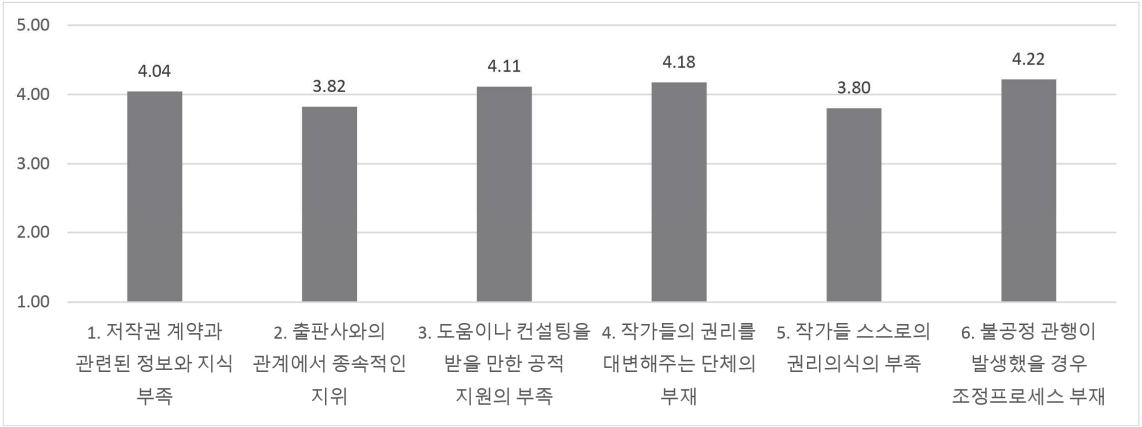


[그림 7] 2차 저작물 전송권 계약 거부시 출판 계약이 중도 파기되는 경험 여부



- (2차 저작권과 전송권) 창작자들은 2차 저작권과 전송권과 관련되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불공정 관행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프로세스의 부재', '작가들의 권리를 대변해주는 단체의 부재', '도움이나 컨설팅을 받을 만한 공적 지원의 부족'과 같은 와 같은 외부 시스템의 문제를 '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의 부족', '작가들 스스로의 권리의식의 부족'과 같은 작가 내부적인 문제보다 중요하게 생각함

[그림 8]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관련 작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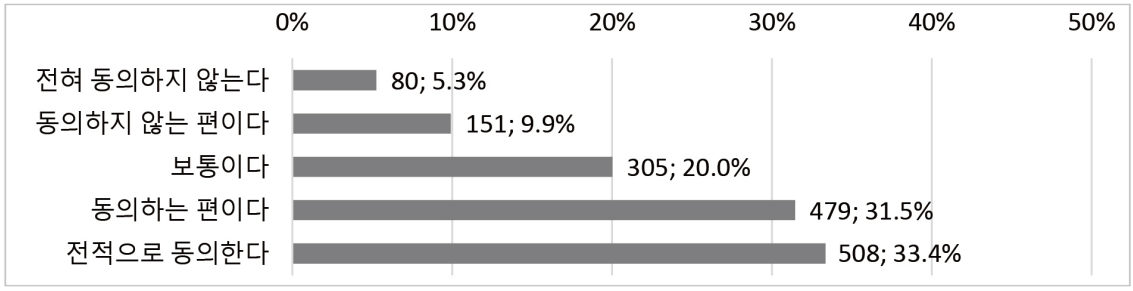


- (공모전과 문학상) 문학상 수상경험이 있는 창작자의 17.5%는 수상 상금을 행사비나 뒷풀이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체 창작자의 5.2%는 문학상/창작기금 심의를 미끼로 금품요구나 의무없는 일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음. '뚜렷하지 않은 수상자 선정기준'과 '심사위원과 수상자의 관련성(학연, 지연)', '상금을 선인세로 적용하는 관례'를 공모전/문학상의 불공정 관행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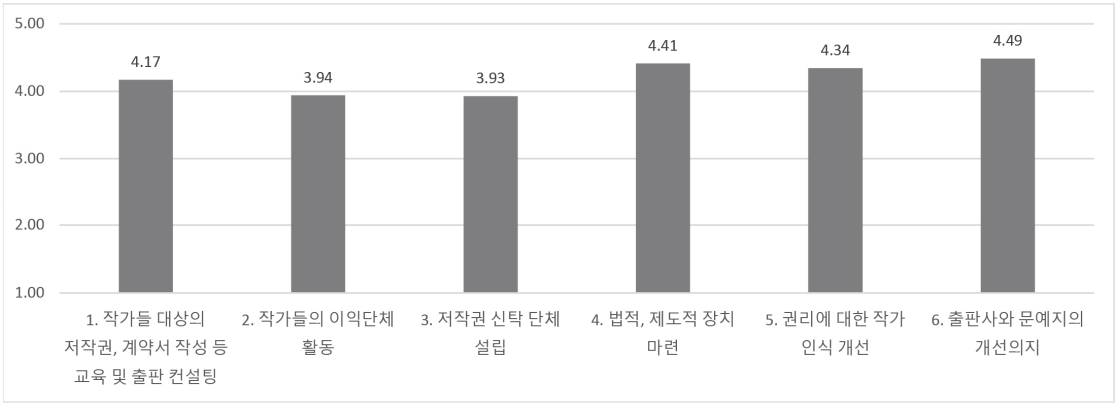
생의 중요 요인이라고 동의함

- (불공정 관행 발생 패턴)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은 창작자들의 대표활동 장르, 연령대, 성별, 협회 및 단체 소속여부에 따라 경험하고 있는 정도가 다르며 일정한 특징적 패턴을 보이고 있음
- (대표활동 장르와 불공정 관행) 대표활동 장르로는 시조시인, 시인, 수필가가 더 많은 불공정 관행을 경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그림책 작가, 동화 작가가 덜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아동문학 작가의 권리를 위한 단체 활동의 결과로 분석됨
- (불공정 관행 개선의지) 작가가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매우 커지고 있지만, 창작자들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 문예지의 자발적인 변화의지나, 정책적 도움과 같은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수준이 머물러 있음. 자발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보다는 정책적 기준과 체계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그림 9] 작가는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그림 10] 불공정 관행의 개선방법에 대한 동의 정도



○ (문학 출판 관련자 심층면접 결과) 심층면접에 참여한 문예지와 출판사의 경우 '문예지발간지원사업'에 선정된 곳으로서 비교적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불공정 관행이라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음

- 변화하는 출판환경에서 창작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송권, 2차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판사 역시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건강한 문학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갖지 못한 상태임
- 문예지/출판사와 작가 사이에서 상호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에, 최근 창작자

의 저작권과 권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예술인의 권리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는 과정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창작자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대해 어려움을 느낌

- 창작자의 입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문예지/출판사의 열악한 운영 현황이나 문예지/출판사가 겪고 있는 불공정 관행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를 제시하기도 함

■ 결론 및 실행전략

○ (정책적 제안) 문학 분야는 작품이 창작되고 문예지에 게재되거나 단행본으로 출판되며 문학상을 수상하는 일련의 과정이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적 공정성**과,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문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이 상호 존중적이며 협의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공정성**과,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창작활동의 대가에 대한 **분배 공정성**이 '공정성 규범(Equity Norm)'으로서 정착될 필요가 있음

○ 공정성 규범이 정책적, 사회적으로 적용되지 위한 노력과 함께 문학 창작자들의 인식의 변화와 집합적 활동과 실천의 활성화를 통해 문학 생태계가 공동의 협력으로 투명성과 존중, 그리고 대화에 기초하여 성장해야 함

- (표준원고청탁서) 표준 원고 청탁서를 만들어 공표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은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하며, 차기년도 지원심사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 곳을 대상으로 함. 표준 원고 청탁서에는 원고료 액수, 원고료 지급일, 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야 함. 표준 원고청탁서의 사용 여부가 신뢰할 수 있는 문예지의 판단 척도로 사용되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출판계약 운영개선) 출판과정 불공정 관행 사례를 유형화 하고 방지대책을 매뉴얼화하며, 신인 작가들 대상의 출판계약 불공정 관행 방지 교육에 교재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관련 계약은 출판계약과 별도로 맺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문학 출판사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며 공동의 노력 촉구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정례적인 불공정 관행 사례 수집 발굴 및 사례 공유 프로세스화 할 필요가 있음
- (작가 교육) 청탁문제와 문학도서 출판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는 신입 작가들이 이것이 불공정 관행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연 1회 오프라인 교육과 상시 언택트 교육 등을 통해 공공 기관에서 등단작가와, 신인작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과 저작권에 대한 강의를 시행해야 함
- (작가 DB 운영) 원고 청탁시 폭넓은 작가를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작가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소수의 편집위원 등의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청탁이 진행되는 까닭에 자연스럽게 쏠림 현상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문학 발표 이력이나, 문학 경향, 자료가 될 만한 평론 등이 제시되어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작가DB의 운영 사례로는 네이버 인물DB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작가 스스로 정보를 등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운영자가 검토하여 공개하는 프로세스임. 작가 스스로 소개하고 싶은 문학작품을 게재할 수 있으며, 유료 강의나 수업, 체험 프로그램 등을 등록하여 작가와 독자, 사업자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작가 플랫폼으로서 작동하게 함
- (저작권법 개정 관련)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창작자 대상의 교육이 실시

될 필요가 있음.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교육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조성되어야 함

- (작가를 위한 지원) 신뢰할 수 있는 저작권 신탁 단체나 작가들을 이익을 대변할 곳이 필요함. 특히 저작권 법 개정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저작권 신탁 단체는 단순한 관리 차원의 업무가 아닌, 문학작품이 2차 저작물로서 전 산업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함. 또한, 작가들이 저작권 문제를 상담할 변호사 혹은 법적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이름과 실명을 공개해야하는 상황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 (문학상과 공모전의 가이드라인 보완) 2014년에 제정된 '콘텐츠 공모전 표준 가이드라인'에 문학분야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금과 선인세 관련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보완될 내용은 첫째, 문학상 수상과 출판은 별도 사안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둘째, 문학상 상금은 선인세와 구분되어야 하며, 셋째, 수상작의 출판계약 및 2차 저작권과 전송권 관련 협의는 공모전과 별도로 작가와 협의되어야 한다는 것임
- (작품 인증) 현행 작가 지원 제도에서 종이책 형태의 출판경력을 자격요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화하는 출판환경을 반영하여 웹진의 원고 게재나 전자책 형태의 출판물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연구의 특장점과 활용에 대한 제언

- 처음 이루어진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에 대한 창작자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문학 생태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학 창작자의 시각과 요구에 기반한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으며,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함으로써 균형감 있고 현장감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었음
- 문학 생태계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나 현상들에 대한 실증적 자료로서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문학분야에 있어서의 불공정 관행을 이론적 근거에 입각하여 ①원고청탁 및 작품 발표과정, ②문학도서 출판과정, ③전송권과 2차 저작권, ④공모전과 문학상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분류된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은 각각의 상황과 조건, 과정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으며, 향후 각 분야별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활용이 가능함

○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 본 연구는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을 둘러싼 창작자 중심의 실태조사로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로 나아가는 데에는 한계를 지님
- 불공정 관행을 둘러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률적, 정책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함. 예를 들어 전송권 및 2차 저작권과 관련된 창작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직업으로서의 문학창작자들의 권리에 대한 보장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협의와 현장 적용이 가능한 원고청탁서, 출판계약서, 전송권과 2차 저작권, 문학상 관련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권장안이 개발되어야 함
-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문학 향유자 또는 콘텐츠 사용자의 진화 역시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문학 창작자의 창작 방식이나 환경, 독자와의 소통 방식, 유통 방식도 급격

한 변화를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미래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함

- 최근 2차 저작권이나 전송권 분야에서 창작자들이 경험하는 불공정 관행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도 법률적, 정책적, 산업적 측면의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2차 저작권이나 전송권 영역은 권리의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문학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 문학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 연구 제목과 기간 02

제2절 : 연구 배경 02

제3절 : 연구의 필요성 03

제4절 : 연구 목표 03

제5절 : 연구 방향 03

제6절 : 기대 효과 04

제2장.
연구 내용과 방법

제1절 : 연구 범위 06

1. 문예지 게재, 작품집 발간,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 실태 06

2. 문학 생태계에 참여하는 문예지, 출판사, 단체와 창작자 06

제2절 : 연구 과제 06

제3절 : 연구의 관점 06
1. 문학 생태계 관점에서의 연구 07
2.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귀납적 연구 07
3. 창작활동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현장 연구 07
4. 문예지/미디어 연구자와 문학 창작자들의 융합적 연구 08

제4절 : 연구 설계 08

제5절 : 추진 방법 09
1. 문헌조사 09
2. 전문가 심층면접 10
3. 문학 창작자 설문조사 11
4. 문학 출판 관련자 심층면접 13

제3장.
이론 및 선행 연구 분석

제1절 : 콘텐츠 산업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논의 16

제2절 : 문학 생태계 불공정 관행 분석의 이론 프레임워크 17
1.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와 문화 자본 이론 18

2. 공정성 이론 19

제3절 : 등단 제도에 대한 논의 20
1. 추천에 의한 등단 방식 20
2. 신춘문예 등단 방식 21

제4절 : 문학상에 대한 논의 22

제5절 : 출판권과 2차적 저작권, 전송권 논의 24
1. 출판권과 저작권 24
2. 전송권과 저작권 26
3. 2차적 저작권 27

제4장.
전문가 심층면접 분석 결과

제1절 : 문예지 게재: 원고청탁 및 작품 발표, 창작 대가 지급 과정 31

제2절 : 문학도서 출판: 작품집 발간과 계약 등 출판과정 32

제3절 : 전송권과 2차 저작권 33

제4절 : 공모전과 문학상 34

제5절 : 불공정 관행 인식 35

제6절 : 소결과 시사점 37
1. 소결 37
2. 시사점 38

제5장.
문학 창작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1절 : 분석 대상 40

제2절 : 설문조사 분석 40
1. 설문 참여자 정보 40
2. 원고청탁 및 작품 발표 과정 43
3. 문학도서 출판 과정 52
4. 전송권과 2차 저작권 61
5. 공모전과 문학상 66
6. 기타사항 69

제3절 : 소결과 시사점 73
1. 소결 73
2. 시사점 75

제6장.
문학 출판 관련자 심층면접 분석 결과

제1절 : 분석대상 78

제2절 : 분석 결과 78
1. 면접 참여자 78
2. 불공정 관행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79
3. 원고청탁, 출판 계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사항 81
4.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기타 제안 의견 82

제3절 : 소결 83

제7장.
결론 및 실행 전략

제1절 : 연구 결과 85
1.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85
2. 문학 창작자 설문조사 86
3. 문학 출판 관련자 심층면접 결과 87

제2절 : 정책적 제안 88

제3절 : 연구의 특장점과 활용에 대한 제언 90

제4절 :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90

참고문헌 92
[부록1] 문학 창작자 설문조사 설문지 94
[부록2] 전문가 심층면접 내용 105

표 목차

[표 2-1] 전문가 심층면접 참여자 10
[표 2-2] 전문가 심층면접 질문 내용 11
[표 2-3] 문학창작자 설문조사 기본 내용 12
[표 2-4] 설문 항목 구성 13
[표 2-5] 온라인 심층면접 기본 내용 14

[표 3-1] 주관 주체 기준 문학상 구분 23

[표 4-1] 원고청탁 및 작품 발표 창작 대가 지급과정 관련 심층면접 내용 정리 31
[표 4-2] 작품집 발간과 계약 등 출판과정 관련 심층면접 내용 정리 32
[표 4-3] 2차 저작권 관련 심층면접 내용 정리 33
[표 4-4] 문학상과 유사 공모제도 참여와 저작권 관련 심층면접 내용 정리 34
[표 4-5] 불공정 관행 인식 내용 36

[표 5-1]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계약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항목들에 대한 동의 정도 64

[표 6-1] 면접 참여자 명단/소속 문예지/직위 78
[표 6-2] 불공정관행 지적사항에 대한 문예지의 개선계획(1) 79
[표 6-3] 불공정관행 지적사항에 대한 문예지의 개선계획(2) 80
[표 6-4] 불공정관행 지적사항에 대한 문예지의 개선계획(3) 81
[표 6-5] 원고청탁 출판계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사항 82
[표 6-6]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기타 제안 의견 83

그림 목차

[그림 2-1] 창작활동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연구 설계 09

[그림 3-1]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거래 구조적 특성 17
[그림 3-2]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이론의 구조 18
[그림 3-3] 문화 자본과 행위자의 장(場) 전략 관계 19
[그림 3-4] 공정성 이론의 구성 19
[그림 3-5] 등단 방식과 변화 과정 21

[그림 5-1] 설문 참가자 성별 40
[그림 5-2] 설문 참가자 연령대별 40
[그림 5-3] 창작자 자신이 판단한 창작활동의 범주(복수선택) 41
[그림 5-4] 설문 참가자 대표적 창작활동 42
[그림 5-5] 이외의 대표적 활동(복수선택) 42
[그림 5-6] 문학 관련 협회/단체 가입여부 43
[그림 5-7] 문예지 원고 게재 경험 43
[그림 5-8] 원고청탁서를 받는 비율 44
[그림 5-9] 원고청탁서에 수록된 내용 44
[그림 5-10] 구두로만 청탁받은 경험 비율 45
[그림 5-11] 구두 청탁 후 청탁서가 오지 않아 발표 시기를 놓친 경험 45
[그림 5-12] 구두 청탁이 실제 원고 게재로 연결되지 않은 비율 46
[그림 5-13] 원고청탁서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46
[그림 5-14] 원고청탁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 47
[그림 5-15] 원고료 지급 시기 47
[그림 5-16] 원고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험 여부 48

[그림 5-17] 원고료 지급이 지연될 때 문예지에 원고료 지급을 요청한 경험 여부 48
[그림 5-18] 원고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받거나 기금 납부를 요구받은 경험여부 50
[그림 5-19] 대량의 문예지 구입 및 금품지급,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은 경험 여부 50
[그림 5-20] 문예지 원고가 전자책인터넷웹진에 게재된다는 것을 사전에 전달받은 정도 51
[그림 5-21] 전자책인터넷웹진 게재 사실을 사전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52
[그림 5-22] 문학분야 도서 출간 경험 52
[그림 5-23] 출간한 문학도서의 분류(복수선택) 53
[그림 5-24] 문학도서 출간 시 출판계약서 작성시기(복수선택) 53
[그림 5-25] 바람직한 출판계약서 작성 시기 54
[그림 5-26] 출판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 수준 54
[그림 5-27] 출판계약서 각 항목들의 수록 정도와 계약 이후의 준수 정도 비교 55
[그림 5-28] 출판 계약 과정에서의 강압과 강요 경험 여부 56
[그림 5-29] 출판계약서 불공정 항목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수정 요구 경험 정도 56
[그림 5-30] 도서 출간 이후 인세 발생과 판매량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정도 57
[그림 5-31] 정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출판사에 보고를 요청한 경험 정도 58
[그림 5-32] 인세를 현금이 아닌 기타 물건으로 지급받은 경험여부 59
[그림 5-33] 무리한 원고 집필 일정을 요구받은 경험 여부 60
[그림 5-34] 출판사 임의로 작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계약 체결 경험 여부 60
[그림 5-35] 차기 작품도 동일 출판사에서 내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험 여부 60
[그림 5-36] 자신의 책을 다량 구입할 것을 강요받은 경험 여부 61
[그림 5-37] 디지털 형태로 유통(전송)된 경험 여부 61
[그림 5-38] 전송(유통)된 디지털 형태의 종류(복수응답) 62
[그림 5-39] 디지털 형태 전송에 대한 계약 체결 방식(복수응답) 62
[그림 5-40] 전송권과 2차저작권 내용에 대한 출판사의 충분한 설명 정도 63

[그림 5-41]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관련 작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동의 정도 64
[그림 5-42] 2차 저작물 전송권 계약 거부시 출판 계약이 중도 파기되는 경험 여부 65
[그림 5-43] 공모전과 문학상 수상 경험 여부 66
[그림 5-44] 수상 상금을 행사비나 뒤풀이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받은 경험 67
[그림 5-45] 공모전과 문학상 불공정 관행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항목들에 대한 동의 정도 67
[그림 5-46] 문학상/창작기금 심의를 미끼로 금품요구,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한 경험 여부 68
[그림 5-47] 작가는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69
[그림 5-48] 불공정 관행의 개선방법에 대한 동의 정도 70
[그림 5-49] 민간 영역의 문예지와 문학 출판에서의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존재 71
[그림 7-1] 문학분야 공정성 규범의 3대 영역 88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제목과 기간

■ 연구제목 :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창작 작품 발표 과정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20. 5. 11. ~ 8. 14.

제2절 연구 배경

■ 2020년 1월초 김금희 작가의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사태 등으로 불거진 문학분야 문예지, 출판사 등의 불공정 관행 타파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발생[1]으로 창작자의 저작권과 권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예술인의 권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름

■ 출판사와 문예지, 문학 창작자 중심의 문학 생태계가 웹툰·웹소설·방송·영상 콘텐츠와 융합되고 플랫폼 중요도가 높아지는 새로운 지형이 형성됨. 스마트폰과 플랫폼 중심의 사용자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 소비 방식이 본격화됨

■ 문예지 100주년을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전통적 동인 활동의 모델은 약화되고 문예지와 문단, 출판사와 출판자본을 중심으로 문학 산업이 형성된 상황에서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타파와 개선에 요구가 제기됨

■ 개선 요구는 구체적으로 문학 생태계의 등단, 문예지 게재, 단행본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Adaptation Right,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공모전과 문학상을 둘러싼 불공정관행에 집중됨

■ 등단과 비등단을 넘어선 독립 문학창작 커뮤니티들과 독립 출판과 독립 문예지, 새로운 특징을 지닌 콘텐츠 창작자들이 출현하고 문학 생태계의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다양성이 증가하는 상황임

■ 2018년 국내 문학 출판은 9,701권으로서 3년 연속 꾸준한 증가세이며 소설 3,705권(38.2%), 시 3,321권(34.2%), 수필/산문 2,207(28.6%), 평론/인문연구서 238권(3.1%) 등임. 출판사, 문예지와 창작자들 사이의 불공정 관행도 함께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 발생. 2017년 715종, 2018년 712종으로 3종이 줄고 권 수도 전년도에 비해 27권이 줄음. 2018년 문학 잡지 중 대표 장르가 시인 잡지가 534종(75.0%)으로 가장 많음. 다음은 수필/산문이 90종으로 12.6%, 평론/인문연구서가 72종(10.1%), 소설이 16종(2.2%)임[2]

1) 김보관 (2020). 이상문학상 저작권 논란 '문학사상사' 보이콧 운동 이어져... 김금희, 윤이형, 최은영, 이기호 작가 양심선언 이후 물결 일파만파. <뉴스페이퍼>, 2020.2.2.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문예연감2019』, 2020년 3월, pp.111-131.

제3절 연구의 필요성

■ 문예지·출판사·문학상과 관련된 문학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과 창작자 권리 주장 요구가 증가하고, 공고한 전통적 문학권력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됨

■ 문예지·출판사·문학상을 둘러싼 참여자와 문학 창작자들의 '불공정 관행 개선와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와 인식 변화'를 통한 공정한 관계가 변화된 문학 생태계 지형의 성장과 콘텐츠 산업의 기반으로서의 문학 창작 활동을 위한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원고료 지원사업인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한 문학계의 창작작품 발표에 대한 문예지와 작품집 등의 발표 과정, 창작활동 대가 지급, 창작자의 권리 보호 등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성 제기됨

■ 창작자와 문예지·출판사 사이의 공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인식, 개선안, 의견에 분석이 요구됨

제4절 연구 목표

■ 문예지 게재, 문학도서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 등에 관한 문단의 불공정 사례 실태 및 문단의 인식 등에 대한 연구 조사. 본 연구는 불공정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실태 및 인식 조사임

■ 문단의 창작결과물 발표 등 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차기년도 사업공모 및 사업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제5절 연구 방향

■ 첫째, 문학 생태계의 주요 행위자인 작가와 문예지/출판사와 공정, 또는 불공정 관계에 대한 분석

■ 둘째, 작가의 문학 창작 활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와 계약 관계의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근거와 기반을 마련

■ 셋째, 문학상, 문예지 게재, 단행본 출판, 2차 저작권이 문학 생태계를 성장하며 창작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마련

제6절 기대효과

■ 2021년 문예기금 공모사업 문예지발간지원사업 개선에 반영하여,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운영 평가기준 및 공모사업 심의기준 개선 근거로 활용함

■ 문예지발간지원사업 또는 작품 출판사업의 새로운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원고 또는 작품 발표 과정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도출함

■ 문단의 불공정 관행 실태 공유 및 관련 단체의 사업운영을 개선하여 문예지, 출판사, 단체, 창작자의 인식 변화와 공정한 관계를 형성함

■ 유연하고 개방적인 문학생태계를 조성하여 문학의 창작, 유통, 사용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고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문학생태계의 적응과 진화를 위한 계기점을 마련하며, 독립 문학창작 커뮤니티의 활동과 문학생태계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

제2장

연구 내용과 방법

제1절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불공정 관행과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창작 작품 발표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다음 두 가지 연구 범위를 설정함

1. 문예지 게재, 작품집 발간,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 실태

■ 창작 작품 발표 과정을 중심으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는 주된 요소인 문예지 게재, 문학도서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 등을 연구 범위로 정함

2. 문학 생태계에 참여하는 문예지, 출판사, 단체와 창작자

■ 불공정관행이 벌어지는 현장과 사례의 참여자들인 문예지, 출판사, 단체, 창작자를 우리의 연구 범위로 함
■ 공적기금을 통한 문학지원사업 선정된 사례와 미선정 사례를 모두 포함하며, '창작자(작가 등의 문인)'와 '출판사, 문예지, 단체'로 이분화된 구조에서 조사함

제2절 연구 과제

■ 과제 1 : 원고 또는 작품 창작 절차 및 선정 기준 실태 조사
■ 과제 2 : 원고료 등 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 지급 실태 조사
■ 과제 3 : 현 문단의 불공정 사례 실태 및 이에 대한 문단의 인식 조사

제3절 연구의 관점

■ 이 연구는 첫째, 문학 생태계 관점, 둘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귀납적 연구, 셋째, 창작활동 불

공정 관행에 대한 현장 연구, 넷째, 문예지/미디어 연구자와 문학 창작자들의 융합적 연구 등 네 가지 접근법을 적용하여 설계됨

1. 문학 생태계 관점에서의 연구

■ 문학 생태계는 변화하는 기술·미디어·정책 환경에서 '문학 창작과 작품 발표, 문예지와 문학상, 작품집 출판·유통과 독자의 문학 소비'라는 참여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하는 특정한 체계임

■ 문학 생태계에 대해 문학 창작과 작품을 둘러싼 창조적 공유지(creative commons)[3] 관점에서 창작 작품 발표 과정의 불공정 관행 개선 위한 실태조사와 인식을 연구함

2.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귀납적 연구

■ 창작활동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는 문학 창작을 둘러싼 문예지, 출판사, 단체, 창작자들에 대한 '양적조사로서의 설문조사'와 '질적조사로서의 심층면접'을 통해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일반화하고 이론화하는 과정의 귀납적 연구방법(inductive reasoning)으로 진행함

3. 창작활동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현장 연구

■ 창작활동 불공정 관행은, 문학 생태계가 창조적 공유지로서 작동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미디어와 사회의 변화 과정을 통해 적응하고 변화하는 문학 생태계에서 변화와 개선을 위한 이해와 지식을 구하며 실천적 활동을 중요시하는 현장 연구(action research)의 철학에 기반함

■ 현장 밀착 이론 생산 활동(theory-generating activity)은 문학 생태계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자연스럽고 구체적 활동과 현상들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분석을 가져다 주며, 현장으로부터 추상으로 개념체계를 범주화하여 이론을 형성하여 행위자들간 상호작용이 만드는 패턴과 특징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임

3) 공병훈은 장용호의 창조성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창조적 공유지'에 대한 콘텐츠 산업이나 게임 산업과 같이 불확실성이 강한 창조적 시장 공간에서는 기존 지식과 질서를 파괴하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함께 지식이 학습 · 창조 · 가공 · 실험 · 공유되는 끊임없는 혁신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은 생산과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와 지식이 축적되며 또 다시 새로운 참여자와 지식을 끌어들여 집합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디어와 지식이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는 체계로서 '창조적 공유지'를 의미한다. '창조적 공유지'는 집단적 참여를 통해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기존의 것을 결합하고 생성하는 체계이며, 새로운 참여자와 지식을 끌어들여 집합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는 체계로서의 창조성을 위한 플랫폼이라 정의할 수 있다(공병훈, 「앱(APP) 가치 네트워크의 지식 생태계 모델 연구: 앱 창작/생산 커뮤니티의 집합적 체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pp.6-8).

4. 문예지/미디어 연구자와 문학 창작자들의 융합적 연구

■ 문예지와 문단에 대한 이론과 현장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인문학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본 연구진은 정부의 문학지원사업 및 문학커뮤니티, 창작자와 잡지, 출판,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10년 이상의 지속된 이론과 현장을 결합한 융합적 연구를 수행해옴

■ 본 연구진은 연구자와 문학전문기자, 문학창작자들의 협업에 기반한 이론과 현장의 융합적 연구로 진행하며 기관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적 관계를 통해 과제를 수행함

제4절 연구설계

■ 이 연구는 첫째, 문학 생태계 관점, 둘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귀납적 연구, 셋째, 창작활동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현장 연구, 넷째, 문예지/미디어 연구자와 문학 창작자들의 융합적 연구 등 네 가지 접근법을 적용하여 설계됨

■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문헌 조사, 전문가 심층면접, 창작자 설문조사, 문학 출판 관련자 심층면접 등 4가지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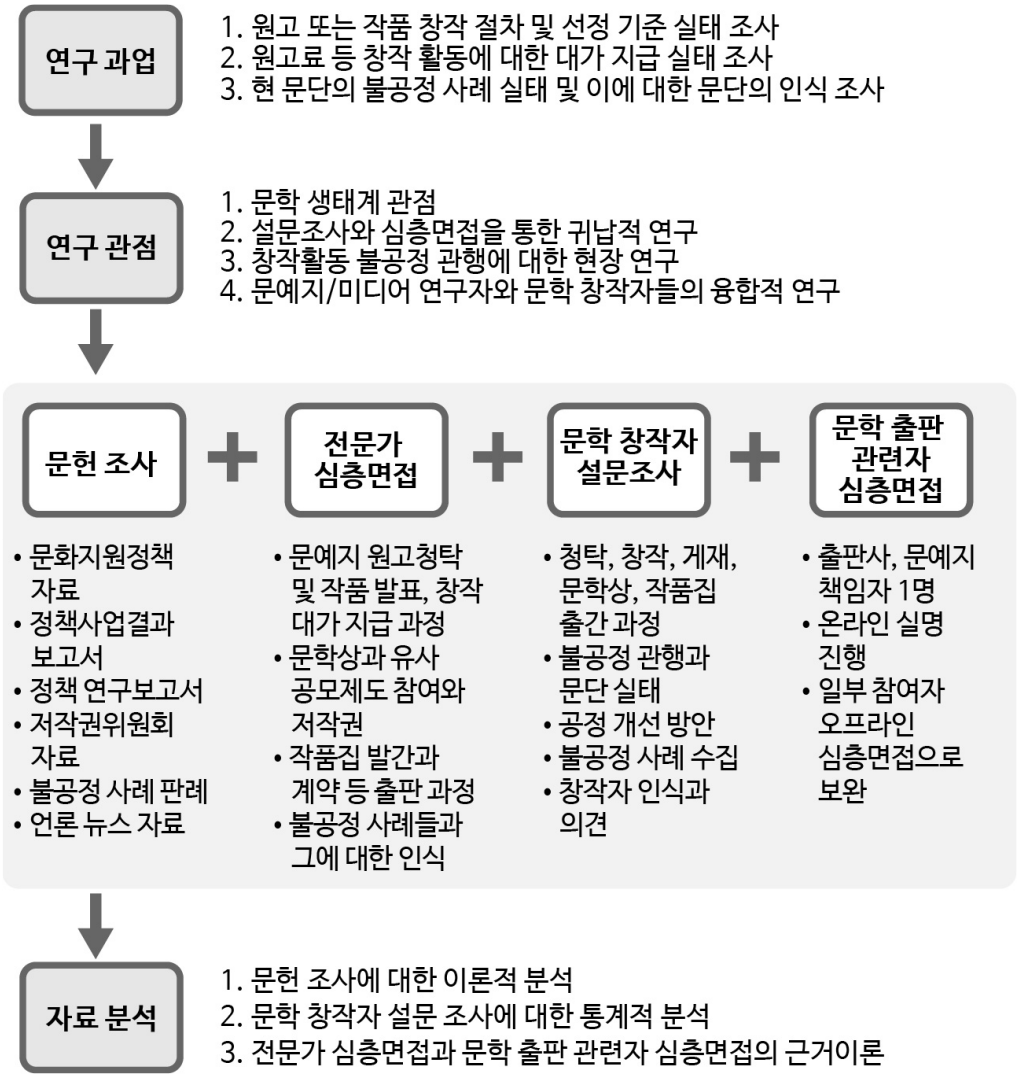
■ 자료 분석에서 창작자 설문조사는 통계적 방법을, 전문가 집단심층면접과 관련자 심층면접은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함

■ 심층면접 내용은 다음 근거 이론의 방법으로 분석함

○ 첫째, 근거 이론의 스트라우스(Strauss)와 코빈(Corbin) 방법론 스트라우스와 코빈은 축 코딩 작업에서 패러다임 모형을 인과적 상황, 현상, 전후 상황, 중재적 상황, 작용/상호작용, 귀결 등의 구성으로 만듦(Strauss, Corbin, 1990; 최종혁, 2011).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에서는 범주들 사이 관계를 가지고 파악한 이론의 아이디어를 기술함(최종혁, 2011)

○ 둘째, 심층면접 자료에 대한 재구성과 핵심 개념과 범주 분석을 위해 엑셀 2010 프로그램에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하여 텍스트 필터와 데이터 정렬 그리고 검색 기능을 적용하여 자료와 개념의 빈도 그리고 차이점과 유사점 등을 비교 분석함

[그림 2-1] 창작활동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연구 설계



제5절 추진방법

1. 문헌조사

■ 문화지원정책 자료, 정책사업결과 보고서, 정책 연구보고서와 논문, 저작권법, 저작권위원회 연구보고서, 불공정 사례 판례, 언론사 뉴스 자료 등의 자료들을 분석함

2. 전문가 심층면접

■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창작자 12명을 대상으로 하여 ①문예지 원고청탁, 작품발표 및 창작대가 지급과정에서의 불공정, ②작품집 발간계약 등 출판과정에서의 불공정, ③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서의 불공정, ④문학상과 유사 공모제도 참여와 저작권에서의 불공정, ⑤불공정 관행에 대한 창작자 인식 등을 내용으로 진행함

■ 이 심층면접은 문헌 조사에 기반하여 질문을 설계하여 진행되며 이 주제에 전문성이 있는 문학 창작자, 문예지·문학·문학상·저작권 관련자 중에 언론 기사, 세미나 등에서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표 2-1]과 같이 알파벳 순서로 이름을 지정하고 심층면접의 의견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수준에서 직업과 속성, 비고 내용을 공개함

[표 2-1] 전문가 심층면접 참여자

구분	직업/속성	비고
A	시인, 칼럼니스트	사회문제에 활발히 참여, 부조리 폭로
B	시인	
C	소설가	구독서비스 운영중
D	평론가	문단 내 성폭력 고발, 청탁 위계, 원고료 문제 등 문예지 게재
E	시인	문예지 청탁 부조리 경험
F	평론가, 소설가	한국작가회의 현 저작권위원장
G	시인	한국작가회의 전 저작권위원장이자 중견 시인
H	소설가	이상문학상사태 공론화, 예술인권리보장법 추진
I	소설가, 교수	이상문학상 사태 공론화
J	동화작가	2차 저작권 및 공공보상권 운동 등 작가 권익 활동 다수
K	시인, 강사	
L	시인, 수필가, 동화작가, 외래교수	

■ 심층면접 진행은 주제에 기반하여 작성된 질문들이 미리 제공된 상태에서 질문들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60분 전후의 시간 동안 진행되었음

■ 심층면접 참석자에게 미리 전달된 [표 2-2]의 전문가 심층면접 질문 내용으로 진행함. 하지만 다양한 대답과 반응을 도출하여 다른 방법들이 다루기 힘든 주제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됨

■ 심층면접 후에 추가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 이메일, 카카오톡, 전화 통화를 사용하여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전문가 심층면접 내용 중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일부 내용은 2020년 4월 22일부터 『뉴스페이퍼』에서 [문학계 불공정 관행]이라는 연재 제목의 기사들로 제공되고 있음. 시리즈 기사는 주제기사를 포함해 총 12개로 익명과 실명을 선택하여 게재됨[4)]

[표 2-2] 전문가 심층면접 질문 내용

번호	구분	질문 내용
주제 1	문예지 원고청탁 및 작품 발표, 창작 대가 지급 과정	청탁 과정과 원고청탁서, 공정 보상 문제 등에서 드러난 출판사 갑질 및 원고료 공정보상 관련 문제
주제 2	문학상과 유사 공모제도 참여와 저작권	이상문학상 거부 사태, 신춘문예 당선시집 재수록 거부 사태 등 문학 작품에게 수여하는 문학상과 유사 공모제도의 창작자 참여 과정, 문학상의 안내, 저작권 침해 사례(상금과 단행본 인세 등), 제도 개선 인식 등
주제 3	작품집 발간계약 등 출판 과정	작품집 발간을 위한 계약 등의 출판 과정에서의 공정 보상 판매 부수에 대한 인세 지급 방식, 정산과 보고
주제 4	전송권과 2차 저작권	문예지 게재 작품, 단행본 출판 2차 저작권[5]에 대한 정보 제공, 협의, 활용, 전송권 및 2차 저작권의 실태와 인식 등
주제 5	불공정 사례들에 대한 인식	문학 생태계에서 창작자와 출판사/문예지의 불공정 사례들과 관련자들의 인식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자료를 수집함

3. 문학 창작자 설문조사

■ 설문조사의 목적

○ 원고 또는 작품 창작 절차 및 선정 기준 실태 조사 : 청탁, 창작, 게재, 문학상, 작품집 출간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과 문단 실태

○ 원고료 등 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 지급 실태 조사 : 지급 실태에서의 불공정 사례 수집

○ 문단의 불공정 사례 실태 및 이에 대한 문단의 인식 조사 : 창작자 인식과 의견을 통한 공정 개선 방안, 정책적 함의 도출

■ 설문조사의 대상

○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동요, 동화, 평론, 장르문학, 웹소설 등에서 활동하는 문학창작자

○ 2018-2020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신청자 3,627명(중복자 813명 제외), 2018-2020년 문학분야 레지던스사업 105명, 2019-2020년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사업 112명, 문학분야 예술활동증명 유효완료자 6,365명(2020.07.95 기준) 및 국내 7대 문학단체/협회원 대상

■ 조사 기간

○ 2020년 7월 10일~2020년 7월 27일(18일간)

■ 조사 방법

○ PC와 모바일 환경에서의 조사 도구로서 서베이몽키(SurveyMonkey.com)를 사용하여 무기명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 문학 창작자 이메일과 스마트폰 문자로 설문참가 웹 주소를 발송

4) 이민우(2020), [문학계 불공정 관행 특집] '관행'뒤에 숨은 폭력에 대하여. <뉴스페이퍼>, 2020.07.31.

5) 2차 저작권(Adaptation Right)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뜻한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 용어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해당 링크를 관련자들에게 포워딩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권유하여 참여 권장

○ 수집된 자료를 SPSS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료 분석

■ 설문조사 참여자수

○ 전체 표본 : 2,126명

○ 유효 표본 : 1,523명(중도 탈락으로 인한 결측치 603명 제외)

[표 2-3] 문학창작자 설문조사 기본 내용

항목	항목 내용
조사목적	• 문학상, 문예지 게재와 원고료 지급, 단행본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등에 관한 문단의 불공정 사례 실태에 대한 문단의 인식
조사대상	•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동요, 동화, 평론, 장르문학, 웹소설 등에서 활동하는 문학창작자 • 2018-2020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신청자 3,627명(중복자 813명 제외), 2018-2020년 문학분야 레지던스 사업 105명, 2019-2020년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사업 112명, 문학분야 예술활동증명 유효완료자 6,365명 (2020.07.95 기준) 및 국내 7대 문학단체/협회원 대상
조사기간	• 2020년 7월 10일~2020년 7월 27일(18일간)
조사방법	• PC와 모바일 환경에서의 조사 도구로서 서베이몽키(SurveyMonkey.com)를 사용하여 무기명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 문학 창작자 이메일과 스마트폰 문자로 설문참가 웹 주소를 발송 • 수집된 자료를 SPSS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료 분석
홍보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협조로 수집된 문학창작자 이메일과 SMS로 설문참가 웹주소 발송(이메일 3,981통, SMS 2,834건) • 국내 7개 문학단체 및 협회[6]에서 회원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설문참가 웹 주소 발송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설문조사 배너와 안내게시물을 게재하였으며, 뉴스페이퍼와 문예커뮤니케이션학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 해당 링크를 관련자들에게 포워딩하여 참여토록 권장하였으며, 설문 참가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티콘 5천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병행하여 참여를 유도함

■ 설문 항목 구성

○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를 기반으로 다수의 문학창작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설문 문항에 대해 전문가 심층면접 참여자들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의 검토 과정을 거쳤음

○ 설문지 구성은 ①참여자들에 대한 정보 내용, ②원고 청탁 및 작품 발표 과정에서의 불공정, ③문학도서 출판과정에서의 불공정, ④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서의 불공정, ⑤공모전과 문학상에서의 불공정에 대한 내용으로 총 6꼭지, 53문항으로 구성.

6)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표 2-4] 설문 항목 구성

구분	내용
설문참여자 정보 내용(5문항)	• 성별, 연령대, 창작활동 범주, 대표적 창작활동분야, 이외의 활동분야, 문학협회/단체 가입여부
원고 청탁 및 작품 발표 과정(16문항)	• 문예지 원고게재 경험, 원고청탁서 받는 비율, 원고청탁서 수록 항목에 대한 의견, 구두청탁 경험, 구두청탁으로 원고 발표 시기 놓친 사례, 구두청탁이 실제 게재로 미연결 비율, 원고청탁서의 필요성,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동의, 원고료 지급 시기, 원고료 지급받지 못한 경험, 원고료 지급 지연시 지급을 요청한 경험, 원고료 지급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 원고료를 다른 물건으로 지급받은 사례, 문예지 작품게재를 이유로 문예지 구입 및 금품요구 사례, 전자책 웹진 게재시 사전 전달 여부, 사전 전달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
문학도서 출판 과정(17문항)	• 문학도서 출간 경험, 출간 장르, 출판계약서 작성 시기, 출판계약서 내용 검토, 출판계약서 수록 항목 및 준수 정도, 계약 과정에서의 강압과 강요, 불공정 항목에 대한 이의제기, 인세 발생과 판매량에 대한 보고 여부, 미보고시 보고 요청 경험, 요청하지 않은 이유, 인세를 다른 물건으로 받은 경험, 일방적인 집필 일정 요구, 출판사 임의로 원고 수정보완에 대한 요구, 차기 작품 출판을 조건으로 한 계약체결, 대량구입을 조건으로 한 출판계약 체결
전송권과 2차 저작권(7문항)	• 디지털 형태의 전송 경험, 전송 형태 및 방식, 디지털 전송에 대한 계약방식, 출판사의 충분한 설명, 개선방식, 작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2차 저작권 계약 미동의시 계약파기 경험
공모전과 문학상(4문항)	• 공모전 문학상 수상경험, 상금을 뒷풀이에 사용할 것을 요구받은 경험, 공모전과 문학상 시행방식의 불공정관행에 끼치는 영향, 심의를 미끼로 금품 요구 및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한 경험
기타사항(4문항)	• 작가는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 필요,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위한 항목들에 대한 동의 정도, 민간 영역의 문예지에서 화이트리스트가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자유로운 의견 개진

4. 문학 출판 관련자 심층면접

■ 문학 창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단의 불공정 사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문예지와 문학출판사 측면의 인식과 개선방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예지/출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면접(depth interview)을 실행함

■ 문학 출판사, 문예지 책임로서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실명으로 진행함

■ 2020년 문예기금에서 문예지발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47개 문예지를 대상으로 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진행하였으며, 해당 문예지와 출판사 상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생태계 구성원으로서 문예지 전반적인 입장과 문학생태계의 향후 개선방향을 고려한 답변으로 진행됨. 또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소속 문예지와 출판사의 관점에서 답변하는 관점이 적용됨

[표 2-5] 온라인 심층면접 기본 내용

항목	항목 내용
조사목적	문단의 불공정 사례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문예지 실문자의 인식 조사
조사대상	문학 출판사, 문예지 책임자로서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 2020년 문예지발간지원사업에 선정된 47개 단체 실무자 대상
조사기간	2020년 8월 6일~2020년 8월 10일
조사방법	서베이몽키(SurveyMonkey.com)를 사용하여 온라인 심층면접을 진행 수집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근거 이론 방법론에 기반하여 분석함
조사내용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적된 항목들에 대한 개선방향 - 원고청탁서 미제출, 원고료 지급일 미기재, 원고료 액수 미고지, 전송권 안내 미고지, 비금전적 원고료 지급(정기구독 권유, 잡지 구입, 기부금 등 요구), 원고료 미지급(문예지 게재완료 후 원고료 미지급, 출판 계약서 체결 외 별도 계약서 체결 필요(2차 저작권, 전송권 관련 조항 포함), 출판도서 판매량 미보고(계약체결한 도서의 정확한 판매량 정보 미고지), 문학상 수상 시 명확한 안내(저작권 양도 등 사전공지 내용 부족,수상 작품집의 계약서 작성 미비, 상금의 선인세 적용 등) 문예지 또는 출판사의 입장에서 작가와 원고청탁 또는 출판계약 등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 현재의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귀 문예지 또는 출판사의 입장이나 또는 제안하고자 하는 의견

제3장

이론 및 선행 연구 분석

제1절 콘텐츠 산업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논의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공정거래법 제1조)

■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함.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공정거래법 제1조 7항)

■ 공정 거래의 다른 표현인 공정 무역(fair trade)는 제조업자의 제품이 동의된 가격에, 또는 그 이상에 팔릴 수 있도록 제조업자와 소매업자 사이의 동의를 언급하는 소매업에서 사용되는 용어(한국경제신문 경제용어사전)로서 사용됨

■ 공정무역운동 관점에서 공정 거래는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 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을 의미함

■ 유럽공정무역연합은 "공정 무역은 무역 거래의 공동 협력으로, 투명성과 존중, 그리고 대화에 기초를 두며, 국제 무역에서 공정성을 더 확대하는 것을 추구한다. 경쟁에서 뒤처진, 특히 남반구 지역의, 저개발국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더 나은 무역 조건들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데 기여한다"로 정의함[7)]

■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은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s), 높은 위험성과 높은 수익성, 공공재와 경험재 특성, 지식과 창조성 기반성 등을 지닌 산업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과 디바이스의 출현으로 시장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웹툰과 웹소설과 앱(app) 생태계에서 보여지듯이 미디어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유형이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 규모와 효과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하지만 고정비용과 한계비용이 낮아 시장 진입의 장벽이 낮으면서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환경에서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참여하는 상황임. 참여자들은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동적이며, 기업 규모가 영세한 곳들이 많아서 지속적인 거래보다는 프로젝트 단위로 거래하며 개인들 간의 거래가 많아 공정한 거래의 어려움이 많음. 정부 지원도 기업과 시장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이루어져 유통과 개인 창작자와 수용자에 대한 정책이 부족함

■ 문화예술 활동 주체 간 스승과 제자, 선후배 등의 수직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많아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대등한 거래 관계 성립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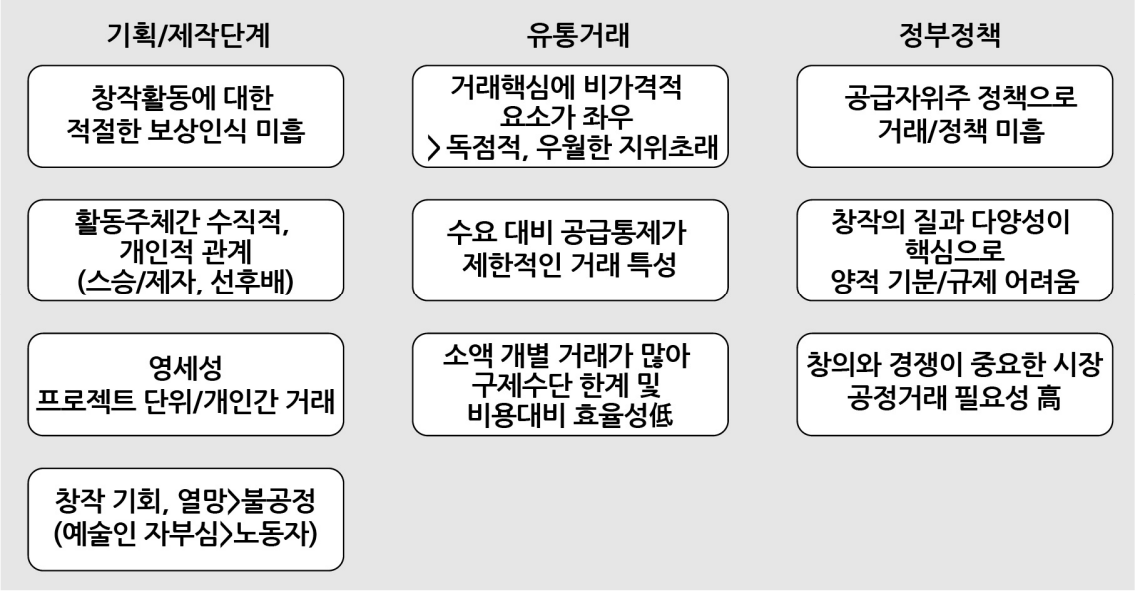
■ 대부분 공급이 영세하고, 계약 관계에서는 노동자라는 인식보다는 예술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불공정거래보다는 작품 창작에 대한 기회나 열망이 더 우선하기도 함

■ 문화예술은 창의와 경쟁이 가장 중요하며, 공급자의 질과 다양성이 핵심이므로 양적 기준과 규제가 어렵고 공정거래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함.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는 가격이 공정거래의 핵심요인이지만,

7) European Fair Trade Association.(2006), 공정 무역의정의, Available : https://web.archive.org/web/20061009220102/http://www.eftafairtrade.org/definition.asp(2020.06.10)

문화예술거래에서 독점력과 우월한 지위는 비가격경쟁력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그림 3-1]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거래 구조적 특성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문화산업분야 공정상생 관련 법안 연구, 2018, p.6

제2절 문학 생태계 불공정 관행 분석의 이론 프레임워크

■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이론 프레임워크로서 본 연구는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의 아비투스(Habitus) 이론과 문학 생태계 관점에서 참여 행위자들의 관계를 위한 공정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함

○ 문학 생태계는 산업 구조와는 달리 가치, 실천, 성향의 묶음으로 설명된 아비투스의 경향이 형성하는 공공장(Public Sphere)로서의 특성을 지님

■ 문학 생태계 참여자들의 실천이 불공정관행과 관련되며 더 근본적으로는 문학 생태계의 기반을 이루는 사회의 불평등과 관련됨

○ 구체적으로는 문학분야의 불공정관행 현상과 사례들은 분배, 절차, 상호작용의 공정함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 따라서 이 프레임워크는 '작가의 문학 창작 활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와 계약 관계의 가이드라인 개발'과 '문학상, 문예지 게재, 단행본 출판, 2차 저작권이 문학 생태계를 성장하며 창작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마련'의 연구 방향 적용을 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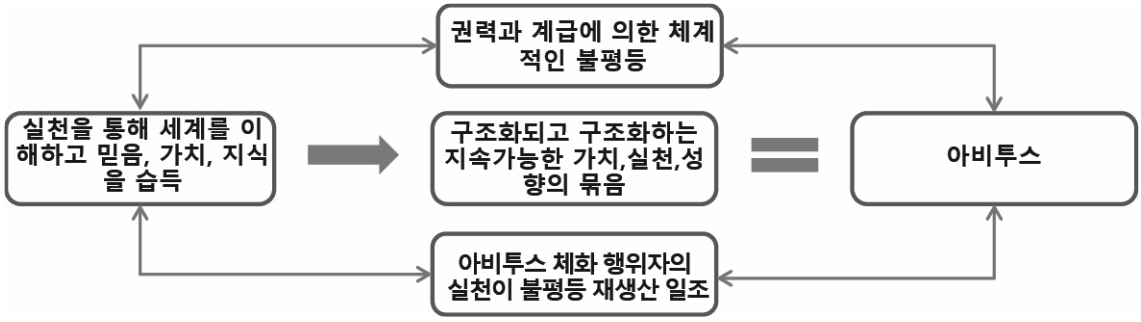
1.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와 문화 자본 이론

■ 피에르 부르디외는 아비투스(Habitus)를 구조화되기도 하고 구조화하기도 하는 일련의 지속 가능한 가치, 실천, 성향의 묶음으로 설명함. 실천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믿음, 가치, 지식을 습득한다는 맥락을 지님

○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특별한 성향을 통해 해결하는 그 실천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데 아비투스의 경향은 특별한 장에서 형성되어 다른 장들에도 전이가 가능함

○ 따라서 구조화되며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어느 정도 통제된 성격과 규칙성을 가짐

[그림 3-2]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이론의 구조



■ 이 모든 것이 지휘자가 없더라도 집단적으로 조화를 이루는데 부르디외는 아비투스의 형성 과정은 권력과 계급에 의한 체계적인 불평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함

■ 아비투스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아비투스를 체화한 행위자들의 실천은 이러한 불평등을 생산하는 객관적 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일조함

■ 부르디외는 피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아비투스는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열등한 처지를 재생산하려고 한다고 설명함(홍성민, 2000, pp.43-44)

■ 부르디외는 경제 자본, 사회 자본, 문화 자본이 사회적 권력과 불평등을 결정짓는다고 설명함

○ 특정한 행위자는 자본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한 자본을 다른 자본으로 전환시킴

○ 문화 자본은 권력과 지위를 부여하는 축적된 문화지식을 포함하는 교환 체계 내의 사회관계로 작용함

○ 특정한 행위자가 속한 관계의 총체를 장(場)이라고 정의함

○ 장에는 수직적, 수평적으로 차별적인 여러 위치가 있으며 이 위치는 위치를 점유한 행위자의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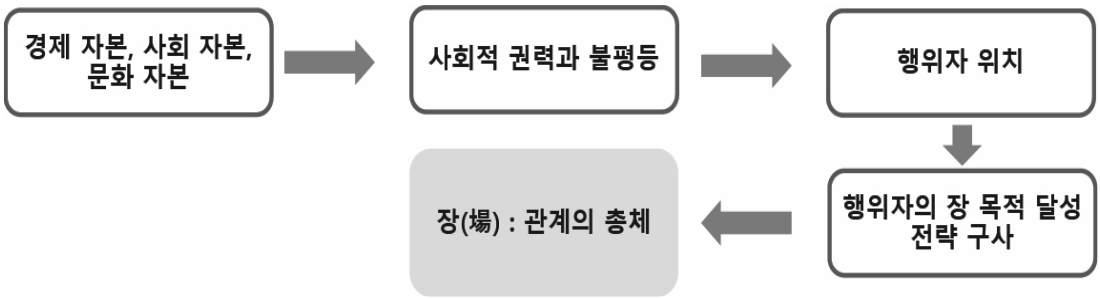
○ 행위자들의 위치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본의 양과 그 상대적 비중에 따라 결정되고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함(Riley, 2017)

■ 손턴(Thornton)은 청년 하위문화와 댄스 문화 분석에서 구별짓기 개념을 적용함

○ 그는 댄스 문화의 구별짓기는 젊은이에게 지위와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 옷, 레코드, 머리 모양, 춤 스타일, 지식 같은 하위문화자본의 형태에 의지한다고 설명함

○ 하위문화자본은 우리(대안적, 뻔뻔한, 독립적, 진정성 있는, 소수자성)와 그(주류적, 보수적, 상업적, 거짓, 다수자성) 사이의 구별짓기와 관련된다는 것임(Barker, 2004)

[그림 3-3] 문화 자본과 행위자의 장(場) 전략 관계



2. 공정성 이론

■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은 형평이론으로도 불리는데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투입에 대한 결과의 비율을, 동일한 직무 상황에 있는 준거인의 투입 대 결과의 비율과 비교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며 그 비율이 어긋나면 공정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애덤스(J. Stacy Adams) 등의 동기이론에 바탕을 둠(Adams,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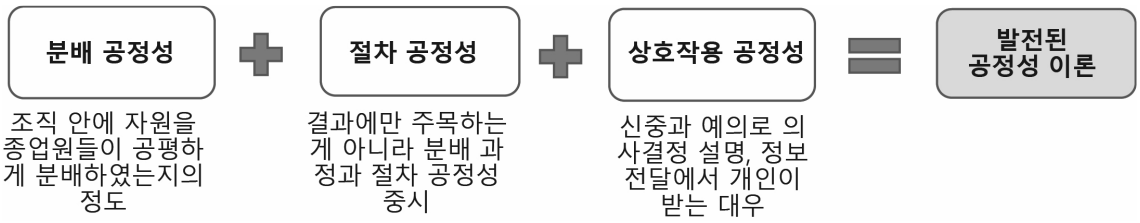
■ 공정성 규범

○ 구성원들은 자신이 기여한 노력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데, 이러한 믿음은 '공정성 규범(equity norm)'이라고 함

■ 공정성 이론의 발전

○ 형평성에 근거한 자원의 배분 뿐 아니라, 평등(equality)의 원칙, 혹은 필요(needs)의 원칙이 점점 중요한 주제가 되면서, 형평성이 곧 공정성이라는 도식은 사라짐. 또한 초기 공정성 이론은 주로 분배 공정성만을 다루었으나, 이후 절차적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등의 개념이 새로이 발견되었으며, 현재는 공정성은 다양한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됨

[그림 3-4] 공정성 이론의 구성



제3절 등단 제도에 대한 논의

■ 등단은 사회적으로 공인받고 작가로서 활동하기 위한 제도적이거나 법률적인 장치는 아니며 작가에 대해 정의 내리는 과정을 통해 문학 생태계와 창작 활동에 대한 관점과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음

■ 박현수는 등단 제도에 대해 작가를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근대 제도의 일환으로 근대문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와 더불어 전문작가의 사회적 위상이 확립되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함

○ 독자는 출판 유통된 미디어를 통해 작품을 만나고 독서나 학습을 통해 문학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고 그 작품을 승인하는 비평과 타인의 감상이라는 제반 구조를 습득하면서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지닌 새로운 작가로 탄생하는 순환적 구조 속에 근대 문학의 장을 상정할 수 있음

○ 등단제도란 과거의 독자가 새로운 문학성의 보유자, 혹은 창조자로서 공인되는 사회적 권위의 장으로서 근대 문학의 재생산구조의 시작이자 종결점이라는 관점임(박현수, 2006, pp. 35-36)

■ 역사적으로 국내 등단 제도는 개화기 문예지 작품 게재를 통한 작가 배출과정에서 시작됨

○ 일제 식민지 시기, 동인지와 문예지가 창간되고 신문사가 생겨나면서 문학 작품이 상품으로 다루어지는 문학시장이 형성됨

○ 이러한 변화는 동인지에 발표함으로써 등단하는 방식에서 사회적 공인을 위한 등단이라는 과제를 발생시킴

○ 최초의 소설 공개 모집인 '특별 현상 문예'는 1917년 잡지 『청춘(靑春)』에서 처음 시작됨. 이 전통은 신인상 시상을 통해 기성 문인으로 인정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제도로 이어짐

1. 추천에 의한 등단 방식

■ 1924년 10월 1일 창간된 『조선문단』가 창간호에서 처음 등단 추천제를 시작하고 1936년 1월1일까지 통권 26호를 발간했던 최초의 대중적 문학지로서 활동함. 등단추천제를 통해 1930년대 후반 이태준 정지용이 『문장』[8]으로 최재서가 『인문평론』으로 그리고 해방후 모윤숙이 『문예』를 통하여 추천됨

○ 이같은 추천제는 『현대문학』, 『문학예술』로 이어짐

○ 청록파 세 시인과 50년대 60년대 전반에 등장한 문인들 대부분이 순문예지의 추천을 받음

○ 신인 추천제는 문학지망생으로 하여금 2-3회에 걸쳐 강도 높은 문학수업을 강요하여 문단에 내 보내던 방식으로도 진행되어 응모 신인이 추천자에게 거의 도제적인 훈련과 충성을 받고 바쳐야 할 것을 요구함(김병익, 1979, pp.110-111)[9]

---

8) 1939년 2월에 창간호를 낸 『문장』은 신인 추천제를 두어 신인을 발굴하였는데 추천자는 소설 이태준, 시 정지용, 시조 이승지로 고정화되어 있었다. 실제 추천은 3집에서부터 이루어졌는데 조지훈 「고풍의상」, 김종한 「귀로」, 황민 「학」 등 세 시인의 작품이 한꺼번에 추천되었다. 소설 분야에선 최태응의 「바보 용칠이」(3집), 정진업의 「카츄샤에게」(4집), 곽하신의 「마냥모」(6집), 임옥인의 「봉선화」(7집) 등이 있다.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박남수 등 뛰어난 재목들을 배출하면서 문장파를 형성하였다(장호병, 2001, p.24).

9) 장호병은 추천제도나 신인상제도는 젊은이들보다 오히려 문학청년시절의 꿈을 버리지 못한 중장년 또는 노년층이 그 꿈을 이루는 무대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몇몇 문학 잡지들이 궁핍한 재정을 만회하는 수단으로

■ 추천에 의한 등단 방식은 문예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해 신인상 같은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신인으로 선정되어 문예지에 작품이 게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이 방식은 문예지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자리잡혀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하지만 편집위원과 등단자가 유대 관계가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거나 등단을 문예지 운영을 위한 사업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10)]

2. 신춘문예 등단 방식

■ 동인지의 폐쇄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유능한 신인 작가를 널리 발굴하기 위한 신춘문예는 1925년 홍명희의 제안으로 『동아일보』에서 처음 실시됨

○ 단편소설, 신시, 가정 소설, 동화극, 가극, 동요 등 6개 분야에 걸쳐 공모했으며 1928년에는 『조선일보』에서도 경쟁적으로 신춘문예가 실시됨

○ 해방과 6.25로 중단되었다가 한국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에 이어 1990년대를 전후하여 세계일보 문화일보 평화신문 등 중앙지와 지방에서 발간되는 대부분의 중요 일간지를 합하여 20여 개 신문사가 경쟁적으로 신춘문예를 실시하여 작가의 등단제도로는 가장 권위있는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신문사를 통한 신춘문예나 현상공모의 경우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이 없어 등단과 동시에 사라지다시피 하는 작가들도 상당수 있음(장호병, 2001, p.25)

■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부족한 작가에 대한 양적 공급과 사회적 공인에서 신문문예가 중요한 역할을 함

■ 하지만 고정적인 심사위원과 인맥과 학연지연의 문제점과 따라서 실험적인 작품이 등장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됨

[그림 3-5] 등단 방식과 변화 과정



악용되기도 하거니와 추천 또는 신인상을 거친 출신 작가들이 배출시킨 잡지를 모태로 하는 동인형식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장호병, 2001, p.17).

10) “등단값을 받기도 한다.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등단 조건을 미리 제시하기도 하고 대개는 일정량의 책을 강매하기도 한다. 어렵게나마 장사가 되는 극소수 영향력 있는 상업 문예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예지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등단을 팔아서 잡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지요하, 2001, p.77)

제4절 문학상에 대한 논의

■ 문학상은 문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문학단체·문학잡지사·출판사·기관·개인 등이 일정한 기준과 취지에 따라 뽑은 문학자 또는 문학작품에 주는 상을 의미하며 목적과 대상은 상에 따라 다름(두산백과 : 문학상)

■ 문학상은 스웨덴의 노벨문학상처럼 국제적인 상과 미국 퓰리처상, 프랑스 공쿠르상 같이 국내 작가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도 있음

○ 신인발굴 목적과 중진 작가 대상 문학상이 있음

○ 전자는 프랑스의 공쿠르상, 일본의 아쿠타가와상처럼 뛰어난 신인작가의 작품에 수여되며, 후자는 노벨문학상이나 각국의 아카데미상, 한국의 예술원상 등과 같이 한 작가의 업적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여함.

■ 이탈리아의 센트 빈첸트상이나 프랑스의 생트-뵈브상처럼 평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한국의 '시문학상'과 같이 시문학(詩文學) 문예지가 시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여하는 상도 있음

○ 시상 횟수도 아쿠타가와상처럼 1년에 2회씩 실시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공쿠르상과 같이 1년에 1번 시상하는 것도 있고, 독일의 괴테상과 같이 3년에 1번 시상하는 문학상도 있음

■ 한국에는 2020년 현재 50여 종 이상의 문학상이 있는데, 가장 오래 된 문학상으로 현대문학사가 해마다 창사를 기념하여 소설·시·평론·희곡 등 4개 부문에 걸쳐 수여하는 '현대문학상(1955)'이 있음

○ 한국문인협회가 매년 시상하는 '한국문학상(1964)'이 있음

■ **문학과 문학정신을 기리고 역량 있는 문인을 지원하기 위해 작고한 저명작가의 이름이나 호를 딴 문학상들이 있음**

○ 동인(東仁) 문학상(1955, 조선일보사 주관), 월탄(月灘) 문학상(1966, 월탄문학상 운영위원회 주관), 만해(萬海) 문학상(1978, 창비 주관), 이상 문학상(1978, 문학사상사 주관), 김수영 문학상(1981, 민음사 주관), 신동엽 문학상(1982, 유족 및 창비 주관), 김유정 문학상(2007, 김유정기념사업회 주관), 소월시 문학상(1987, 문학사상사 주관) 등

○ **김유정 문학상**

- 문학 신인 등용문으로서 문학 꿈나무와 청소년의 문학 정신을 고취하는 취지로 수여됨

○ **동인 문학상**

- 소설가 김동인을 기리는 문학상으로서 동인의 과거 친일 행적이 알려져 폐지 논란이 있음

○ **심훈 문학상**

- 시인이자 소설가 언론인이며 독립운동가인 심훈을 기리는 심훈 문학상은 시와 소설을 대상으로 하며 심훈 문학의 연구 및 학술 논문을 대상 심훈 학술상도 진행됨

○ **이상 문학상**

- 이상 문학상은 중단편 소설을 대상으로 1977년 문학사상사(文學思想社)가 제정한 문학상임
- 문단경력이나 업적, 소설 길이에 구애받지 않고 작품 위주로 선정하며, 심사위원은 문학평론가와 각 신문사 문화부 기자, 문학잡지의 독자, 문학을 전공한 교수로 구성됨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표한 작품 중 작품성이 뛰어난 중단편 후보작을 골라 그중에서 대상 1편을 뽑아 시상. 상금은 대상 3,500만 원, 추천 우수작상 300만 원, 특별상 500만 원 등. 대상 수상작품은 추천우수작들과 함께 문학사상사에서 발행하는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에 수록됨

■ **문학상을 수여하는 주체가 출판사와 재단인 사례**

○ 문학상을 수여하는 주체가 출판사와 재단인 사례는 등단 10년 이내의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하는 문학동네의 젊은작가상이 있음

○ 대산 문학상은 대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문학상으로,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창작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특징임

- 한국문학을 대표하며 2년 동안 발표된 작품 중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을 골라 수상하며 외국어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기도 함

■ 주관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위키피디아의 문학상 항목에서 제시된 국내 문학상을 구분하면 [표 3-1]로서 정리할 수 있음[11)]

○ 출판사가 18개로 가장 많은 편이며 단체/재단이 16개, 언론사가 10개였음

○ 여기에서 출판사들은 모두 문예지를 발행하고 있거나 문학 단행본을 출간하고 있는 중임

[표 3-1] 주관 주체 기준 문학상 구분

주관	문학상	개수
출판사	• 김수영 문학상(민음사), 만해문학상(창작과 비평사), 박인환문학상(시현실), 소월시문학상(문학사상사), 신동엽문학상(신동엽 시인 유족 및 창비), 오늘의 작가상(민음사), 오장환문학상(솔출판사), 이산문학상(이산문학상 운영위원회 문학과지성사), 이상문학상(문학사상사), 이형기문학상(현대시), 정지용 문학상(시와시학사), 지훈상(나남출판사), 한국 문학작가상(월간한국문학사), 한국 시조문학상(계간시조문학), 현대문학상(현대문학), 현대시작품상(현대시), 현대시학작품상(현대시학), 황산벌청년문학상(경향신문, 은행나무)	18
단체/재단	• 공초문학상(공초숭모회), 김달진문학상(김달진문학상운영위원회), 김유정문학상(김유정기념사업회), 김포문학상(한국문인협회 김포시지부), 대산문학상(대산문화재단), 백석문학상(백석문학기념사업운영위원회), 백신애 문학상(백신애 기념사업회), 윤동주문학상(한국문인협회), 월탄문학상(월탄문학상 운영위원회), 천강문학상(의령군 천강문학상운영위원회), 한국문학상(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문학상(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상(한국시인협회), 한국 아동 문학상(한국아동문학인협회), 한국 펜 문학상(국제펜클럽), 현진건문학상(현진건문학상위원회), 노작문학상(노작문학상운영위원회)	16
언론사	• 동인 문학상(조선일보사), 미당문학상(중앙일보), 박용래 문학상(대전일보), 이육사 문학상(TBC), 팔봉비평문학상(한국일보), 한겨레문학상(한겨레신문사), 한국 인터넷 문학상(스포츠서울), 한국판타지 문학상(조선일보사), 한국일보 문학상(한국일보), 황순원문학상(중앙일보)	10
공공기관	• 수주문학상(부천시)	1

11) 위키피디아 : 문학상, Available(2020. 5. 31) : https://ko.wikipedia.org/wiki/문학상

제5절 출판권과 2차적 저작권, 전송권 논의

1. 출판권과 저작권

■ **저작물**

○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설 ·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첫 번째 예시로서 밝힘(4조 1항)

■ **출판권과 저작권**

○ 출판권은 저작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이어서 저작권의 존재를 전제함. 책의 발행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창작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에서 파생되는 출판권이 필요함

○ 현행 저작권법은 출판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제63조(출판권의 설정)**
> ① 저작물을 복제 ·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출판권 개념**

○ 우리 저작권법은 출판 또는 출판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서 "출판권"을 "저작물을 복제 ·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제63조 1항)라고 규정함

○ 출판권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 기타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서 발행할 권리임(제63조 1항)

○ '문서 또는 도화'라 함은 저작물을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유체물 위에 인간이 직접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상태로 재현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말함

■ **배타적 권리**

○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어느 누구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데 이를 배타적 권리라고 함

○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 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음(제57조 1항)

○ 이러한 배타적 권리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강제허락이나 법정허락 등 법에서 정한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

■ **출판 계약의 범위**

○ 출판 계약의 개념은 넓게 "저작물을 적법하게 출판하기 위하여 출판자가 저작권자와 사이에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이라고 보며, ①출판허락계약, ②출판권설정계약, ③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 전체를 출판자

에게 이전하는 저작권양도계약, ④저작권을 구성하는 다수의 이용권 중 복제권의 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권양도계약을 모두 포함함[12)]

■ **출판계약의 이해 상충**

○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는 협회 차원의 통일된 출판권설정계약서 양식을 출판사들에게 제공하여 그 양식에 따른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저작권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자들에게 출판허락계약에 해당하는 표준 출판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차적 저작권에 대한 위임 내용을 포함한 출판권설정계약서와 단순출판허락계약서 2가지를 제공하고 있음[13)]

■ **출판계약의 관례**

○ 출판권설정계약 중에 출판권과는 관계없는 저작물의 2차적 이용 등에 관한 다양한 조항들을 두고 있으며, 미완성 저작물에 관한 출판계약도 출판권설정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되는 등 그 유형상의 구분에서 여러 가지 채권계약이 혼합되어 있음

■ **출판권자 의무**

○ 출판권자에게는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할 의무', '관행에 따라 계속해서 출판할 의무'[14)], '복제권자를 표지(標識)할 의무' 등 3가지 의무 사항이 부과됨(제58조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

○ '복제권자 표지 의무'를 제외한 2개 조항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합의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하지만 "출판권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출판권자의 형편에 따라 아무 때나 출판한다", "한 번 출판한 이후로는 출판권자에게는 계속해서 출판할 의무가 없다"는 방식은 출판권 취지에 기반하여 무효 조항임

■ **저작권자 의무**

○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는 원고를 인도할 의무를 짐. 그 원고는 계약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므로 인도된 원고의 분량과 내용이 계약에서 정한 바와 일치해야 함

■ **출판허락계약 종료**

○ 출판허락계약은 채권계약의 일종으로서 민법이 정한 채권소멸원인의 발생, 즉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합의해제, 취소, 무효, 혼동, 기간의 만료 등의 원인에 의해 종료하는 외에도, 보호기간의 만료 등 저작권 소멸원인의 발생, 저작물의 완성 전에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저작물의 완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출판허락계약 특유의 원인에 의하여도 종료함

■ **기간 정하지 않은 출판허락계약**

○ 기간 정하지 않은 출판허락계약에 대해 저작권자는 출판 허락의 동기, 목적, 대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출판허락을 철회하여 이용허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음

■ **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 판례와 계약 기간**

○ 대법원 판례는 '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사건에서 단순한 출판허락보다 출판권자의 권리가 큰 설정출판권

---

12) 半田正夫, "出版契約", 現代契約法大系 第7號 サービス·供給契約(1984.3.), p.199.

1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0). 출판권설정계약서, Available http://www.kpipa.or.kr/(접속일자 2020. 06. 7.)

14) 계속 출판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수요자가 당해 출판물을 입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족하고, 복제·배포행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출판물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출판권자의 창고에 그 출판물이 저장되어 있어 수요자가 언제라도 입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출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성호, 2008, p.251)

도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으면 최초 출판일로부터 3년간 존속하는 점을 들어 출판허락기간을 출판허락시부터 기산하여 3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15)]

■ **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 판례와 매절**

○ 문학사상사가 대상에는 3,000만 원, 추천우수작상에는 250만 원, 기수상작가 우수작상에는 150만 원을 각 상금으로 지급하여 이들을 모아 '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이라는 단행본을 출판함

○ 이 사안에서, 저작자들과 사이에 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위 상금이 저작재산권 또는 복제·배포권의 양도대가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 판례는 이를 저작권 또는 복제·배포권의 양도나 출판권설정계약이 아닌 저작물 이용 허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16)]

■ **매절과 출판허락계약**

○ 매절이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출판의 한 형태임

○ 책 판매량과 관계없이 출판자가 저작권자에게 미리 한번에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함

○ 매절이라는 이름으로 출판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괄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저작권양도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음

○ 출판권 설정에 관한 준물권적 합의가 특별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을 것이므로, 통상은 출판허락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성호, 2008, p.259)

■ **잡지게재계약**

○ 잡지게재계약은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거나 묵시적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식을 출판권설정계약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잡지게재계약은 비독점적인 출판허락계약으로 해석됨[17)]

○ 그러나 장편 작품을 연재 집필하고 그 후 전체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영화제작자처럼 이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집필료를 지급하여 투자의 위험을 부담하는 출판사에게 그에 따른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단발의 잡지게재계약의 경우에도 저작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잡지나 신문, 자신의 무료 웹사이트 등에 합리적인 기간 동안은 같은 작품을 게재하지 아니 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출판사에게 제한적인 독점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18)]

2. 전송권과 저작권

■ **전송권**

○ 전송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로서 2000년 1월 12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개념임(저작권법 제18조)

○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함(제2조10항)

---

15)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47792 판결
16)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47792 판결
17) 半田正夫, 著作權法槪說(제10판, 2001), p.252.
18) 內藤篤, エンタテインメント 契約法(2004), p.221.

■ **전자책과 전송권(傳送權)**

○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유통시킬 때는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 출판의 경우 저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출판된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판매할 때도 이전의 협의가 출판권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 전송권의 제한을 받게 됨

○ 전송에는 PC 통신이나 인터넷 등 유·무선통신으로 미술, 영상, 사진, 음악 등 저작물을 보내는 것이며 홈페이지에 띄워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함

■ **대한출판문화협회 전자출판 정의**

○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017년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발행권 설정과 관련된 사용계약서」에서 전자출판을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발행하거나 복제 · 전송'이라고 정의하고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한다고 설명함[19)]

전자출판 :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발행하거나 복제 · 전송

1. 본저작물의 내용을 편집 · 복제하여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 전용단말기 · 휴대전화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전자책 등으로 발행하거나 전송하는 것
2. DVD-ROM, 메모리카드 등 전자매체(향후 개발될 어떠한 기술에 의한 것도 포함함)에 기록한 패키지 출판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
3.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중(公衆)에게 전송하는 것(본저작물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전송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함)
4.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검색 · 열람에 제공하는 것

■ **복제와 전송의 권리 침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함(제103조1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를 가리킴(제2조30항)

3. 2차적 저작권

■ **디지털 미디어와 출판**

○ 디지털과 미디어 관련 기술 발달에 의해 출현한 종이가 아닌 책으로 구분되는 전자책과 오디오북, 비디오북 등은 출판권에 포함되지 않음

○ 서적이나 화집, 사진집 등은 문서 또는 도화이나, 영화 필름,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음악 CD와 같

19) 대한출판문화협회(2017).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발행권 설정과 관련된 사용계약서」, Available http://kpa21.or.kr/(접속일자 2020. 06. 7.)

이 직접 시각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문서 또는 도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유체물 위에 인간이 직접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재현된 것이 아니라, 문서나 도화를 정보로 처리하여 컴퓨터 등 기계를 통해 시각적으로 지각 가능한 상태로 된다는 점에서 출판권설정계약에서 말하는 출판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이성호, 2008, p.259)

■ **2차적 저작물**

○ 현행 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정의하고 "독자적인 저작물 방법으로 보호된다."(5조 1항),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조 2항)라고 규정함

- 2차 저작물은 첫째, 원저작물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타인의 저작물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것은 독립적인 저작물이 됨
- 둘째, 실질적인 개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을 가미하여야 하는데 원저작물에 기초하였더라도 사소한 개변만 있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음

■ **대한출판문화협회 2차적 저작권 조항**

○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권설정계약서 양식은, "출판계약 기간 중에 '본 저작물'을 번역· 개작· 다이제스트, 연극· 영화 · 방송· 녹음· 녹화· 대여 등, 그 밖에 이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갑'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을'에게 위탁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음(대한출판문화협회, 2017, 제20조)

○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용권은 원저작권자나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속할 뿐 출판권자가 그 권리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판권자에게 출판의 목적인 저작물이 2차적으로 이용될 때 그 이용에 관한 창구가 되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출판권자에게 대리인(agent)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조항임

○ 출판권자가 2차적 이용에 관한 거래를 성립시키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대리인 수수료로서 취득함(이성호, 2008, pp.271-272)

○ 2차적 이용에 관한 저작권자와 출판사 간의 이슈의 핵심은 장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질적인 미래시장이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누가 그 권리를 확보해 둘 것인가에 관한 내용임

○ 국내 출판사들의 영세성을 고려하면 2차적 사용을 출판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저작물 사용을 권장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와 맞지 않음

○ 따라서 출판사의 독점적 권리가 아니라 미국의 사례처럼 우선 교섭(first negotiation)의 권리 수준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기본적인 저작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결국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이 그에 따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임(김기태, 2013)

■ **2차적 저작물의 법적 책임**

○ 여러 저작물의 형태를 원저작물로 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함

○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가 존재하는데도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져야 함

○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물의 저작자 허락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음.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됨

■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 전식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구분됨(제16-22조)

제4장

전문가 심층면접 분석 결과

제1절 문예지 게재 : 원고청탁 및 작품 발표, 창작 대가 지급 과정

■ **원고 청탁과 원고청탁서**

○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원고청탁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으며, 고압적으로 또는 다른 작가를 통해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다고 서술함

○ 원고청탁서에는 원고료, 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 대한 정보가 작성되어 있지 않는다고 서술됨

■ **원고료와 지급**

○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출판사나 문예지가 원고료를 책으로 지급하거나, 주지 않거나 심지어 문예지 게재를 대가로 게재비를 요구하는 상황을 경험함

○ 원고료를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급을 요청하면 블랙리스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음

■ **기타 내용**

○ 인맥과 등단지 차별, 대형 문예지들이 창작 지원금을 자신의 상금처럼 인식하는 문제 등의 내용이 나옴

[표 4-1] 원고청탁 및 작품 발표 창작 대가 지급 과정 관련 심층면접 내용 정리

구분	원고료/지급	원고청탁서와 내용	기타
F		•청탁서에 고료 기재가 안 되어 있음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 금기됨	
L	•문학사상 작년 원고료 못 받음 •원고료 대신 정기구독 요구함	•청탁서를 안줌 •거부했더니 블랙리스트 되어 청탁 끊김	
B	•고료를 책으로 주려 함 •원고료를 언제 받을지 모름	•원고료 이야기는 안함 •큰 출판사는 2차 저작권 이야기해줌 •청탁서에 원고료 표기와 날짜 미비	
H	•원고료가 적어 항의하면 올려줌 •원고료 언제 받을지 모름	•소설은 화이트리스트 제도처럼 소수에게만 청탁이 감	•인맥과 등단지 차별이 있음
I	•20년 동안 원고료 인상 없음 •원고료를 언제 받을지 모름	•술자리에서 청탁서를 주거나 압박을 해서 받아냄	
A	•원고료 안주는 곳이 많음	•청탁서에 시 저작권 이야기가 없음 •청탁 편하게 할 데이터베이스 없어 힘듦	• 대형 출판사가 문예지 지원금을 상금처럼 생각함
E	•고료가 적어 생존 어려움 •원고료를 안줘서 항의, 이후 블랙리스트에 올라감	•고압적으로 강제 청탁함 •술자리 청탁함 •작가를 통해 다른 작가 청탁을 강제함	
C	•소설 지면이 없음	•전송권에 대한 이야기 없이 논문 사이트에 판매됨	• 지원금이 대형 출판사 위주임.
K	•문예지에 시를 실어 주겠다고 돈을 달라함		
M	•원고료를 못 주는 곳이 많음		• 국가 지원금이나 대형출판사가 아니면 원고료를 주는 것이 어려움

제2절 문학도서 출판 : 작품집 발간과 계약 등 출판과정

■ 신인일 때 발간 의뢰가 구두로 진행되는데, 계약서에 기반한 계약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경험한 사례도 제시됨

■ 구두 계약조차 충분한 고려와 협의에 기반하지 못한 사례들이 서술됨

■ 미리 계약서를 써서 다른 출판사와 계약을 못하게 하는 경우나 전집이나 시리즈물 기존 계약 내세워 특정한 내용의 계약을 강제하기도 함

■ 인세 지급에서도 판매 수량이 보고되지 않거나 물어보는 것에 대해 협박을 당하고, 지급이 늦거나 대량 납품에 대해 인세를 낮추는 사례가 서술됨

[표 4-2] 작품집 발간과 계약 등 출판과정 관련 심층면접 내용 정리

구분	발간 의뢰	계약과 계약서	인세 지급	기타
L	• 발행인이 특집을 하자고 압박 넣음. 거부하면 블랙리스트 됨		• 전자책 판매와 인세 보고 불규칙함	
B	• 구두로 약속을 해서 시집이 나오기까지 불안 • 다른 출판사와 출간하면 문단에서 소외됨	• 출판사 소속 선배 문인이 와서 음식점이나 커피점에서 구두 계약		
H	• 신인일 때 출판사들이 구두로 마구잡이로 계약 • 유명해지면 술자리 같은 곳에서 강제 계약	• 출판 과정 진행 중에서 계약서를 씀 •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 수 없음	• 전자책 판매량과 인세 보고 안 함 • 중쇄를 해도 안 알려줌 • 출판사가 부동산 투기 중이란 이유로 돈을 안 줌	
I		• 술자리에서 청탁서 주거나 압박해서 받아냄	• 20년간 원고료 인상 없으며, 원고료를 제때 안줌	
A	• 편집자가 시인이라 선배라는 것을 이용해 구두 계약된 시집을 사적으로 연락하여 미룸	• 소설은 소수에게만 청탁이 감(화이트리스트) • 구두계약		
J	• 전집이나 시리즈 물 작업할 때 다른 작가도 동일계약을 했다며 계약서를 강제	• 책이 나오거나 제작이 시작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함	• 3쇄를 찍어야 2쇄 인세를 지급함 • 대량납품 시 인세 강제로 낮춤	• 2차 저작권을 출판사가 가짐
G		•안 쓰고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봄.	• 대량납품 시 인세 강제로 낮춤	• 매절계약으로 저작권 빼앗고 돈을 한번만 줌
M	•미리 계약서를 쓰게 하여 다른 출판사와 계약을 못하게 함	•계약서를 안 쓰려고 피함	• 판매수량을 숨기고 물어보면 고소 협박	• 책 출간시 자신 시집 200부 강제로 사게 함

제3절 전송권과 2차 저작권

■ 전자책은 출판권과는 다른 전송권으로 구분되는데 출판권설정 계약서나 출판허락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방식이 관례적으로 사용됨

■ 잡지의 원고청탁서는 매절계약에 속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 내용이 없이는 출판사나 잡지사가 전자책을 포함한 전송권을 가지지 못함

■ 전송권과 2차 저작권 불공정 관행은 문예지에 게재된 작품, 출판된 문학도서, 공모전과 문학상 작품 전체적으로 발행되고 있음

■ 문예지에 게재된 작품에 대해 전송권과 2차 저작권 내용이 원고청탁서에 작성되지 않으며 문학 출판에서는 별도 계약이 아닌 종이책 계약 부속 내용으로 간략에게 작성되고 있음

■ 문예지 게재 작품과 문학도서 모두 전자책의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와 인세 보고가 불규칙하고 서술됨.

■ 2차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출판사가 보유하는 경우도 발견됨. 또는 계약서 내용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표 4-3] 2차 저작권 관련 심층면접 내용 정리

구분	전자책	해외판권	2차 저작권	기타
F			• 매절계약이 문제임 • 신춘문예당선 수록 시집 소설집 올해의문제 소설 모두 인세 안줌	• 계약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음
L		• 해외 판권 관련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음 • 내 책이 번역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해외 출간		
H	• 문예지 전자책 제작이 많은데 수익에 대한 안내가 없음		• 2차 저작권 계약을 하지 않음 따로 계약을 할 필요 있음	• 저작권 판면권 구두로 설명을 한 적 없음
J	• 월정액구독 시스템 보상 못 받고 있음		• 2차 저작권을 출판사가 가져감	• 강압에 의해 쓰여짐
I	• 월정액 구독 15회 읽으면 1권으로 친다고 함. 심각함	• 20년동안 원고료 인상 없음	• 고지를 하나 기본 계약서에 끼어넣음	• 술자리에서 청탁서를 주거나 압박을 해서 받아내기에 상세하게 살펴볼 수 없음

제4절 공모전과 문학상

■ 문학상 상금과 계약

○ 문학상에 대한 소개나 공모 내용에서 상금과 매절 계약, 저작권 등에 관한 정보가 없거나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황임

○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상금을 매절 계약의 선인세로 처리. 상금이 늦게 지급되거나 심지어 행사비나 뒤풀이 비용을 수상자가 지불해야 함

○ 문학상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부 상금을 되돌려 달라는 사례가 있었음

■ 저작권 계약

○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문학상 수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출판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험을 함

■ 기타 내용과 인식

○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대부분 지적하는 불공정 사례는 수상에 대한 작가 결정권이 없는 부분임

○ 수상을 거부하면 문단 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문학상이 출판사의 권력 유지용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

[표 4-4] 문학상과 유사 공모제도 참여와 저작권 관련 심층면접 내용 정리

구분	상금	계약서	저작권	기타
A	• 상금으로 행사비용과 술값 내게 함	• 계약서 없음 • 상금을 주었지만 원고 재수록료 없었음		• 작품을 안 보고 사람을 보고 상을 줌 • 수상에 작가 결정권 없음 • 상을 만들어서 출판사 충성하는 작가에게 줌
H	• 상금을 매절계약의 선인세로 함[20]	• 거부할 수가 없이 강제로 계약을 강요받음	• 저작권을 출판사가 가지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	• 수상에 작가 결정권 없음 • 수상 거부하면 심사위원 권위 무시로 치부 받아 문단생활 어려워짐
J	• 상금을 매절계약의 선인세로 함 • 상금을 책을 낸 이후에 줌		•저작권을 출판사가 가지는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	
G	• 상금을 매절계약의 선인세로 함		•저작권을 출판사가 가지는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	• 문학상이 출판사의 권력 유지용임
I	• 상금을 수상 20일 지난 후에 줌	• 저작권 계약서만 씀		• 수상에 작가 결정권 없음[21]
K	• 일부 문예지는 상을 주고 돈을 내놓으라고 함 • 일종의 등단 장사로서 돈을 벌기 위해 상을 만들어 팜	•계약서 없음	• 저작권을 출판사가 가지는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	• 중소 문예지엔 투고 자체를 하지 않음 • A급 문예지에 등단하지 않으면 청탁의 기회가 오지 않음 • 메이저들끼리의 블랙리스트가 문제
L	• 상금으로 시상식 후 뒷풀이 술값 내게 함 • 상금으로 선인세 처리를 하여 출간시 원고료가 없음	•계약서 없이 진행됨		• 현대시작품상 수상 후 문예지 특집으로 실리는 과정에서 원고료는 별도로 없을 뿐더러 평론가비용도 창작자가 직접 지급하게 함[22]

20) “상금하고 인쇄를 따로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워낙 작품집이 1쇄를 넘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2쇄를 찍어도 안 주기도 대체로 선인세 개념이고 잘 팔려도 추가 인세를 준적도 없고요. 계약서를 쓰거나 따로 설명을 해주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후보일 때 재수록 매절을 한번 20만원 30만원 받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작품집을 여러쇄 찍어서 인세를 받았다는 소리는 못들어 봤어요. 추가 수익 및 판매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한 젊은작가수상작품집도 그러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소설가 A)

제5절 불공정 관행 인식

■ 문학 생태계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심층면접의 질문에 대해 참여자들은 답변들은 문학 창작가와 노동자, 문학 창작자 권익을 위한 기성 단체와 대한의 단체, 정책 지원 등으로 구분됨

■ **문학 창작가와 노동자**

○ 심층면접 참여자 대부분은 작가는 노동자라는 인식을 밝혔으며 따라서 작가들의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음

■ **문학 창작자를 위한 권익 단체**

○ 심층면접 참여자 대부분은 한국문학작가회의가 노동자 권익단체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노조나 신탁단체 등 작가를 위한 권익단체의 필요성을 강조함

■ **정책에 대한 의견**

○ 문학 창작자들에 대한 정보 아카이브와 신인 작가를 위한 교육과 작가들의 2차 저작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

21) “갑자기 상을 받았다고 전화가 오는거야. 그리고 갑자기 수상식이 있다고 빨리 오라는데 전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그래서 갑자기 갔는데 미군이 학살한 사람들을 위한 상이라는거야. 받았지 그래서. 그리고 그 문제있는 상에서 연락이 오는데 다 아는사람이고 선배님들인데 어떻게 안 받는다고해. 그게 다 압박이고 힘이지.”(소설가 I)

22) “현대시작품상. 시 10편, 자전에세이 40매, 시인과의 인터뷰 50매, 평론 두 편을 내야 하는데 원고료는 없다. 문예지 특집으로 실린다. 반 정도 분량을 차지한다. 원고료는 없고 상금 500만원 받은 것에 포함되는데, 시상식날 술값도 내야한다. 그런데 문예지 특집하기 위해서 평론가 비용은 따로 지급 3, 40매에 10만원 20만원씩 줘야 한다. 그러다 보니 너의 인맥으로 해결해라 하고 작가에게 맡기는 것임. 상을 받고 그 뒤에 겪는 것은 다시 돌려주고 싶다. 시상식 후에 술값도 내야한다. 자율과 고정된 문화는 다른 이야기임 기본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다.”(시인 L)

[표 4-5] 불공정 관행 인식 내용

구분	작가와 노동자	기성 단체와 대안 단체	정책 지원	기타
F	• 작가는 노동자가 아니다. 예술가로 살펴야 한다.	• 작가회의 저작권 위원장 • 작가회의는 작가를 위한 단체 보단 가치연대임, 작가를 위해 노력하겠다.		• 한국작가회의는 작가들과 문예지 양박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L	• 작가는 노동자 • 노조 필요	• 작가회의는 10년간 작가를 위해 아무것도 안 했다. 출판사 편이다 • 노조 혹은 저작권 신탁 단체 필요	•법적으로 문인은 지워진 존재다. 제도 정비 필요.	• 법적으로 직업으로 인정하길 바람
B	• 작가는 노동자 • 노조 필요		•문예지를 아카이빙 하고 신인작가들을 교육을 정부에서 해달라 •익명의 소통 장소를 만들어 달라	• 출판사에 찍힐까봐 걱정. 불공정에 대항하려고 해도 출판사가 억압해 불가능
H	• 작가는 노동자			• 메이저 출판사에 들어가냐 못하냐가 크다
I	• 노조 필요	• 한국작가회의, 문인협회는 작가 권리를 위한 단체가 아니다 • 작가 노조가 무조건 필요함. 예술인권리보장법 필요 • 문체부가 문제. 더 적극적이어야 함.	•대한민국예술원의 적폐	•한정된 예산을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정상이 아닌 문학단체에 돈이 배분되고 있으며 내가 심사위원임에도. 심사결과가 바뀜
A	• 작가 노동자	• 작가 노조는 사실상 불가능 • 이상과 현실이 다름.		•새로운 단체가 생기는 것 자체가 권력일까 걱정
E	• 작가 노동자	• 다 같이 힘을 합해 작가를 위한 집단 만들어야 • 국가가 나서줬으면		
C	• 작가 노동자 • 노조	• 작가회의는 의미 없음. 작가를 못 지켜줌 • 새 단체가 나오길 바람		
J		• 어린이 책작가 연대 변호사 자문 저작권 교육을 잘함	•추가보상 청구권이 필요 하지만 몇 권이 팔렸는지도 모름 2차 저작권 지켜달라	

제6절 소결과 시사점

1. 소결

■ 문예지 게재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은 주로 원고 청탁, 작품 발표, 창작 대가 지급 과정을 통해 발생함

○ 원고 청탁은 구두로 이루어지도 하며, 고압적으로 또는 다른 작가를 통해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음

  – 원고청탁서에는 원고료, 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 대한 정보가 작성되어 있지 않는다고 서술되었음

○ 게재된 작품의 원고료가 지급되지 않거나 정기구독으로 대체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음

  – 원고료가 적다고 항의하면 인상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블랙리스트에 올려진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 문학도서 출판에서 불공정 관행은 발간 의뢰, 계약과 계약서, 인세 지급 과정을 통해 발생함

○ 특히 신인일 때 발간 의뢰가 구두로 진행되고 계약서에 기반한 계약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경험한 사례도 제시됨

○ 구두 계약조차 충분한 고려와 협의에 기반하지 못한 사례들이 서술됨

○ 미리 계약서를 써서 다른 출판사와 계약을 못하게 하는 경우나 전집이나 시리즈물 기존 계약 내세워 특정한 내용의 계약을 강제하기도 함

○ 인세 지급에서도 판매 수량이 보고되지 않거나 물어보는 것에 대해 협박을 당하고, 지급이 늦거나 대량 납품에 대해 인세를 낮추고, 출간된 책에 대해 강제로 사게 하는 사례도 있음

■ 전송권과 2차 저작권 불공정 관행은 문예지에 게재된 작품, 출판된 문학도서, 공모전과 문학상 작품 전체적으로 발행되고 있음

○ 문예지에 게재된 작품에 대해 전송권과 2차 저작권 내용이 원고청탁서에 작성되지 않으며 문학 출판에서는 별도 계약이 아닌 종이책 계약 부속 내용으로 간략에게 작성되고 있음

○ 문예지 게재 작품과 문학도서 모두 전자책의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와 인세 보고가 불규칙하고 서술됨

○ 2차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출판사가 보유하는 경우도 발견됨

○ 또는 계약서 내용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됨

■ 공모전과 문학상에서 불공정 관행은 공모 과정과 문학상 소개 내용에서 상금과 저작권 계약 등을 통해 발생함

○ 공모전과 문학상 소개 내용에 상금과 저작권 계약에 대한 내용인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은 채, 그리고 수상자로 결정되는 과정을 전후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있었음

○ 이런 과정은 상금을 작품 매절 계약금으로 지불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심지어 계약금을 되돌려 달라거나, 상금을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사례도 서술됨

○ 또한 문학상의 경우에는 수상의 작가 결정권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이상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은 '작가와 노동자', '기성 단체와 대안 단체', '정책 지원' 등의 주제에 대해 심층면접이 진행되었음

○ 참여 작가들은 작가가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보여줌

○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기존 단체들의 작가 대변 단체로서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한 데에 기반함

○ 정책적으로는 작가 정보 아카이브와 신인 작가 교육과 작가들의 2차 저작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2. 시사점

■ 불공정 관행은 문예지 게재, 문학도서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 모두에서 그 과정을 통해 발생되고 있음

■ 문예지 발간, 문학도서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에서 지배적 지위의 과도한 남용은 문학 생태계가 자유로움과 공정함, 투명성과 존중, 그리고 대화에 기초를 둔 공동 협력의 활성화 가능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문예지 게재 원고청탁서와 문학도서 출판과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그리고 공모전과 문학상이 공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 제기됨

■ 문학 창작자가 존중받으며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창작 대가에서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관점에서 계약이라는 사안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창작물에 대한 보상인 원고료, 인세,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에 대한 사회적 협의와 수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기술과 미디어 변화를 고려한 문학 창작자의 관점에서 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요구됨

■ 불공정 관행과 개선을 위한 실천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요구를 대변할 단체가 부재하거나 기존 단체들이 그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

■ 작가들의 집합적 활동과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정보와 교육, 컨설팅 등이 필요함

■ 문예지, 문학도서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을 운영하는 출판사와 개인들이 저작권법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불공정관행에 대해 인식과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규범과 강제성이 마련되어야 함

제5장

문학 창작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1절 분석 대상

■ 설문조사명 :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설문조사
■ 수집기간 : 2020년 7월 10일 ~ 2020년 7월 27일 (18일간)
■ 수집된 전체 표본 및 유효 표본
○ 전체표본 : 2,126명
○ 유효표본 : 1,523명(중도 탈락으로 인한 결측치 603명 제외)
■ 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SPSS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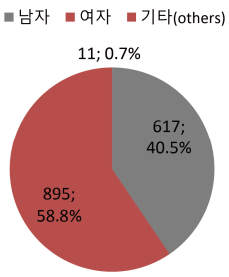
제2절 설문조사 분석

1. 설문 참여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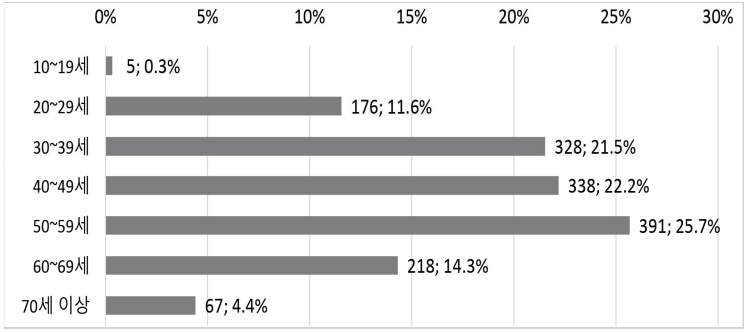
가. 인구통계학적 정보

■ **성별**
○ 여성이 895명(58.8%), 남성 617명(40.5%), 기타 11명(0.7%)이 참가하여 여성들의 참여가 남성보다 18.3% 더 많았음
■ **연령대**
○ 50~59세가 391명(25.7%), 40~49세가 338명(22.2%), 30~39세가 328명(21.5%) 순으로 참여하였으며, 60~69세 연령대가 20~29세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현상을 보임

[그림 5-1] 설문 참가자 성별



[그림 5-2] 설문 참가자 연령대별



나. 창작활동의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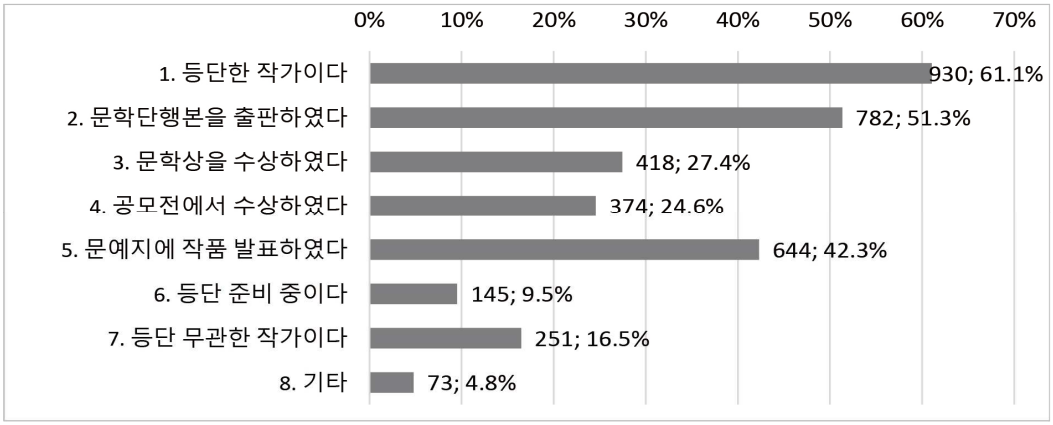
■ **참여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자신의 창작활동의 범주(복수응답 가능)**는 '등단한 작가이다'라고 대답한 사례가 930명(61.1%), '문학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782명(51.3%),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였다' 644명(42.3%) 순으로 응답하였음

○ 문학상을 수상한 참가자 418명, 공모전 수상 경험자도 374명, 등단 준비 중인 창작자 145명, 등단과 무관한 작가도 145명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창작활동에 속한 문학생태계의 구성원들이 이번 설문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줌

■ 기타 의견으로는 웹소설, 이북(e-Book), 장르문학 작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다수의 작가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작 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단행본 발간 등의 이력을 적어주었으며 문화예술 기획 편집자, 번역가, 아동문학 작가 등으로 활동 중이라고 응답함

[그림 5-3] 창작자 자신이 판단한 창작활동의 범주(복수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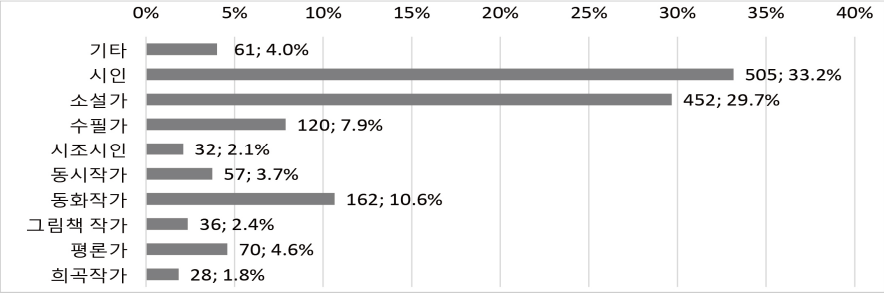


다. 대표적인 문학 창작 활동

■ **설문 참가자들의 대표적 창작활동**을 살펴보면 시인 505명(33.2%), 소설가 452명(29.7%), 동화작가 162명(10.6%) 순으로 참가하였음

○ 설문 문항에 소설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를 선택하고 본인이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13명으로서, 이들은 소설가와 웹소설 작가를 다른 창작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판단됨

[그림 5-4] 설문 참가자 대표적 창작활동



라. 문학 창작 활동 이외의 대표적인 활동

■ **창작활동 이외의 대표적 활동(복수선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07명(39.9%)이 창작자로만 활동한다고 응답하였음

○ 이는 전업작가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창작활동 이외에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 활동으로는 문학 출판이 366명(24.0%), 문학분야 교육자 220명(14.4%), 문예지 출판 110명(7.2%) 등으로 응답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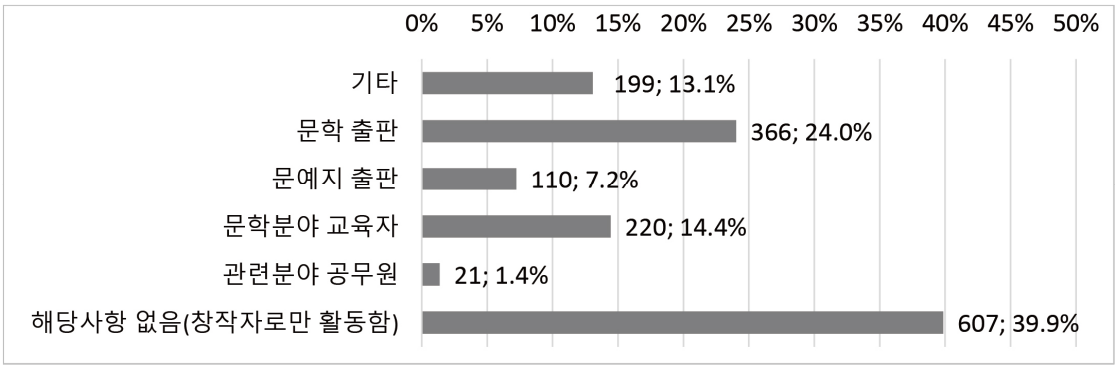
■ 기타의견을 선택한 참가자도 199명(13.1%)이나 되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 문학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타 분야 예술,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사례, 문학과 관련없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례가 공존함

○ 문학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작가와 함께 글쓰기 혹은 문학 강사 또는 교수를 병행하거나 문학 외 예술 분야 단체 활동 및 강사로 재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문학관 등 문학 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 근무, 출판편집자, 문예지 편집위원, 번역가, 기자, 인쇄업 등 문학 연관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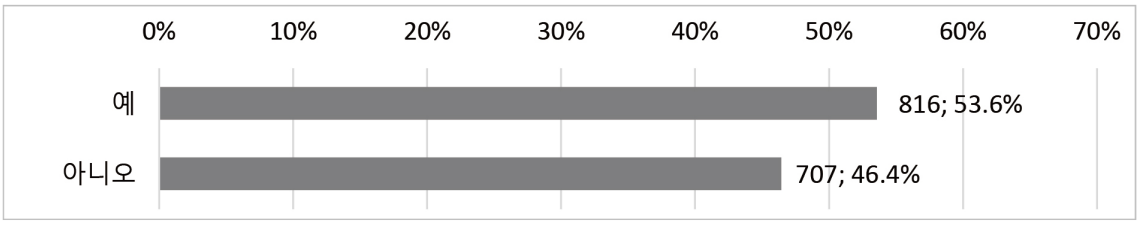
[그림 5-5] 이외의 대표적 활동(복수선택)



마. 문학 관련 협회/단체 가입여부

■ 문학 관련 협회/단체 가입여부는 816명(53.6%)이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707명(46.4%)이 아니라고 응답함. 성별, 연령대별과 함께 문학관련 협회/단체 가입여부를 교차분석의 중요한 구분점으로 활용하고자 함

[그림 5-6] 문학 관련 협회/단체 가입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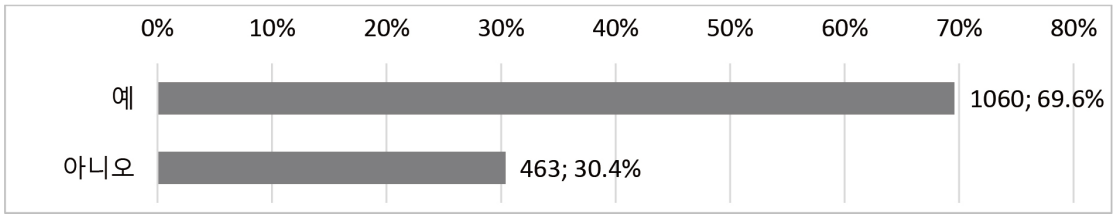
2. 원고청탁 및 작품 발표 과정

가. 문예지 원고 게재 경험

■ 문예지에 귀하의 원고를 게재한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9.6%가 게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4%는 없다고 응답하였음

■ 본 항목에서는 문예지 원고 게재시의 원고 청탁 및 작품 발표 과정을 다루고 있기에,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는 '문학도서 출판과정' 설문으로 이동하도록 하였음

[그림 5-7] 문예지 원고 게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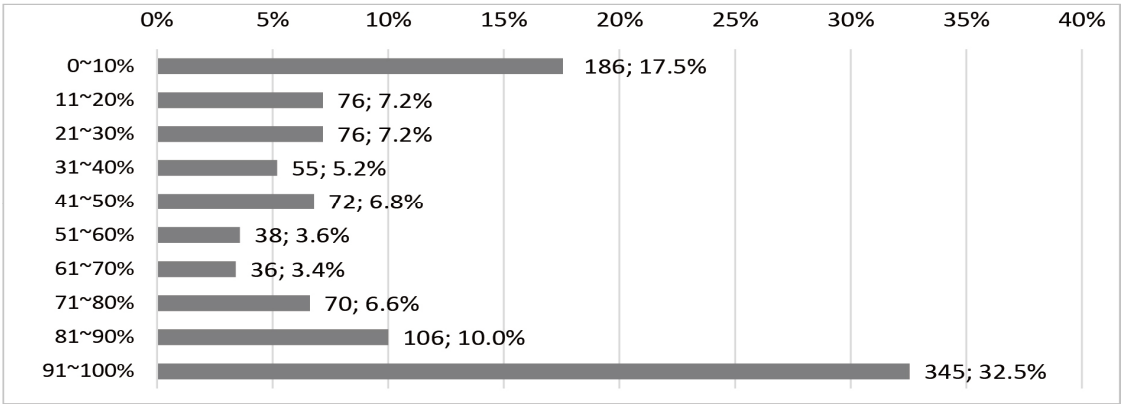
나. 원고청탁서를 받는 비율

■ 문예지 원고 청탁 과정에서 원고청탁서를 받는 비율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문예지 원고 게재 경험이 있는 1060명은 평균 59.6%라고 응답함

■ 원고청탁서를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거의 받고 있다고 응답한 91~100% 구간이 345명(32.5%)으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하는 0~10% 구간이 그 다음인 186명(17.5%)을 차지하고 있음

■ 원고청탁서는 많이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도 40.4%에 해당하는 창작자들이 원고청탁서를 받지 못한 채 원고를 게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그림 5-8] 원고청탁서를 받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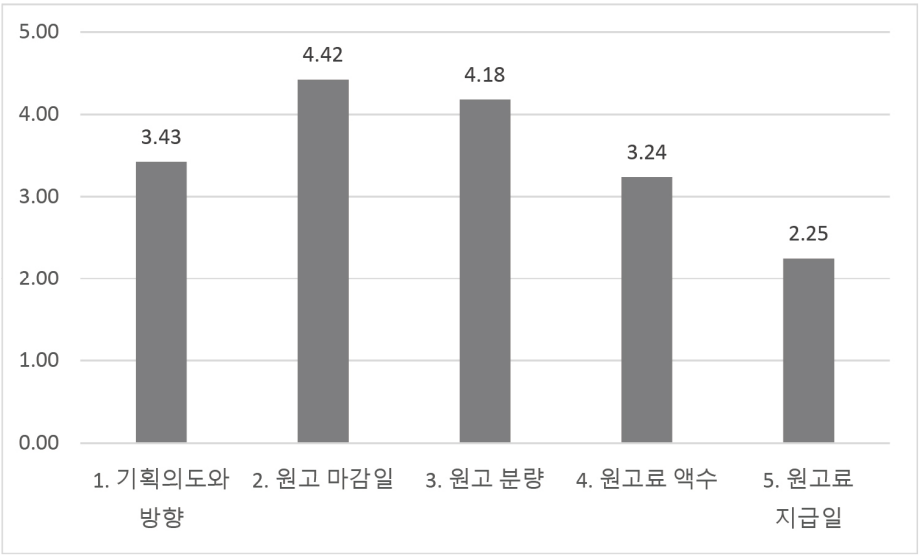


다. 원고청탁서에 수록된 내용

■ 원고청탁서에 수록되는 ①기획의도와 방향, ②원고마감일, ③원고분량, ④원고료 액수, ⑤원고료 지급일에 대한 항목이 실제 원고청탁서에 얼마나 수록되어 있는가를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다(1점), 수록되어 있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수록되어 있는 편이다(4점), 항상 수록되어 있다(5점)의 5단계로 동의여부를 조사하였음

■ 각 항목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원고마감일(4.42)'>'원고분량(4.18)'>'기획의도와 방향(3.43)'>'원고료 액수(3.24)'>'원고료 지급일(2.25)'순이었음. 원고료 액수와 지급일에 대한 정보가 원고청탁서에 잘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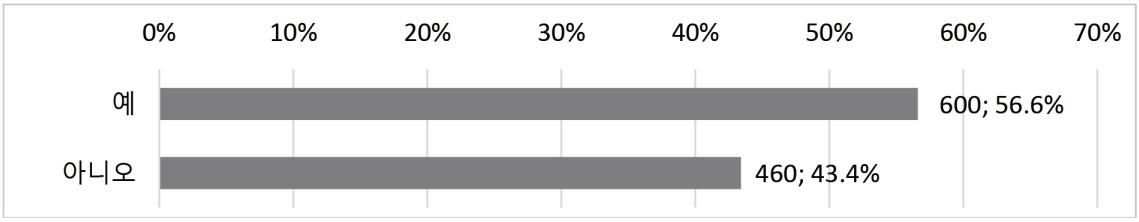
[그림 5-9] 원고청탁서에 수록된 내용



라. 원고청탁서 없이 구두로만 청탁 받은 경험

■ 원고청탁서 없이 구두로만 청탁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00명(56.6%)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구두 청탁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5-10] 구두로만 청탁받은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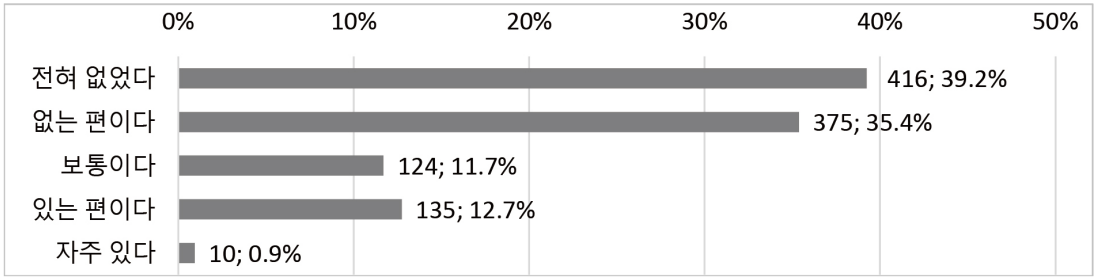
■ (교차분석) 원고청탁서 없이 구두로만 청탁받은 경험과 대표 창작자들의 연령을 교차분석한 결과 50~59세 35.5% > 60~69세 20.5%> 40~49세 20.2% > 30~39세 11.7% > 70세 이상 7.0% 순으로 분석되었음. 연령이 높을수록 원고청탁서 없이 구두로만 청탁받은 경험이 많고 젊은 세대일수록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교차분석) 원고청탁서 없이 구두로만 청탁받은 경험과 대표 창작자들의 협회나 단체 소속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협회단체에 소속 58.5%, 소속 되지 않음 51.5%로 분석됨. 협회나 단체에 소속된 경우 평균값인 56.6%보다 높은 비율로 원고청탁서 없이 구두로만 청탁받고 있었음

마. 구두 청탁 후 청탁서가 오지 않아 작품 발표 시기를 놓친 경험

■ 구두로 원고를 청탁받은 후 청탁서가 오지 않아서 작품 발표시기를 놓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416명(39.2%)이고, '없는 편이다'는 응답이 375명(35.4%)으로서 약 74.9%는 이런 경험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나머지 응답자의 경우에는 네 명 중에 한 명(25.1%)이 구두 청탁으로 인한 발표 시기를 놓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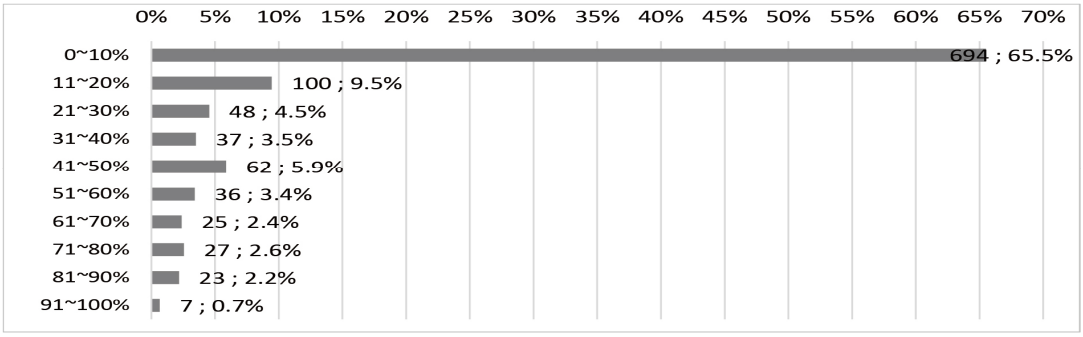
[그림 5-11] 구두 청탁 후 청탁서가 오지 않아 발표 시기를 놓친 경험



바. 구두 청탁이 실제 원고 게재로 연결되지 않은 비율

■ 구두 청탁이 실제 원고 게재로 연결되지 않는 비율이 얼마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평균 11.8%라고 조사됨. 이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다음 그래프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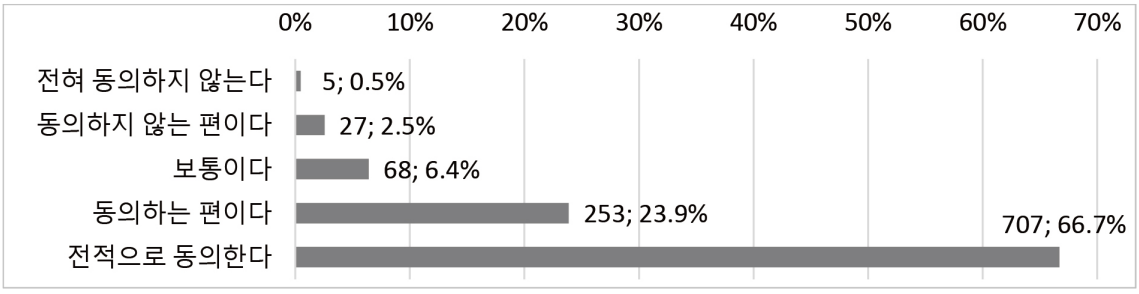
[그림 5-12] 구두 청탁이 실제 원고 게재로 연결되지 않은 비율



사. 원고청탁서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

■ 문예지 원고 청탁 과정에서 원고 청탁서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대해 문학창작자들은 5점 척도 기준 4.54점의 동의 경향을 보여줌. '전적으로 동의한다(66.7%)'와 '동의하는 편이다(23.9%)'를 합산하면 90.6%로서 대부분의 창작자가 원고청탁서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함

[그림 5-13] 원고청탁서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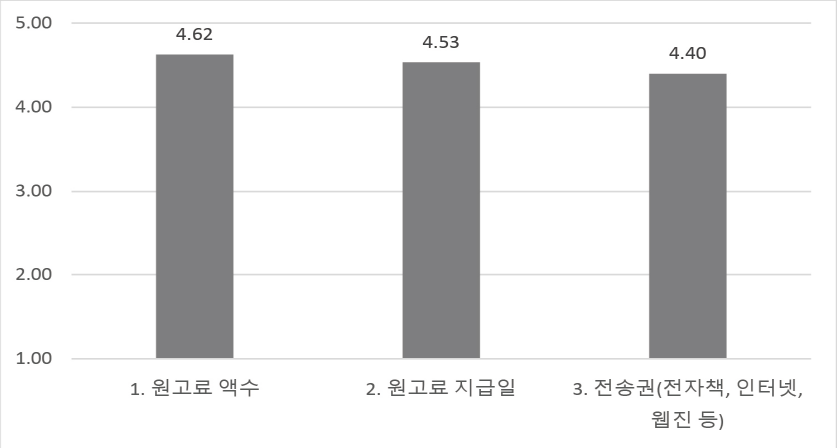


아. 원고청탁서에 포함되어야 할 각 항목에 대한 동의정도

■ 원고청탁서에 수록되어야 할 항목으로서 ①원고료 액수, ②원고료 지급일, ③전송권(전자책, 인터넷 웹진)에 대해 창작자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전적으로 동의한다(5점)의 5단계로 동의여부를 조사하였음

■ 각 항목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원고료 액수(4.62)'>'원고료 지급일(4.53)'> '전송권(전자책, 인터넷, 웹진 등)(4.40)'순이었음. 모두 높은 동의를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 원고료 액수와 원고료 지급일에 대한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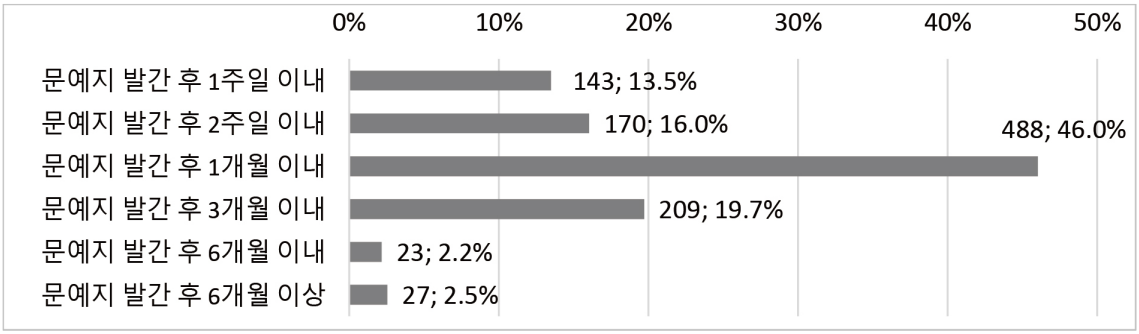
[그림 5-14] 원고청탁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



자. 원고료 지급 시기

■ 원고료 지급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문예지 발간 후 1개월 이내(488명, 46.0%)' > '문예지 발간 후 3개월 이내(209명, 19.7%)' > '문예지 발간 후 2주일 이내(170명, 16.0%)' 순으로 응답함. 문예지 발간 이후 6개월 이상에 지급되는 경우도 27명(2.5%)에 달함

[그림 5-15] 원고료 지급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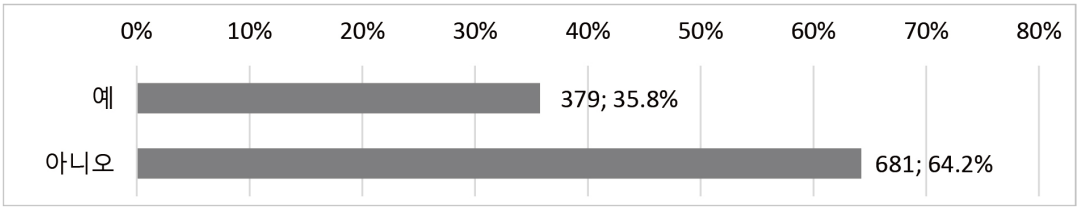


■ 기타의견을 작성한 사례가 12건이었는데, '받지 못했다'와 '문예지로 대체됐다'는 답변이 과반수를 차지해 원고 청탁 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드러냄. 이와 더불어 '발간 후 1주일부터 6개월까지 문예지별로 상이하다'는 답변이 주를 이뤄 통일된 규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차. 원고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험 여부

■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379명(35.8%)이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그림 5-16] 원고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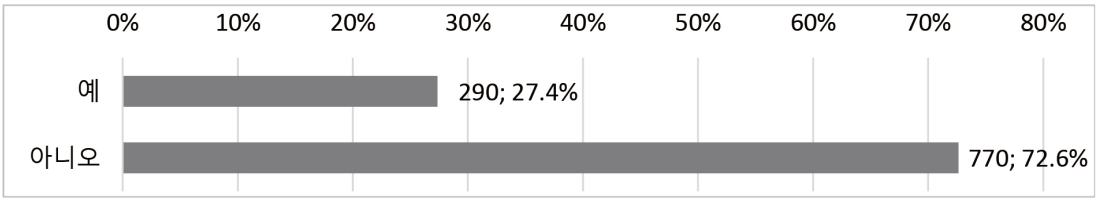


■ (교차분석) 원고료 못 받은 경험과 대표 창작분야를 교차분석한 결과 시조시인 56.5% > 평론가 44.4% > 시인 43.3%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평균값인 35.8%를 넘는 수준임. 소설가는 34.2%로서 평균 이하였으며, 그림책작가는 12.5%, 동화작가는 14.8%로서 아동문학의 경우 원고료 못 받은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됨

카. 원고료 지급이 지연될 때 문예지에 원고료 지급을 요청한 경험 여부

■ 원고료 지급이 지연될 때 문예지에 원고료 지급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290명(27.4%)은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70명(72.6%)은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그림 5-17] 원고료 지급이 지연될 때 문예지에 원고료 지급을 요청한 경험 여부



■ (교차분석) 원고료 지급 요청 경험이 있는 창작자들을 대표창작분야로 교차분석한 결과 평론가 40.7% > 희곡작가 40.0% > 소설가 39.9% > 그림책 작가 37.5% > 기타 작가 36.4% 순으로 평균값을 상회하였음. 수필가는 16.9%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교차분석) 원고료 지급 요청 경험과 대표 창작자들의 연령을 교차분석한 결과 20~29세 45.0% > 30~39세 35.3% > 50~59세 21.9% > 40~49세 20.2% > 60~69세 16.5%> 70세 이상 12.1% 순으로 분석되었음. 젊은 세대일수록 원고료 지급 요청 경험이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교차분석) 원고료 지급 요청 경험과 창작자들의 협회나 단체 소속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협회단체에 소속 23.6%, 소속 되지 않음 37.2%로 분석됨. 협회나 단체에 소속된 경우 평균값인 27.4%보다 낮은 비율로 원고료 지급 요청을 한 경험이 있었음

타. 문예지에 원고료 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주관식)

■ 문예지에 원고료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770명(72.6%)에 대해 그 이유를 묻자 실제로 원고료 지급이 늦어진 적이 없어서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늦어졌는데도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함

■ "추후 청탁이 끊기는 등 불이익을 받을까봐", "문학계 관계성 때문에", "까다로운 작가라는 인식이 생겨서", "뒷담화의 대상이 되어서", "돈을 밝힌다고 볼까봐" 등 내부 시선을 의식한 사례가 다수임

■ 이외에도 "문예지의 경영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아서", "적은 액수를 말하기 민망해서", "선배, 교수 등 지인이 청탁한 것이어서"와 같이 앞선 답변과 크게 무관하지 않은 이유가 기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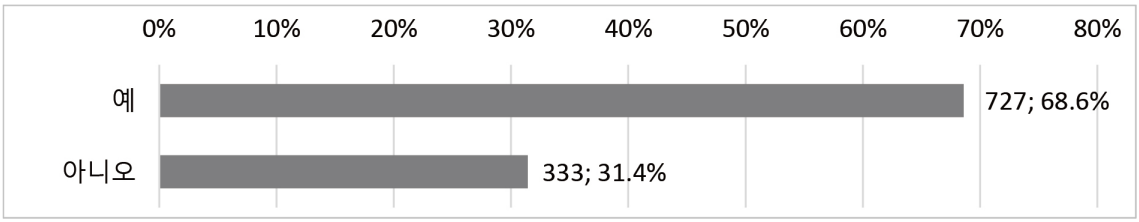
- 밉보여서 다음번 청탁을 받지 못할까봐(불이익을 당할까봐)
- 워낙 소액이라 말하기가 구차하여(궁색해 보일까봐)
- 언젠가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림(상호신뢰)
- 체면상 말하기가 민망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 학과 교수가 발행인이라서
- 문학계 선배나 선생님 격이기에 건의하기 어려움(인간관계)
- 원고료 못주면 책으로 준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 원고료 대신 계간지 정기구독으로 대체 요구하는 출판사가 많기 때문
- 등단한지 얼마 안 된 신인이라 관행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 문예지 제작자들과 작가들은 갑을관계라서
- 문예지의 행정처리가 서투르다는 것을 감안해서
- 청탁서에 본래 지급기일이 쓰여 있지 않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파. 원고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받거나 기금 납부를 요구받은 경험여부

■ 원고료를 현금이 아닌 책이나 잡지, 정기구독권, 기타 물건 등으로 지급받거나, 문예지 발전기금의 형태로 납부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8.8%에 해당하는 727명이 '예(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함

○ 이는 문예지 운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고료 처리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5-18] 원고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받거나 기금 납부를 요구받은 경험여부



■ (교차분석) 다른 물건으로 받거나 기금 납부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창작자들을 대표창작분야로 교차분석한 결과 시인 83.2% > 시조시인 82.6% > 동시작가 71.7% > 수필가 67.6% > 동화 작가 62.3% 순으로 높은 비율값을 보여줌. 그림책 작가는 37.5%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교차분석) 다른 물건으로 받거나 기금 납부를 요구받은 경험과 창작자들의 연령을 교차분석한 결과 60~69세 81.1%> 70세 이상 72.7% > 50~59세 72.3% > 40~49세 68.3% > 30~39세 51.3% > 20~29세 43.3% 순으로 분석되었음

○ 연령이 높을수록 이 경험이 매우 많은 편이며 젊은 세대일수록 이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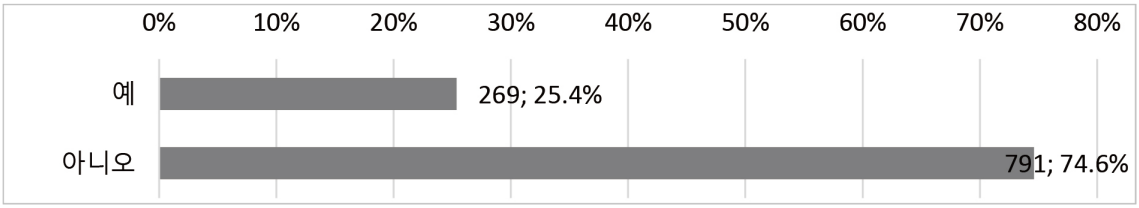
■ (교차분석) 다른 물건으로 받거나 기금 납부를 요구받은 경험과 창작자들의 협회나 단체 소속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협회단체에 소속한 비율이 73.9%, 소속 되지 않은 비율이 54.6%로 분석됨

○ 협회나 단체에 소속된 경우 평균값인 68.6%보다 높은 비율로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음

하. 대량의 문예지 구입 및 금품지급,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은 경험 여부

■ 문예지 작품 게재를 명목으로 대량의 문예지 구입 및 금품지급을 요구받거나, 명목상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25.4%에 해당하는 269명이 '예(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함

[그림 5-19] 대량의 문예지 구입 및 금품지급,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은 경험 여부



■ (교차분석) 대량의 문예지 구입 및 금품지급,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창작자들을 대표창작분야로 교차분석한 결과 기타 40.9% > 동시작가 37.7% > 수필가 32.4% > 희곡 작가 30.0% 순으로 높은 비율값을 보여줌. 평론가는 13.0%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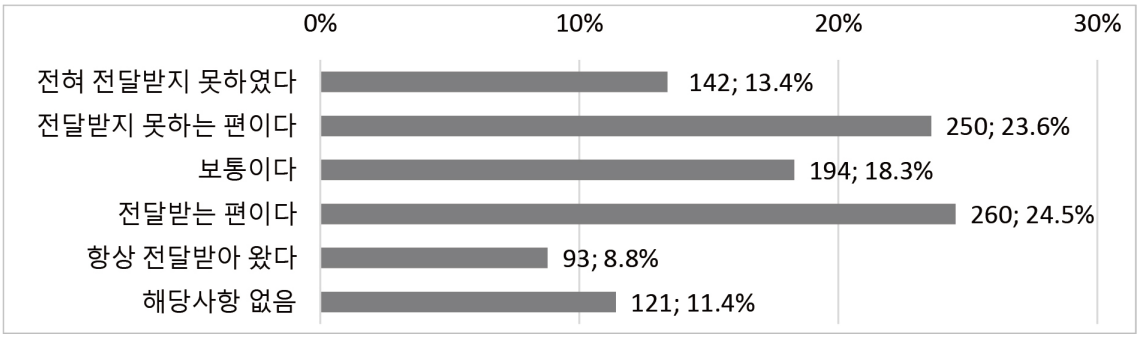
■ (교차분석) 문예지 작품 게재를 명목으로 대량의 문예지 구입 및 금품지급을 요구받거나, 명목상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받은 경험과 창작자들의 협회나 단체 소속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협회단체에 소속된 비율이 27.6%, 소속 되지 않은 비율이 19.5%로 분석됨

○ 협회나 단체에 소속된 경우 평균값인 25.4%보다 높은 비율로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음

거. 문예지 원고가 전자책·인터넷·웹진에 게재된다는 것을 사전에 전달받은 정도

■ 문예지에 게재된 원고가 전자책이나 인터넷, 웹진에 게재되는 경우 사전에 이 사항을 전달받는 편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21명(11.4%)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전달받는 편이다'(260명, 24.5%) > '전달받지 못하는 편이다'(250명, 23.6%) > '보통이다'(194명, 18.3%) 순임

[그림 5-20] 문예지 원고가 전자책·인터넷·웹진에 게재된다는 것을 사전에 전달받은 정도



■ '전혀 전달받지 못하였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42명(13.4%)으로서, '항상 전달받아왔다'(93명, 8.8%)보다 많으며, 전체적으로 사전에 전달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교차분석) 전자책·인터넷·웹진에 게재에 대해 전달받은 정도(전혀 전달받지 못함)와 창작자들을 대표창작분야로 교차분석한 결과 시조 시인 30.4%> 기타 27.3% > 그림책 작가 25.0% > 평론가 14.8% > 시인 14.1% 순으로 높은 비율값을 보여줌

○ 동화 작가는 8.2%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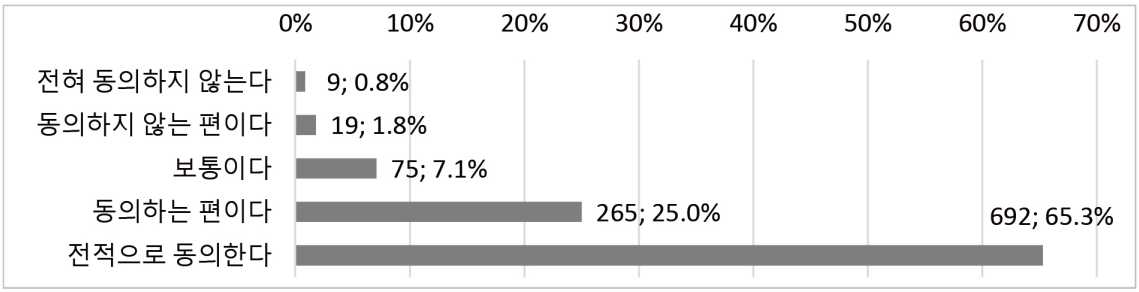
■ (교차분석) 전자책·인터넷·웹진에 게재에 대해 전달받은 정도(전혀 전달받지 못함)와 창작자들의 연령을 교차분석한 결과 50~59세 34.5%> 60~69세 28.2% > 40~49세 15.5% > 70세 이상 11.3% > 30~39세 9.9% > 20~29세 0.7% 순으로 분석되었음

○ 연령이 높을수록 전혀 전달받지 못한 정도가 높은 편이며 젊은 세대일수록 이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너. 전자책·인터넷·웹진 게재 사실을 사전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 문예지에 게재된 원고가 전자책이나 인터넷, 웹진에 게재되는 경우 작가에게 그 사항이 원고청탁서를 통해 미리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92명(65.3%),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65명(25.0%)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문학창작자들이 동의 의사를 밝힘

[그림 5-21] 전자책·인터넷·웹진 게재 사실을 사전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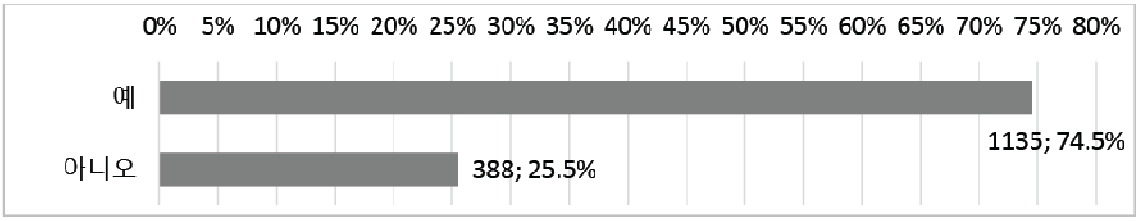
3. 문학도서 출판과정

가. 문학분야 도서 출간 경험

■ 문학분야의 도서를 출간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135명(74.5%)이 '예'라고 응답하였음

○ 이는 문예지에 원고를 게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060명(69.6%)이 '예'라고 응답한 것보다 4.9% 높은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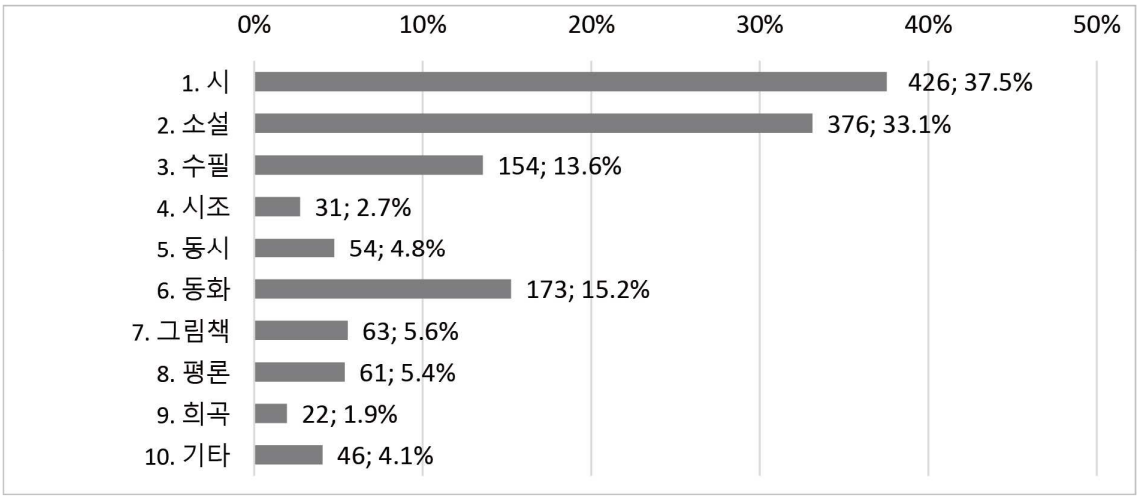
[그림 5-22] 문학분야 도서 출간 경험



나. 출간한 문학도서의 분류(복수선택)

■ 단독 또는 앤솔로지(공저)로 출간한 문학도서는 어떤 도서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시'(426명, 37,5%) > '소설'(376명, 33.1%) > '동화'(173명, 15.2%) > '수필'(154명, 13.6%) 순으로 응답함

[그림 5-23] 출간한 문학도서의 분류(복수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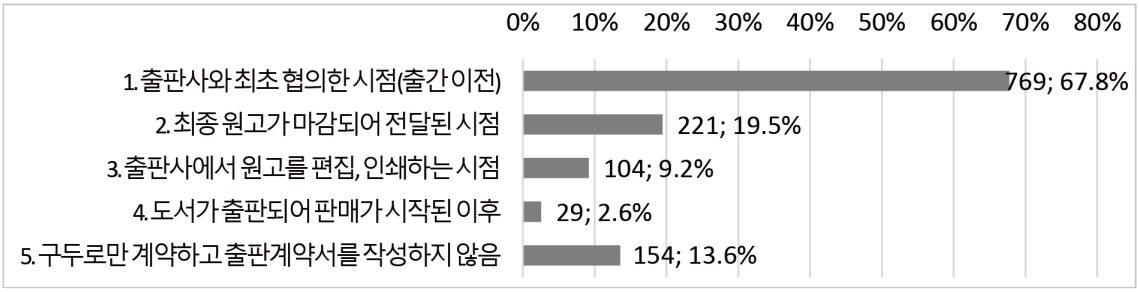


다. 문학도서 출간 시 출판계약서 작성 시기(복수 선택 가능)

■ 문학도서를 출간할 경우 출판계약서는 대체적으로 언제 작성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경우에 따라 응답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복수 선택을 허용함) '출판사와 최초 협의한 시점'(769명, 67.8%) > '최종원고가 마감되어 전달된 시점'(221명, 19.5%) > '구두로만 계약하고 출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154명, 13.6%) > '출판사에서 원고를 편집, 인쇄하는 시점'(104명, 9.2%), '도서가 출판되어 판매가 시작된 이후'(29명, 2.6%) 순으로 응답함

■ 구두로만 계약하고 출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13.6%라는 사실은 창작자의 권리에 대해 출판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출판사에서 원고를 편집, 인쇄하는 시점이나 도서가 출판되어 판매가 시작된 이후라는 것은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계약조건이 발생하여도 출판의사를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함

[그림 5-24] 문학도서 출간 시 출판계약서 작성시기(복수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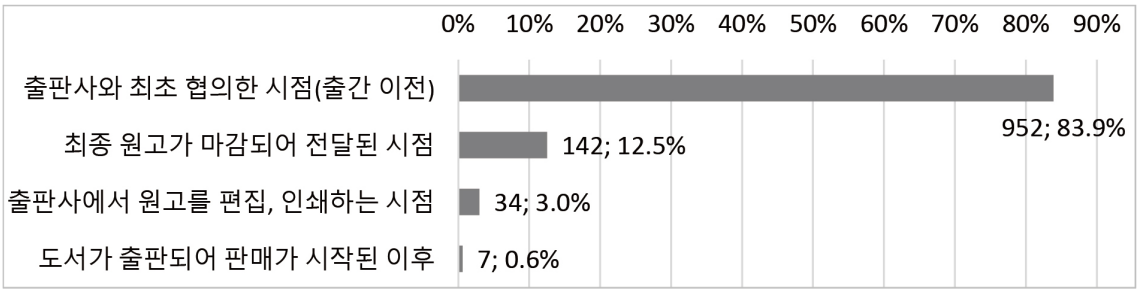


라. 바람직한 출판계약서 작성 시기

■ 창작자의 입장에서 출판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출

판사와 최초 협의한 시점(출간 이전)'이라고 답한 경우가 952명(83.9%)이며, '최종 원고가 마감되어 전달된 시점'이라고 답한 경우는 142명(12.5%)로서 거의 대부분의 창작자가 출판사에서 자신의 원고에 대해 편집, 인쇄작업을 들어가기 이전에 출판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출판사에서 문학도서를 출판하는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5-25] 바람직한 출판계약서 작성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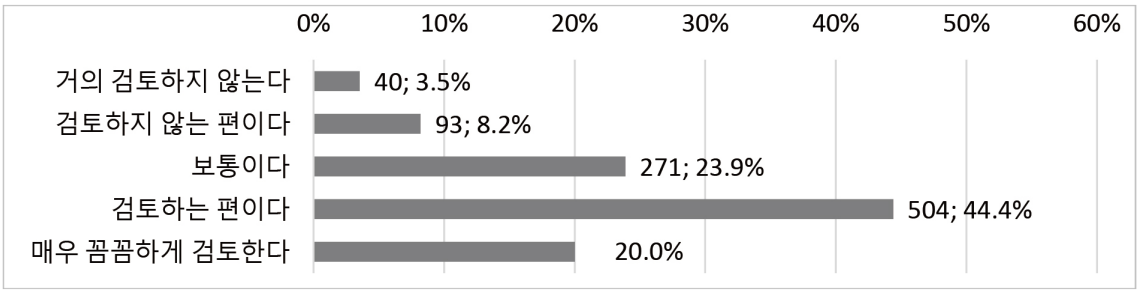


마. 출판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 수준

■ 출판계약서 내용을 얼마나 꼼꼼하게 검토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검토하는 편이다'(504명, 44.4%) > '보통이다'(271명, 23.9%) > '매우 꼼꼼하게 검토한다'(227명, 20.2%) 순으로 응답하였음

■ 64.6%에 해당하는 창작자들이 출판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검토하지 않는 편이거나 거의 검토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가 11.7%이며, 보통이라고 이야기한 경우도 23.9%에 달한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출판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그림 5-26] 출판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 수준



바. 출판계약서 각 항목의 수록 정도

■ 출판계약서에 수록되는 ①계약금(선인세) 액수, ②인세비율, ③작가의 최종원고 전달일자, ④출판사의 출판의무일자 , ⑤인세지급 방식(주기), ⑥판매량 보고 방식에 대한 항목이 얼마나 수록되어 있는가를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다(1점)', '수록되어 있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수록되어 있는

편이다(4점)', '항상 수록되어 있다(5점)'의 5단계로 동의여부를 조사하였음

■ 각 항목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인세비율'(4.06) >'계약금(선인세) 액수'(3.86) > '작가의 최종원고 전달일자'(3.63) >'인세지급방식(주기)'(3.51) >'출판사의 출판의무일자'(3.36) > '판매량 보고방식'(2.64) 순이었음

■ 출판의무일자와 판매량 보고방식과 같은 출판사의 의무에 관련된 내용이 출판계약서에 덜 수록되어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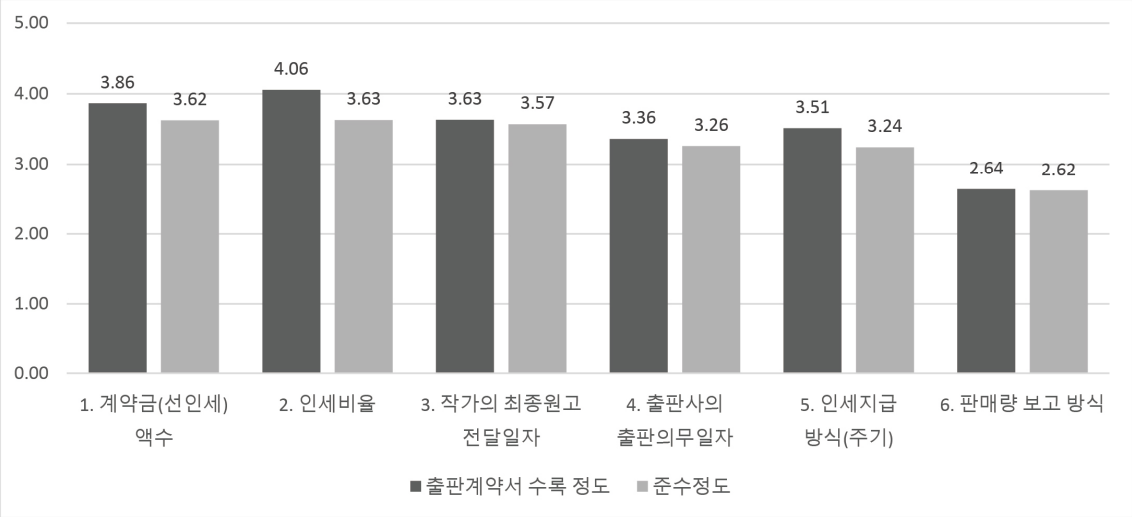
○ 특히 판매량 보고방식은 출판 이후의 관리 프로세스로서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나, 이에 대한 내용은 거의 출판계약서에 수록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사. 출판계약서의 각 항목들의 계약 후 준수 정도

■ 출판계약서에 수록된 ①계약금(선인세) 액수, ②인세비율, ③작가의 최종원고 전달일자, ④출판사의 출판의무일자, ⑤인세지급 방식(주기), ⑥판매량 보고 방식에 대한 항목이 얼마나 계약 후에 준수되는지를 '전혀 준수되지 않는다(1점)', '준수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준수되는 편이다(4점)', '매우 잘 준수된다(5점)'의 5단계로 동의여부를 조사하였음

■ 각 항목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인세비율'(3.63) >'계약금(선인세) 액수'(3.62) > '작가의 최종원고 전달일자'(3.57) >'출판사의 출판의무일자'(3.26) > '인세지급방식(주기)'(3.24) >'판매량 보고방식'(2.62) 순으로서, 전반적으로 출판계약서 수록 정도에 비해 준수 정도에 대한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음. (그림 5-27로 수록정도와 준수정도를 함께 비교)

[그림 5-27] 출판계약서 각 항목들의 수록 정도와 계약 이후의 준수 정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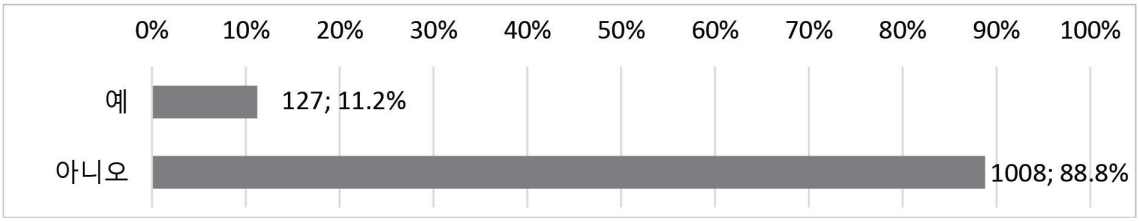


■ 출판계약서에 수록된 항목 중 창작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작가의 최종원고 전달일자'는 전혀 준수되지 않거나 준수되지 않는 편의 응답비율이 0.15%에 해당하나, 출판사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출판사의 출판의무일자'는 24%, '인세지급 방식(주기)'는 25.8%, '판매량 보고방식'은 58%임. 이는 창작자들의 인식이긴 하나, 출간 이후의 창작자들에 대한 관리가 지속되지 않는 현상을 드러내 보임.

아. 출판 계약 과정에서의 강압과 강요

■ 출판 계약 과정에서 귀하 본인의 의사와는 별도로 강압이나 강요로 이루어진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림 5-28]과 같이 127명(11.2%)이 '예'라고 응답함.

[그림 5-28] 출판 계약 과정에서의 강압과 강요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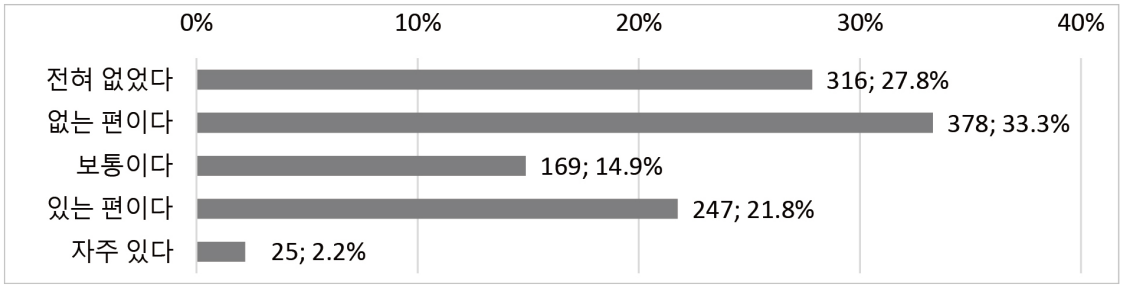
■ (교차분석) 출판 계약 과정에서의 강압과 강요정도와 창작자들을 대표창작분야로 교차분석한 결과 기타 25.0%> 그림책 작가 20.0% > 동시 작가 15.8% > 평론가 13.3% > 소설가 11.9% 순으로 높은 비율값을 보여줌. 수필가는 2.7%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자. 출판계약서 불공정 항목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수정 요구 경험

■ 출판계약서의 내용에서 불공정한 항목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출판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사항의 수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없는 편이다'(378명, 33.3%) > '전혀 없었다'(316명, 27.8%) > '있는 편이다'(247명, 21.8%) > '자주 있다'(25명, 2.2%) > '보통이다'(169명, 14.9%) 순으로 응답함

■ 61.1%의 창작자가 출판계약서의 불공정 항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5-29] 출판계약서 불공정 항목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수정 요구 경험 정도



■ (교차분석) 이의 제기 및 수정 요구 경험(자주 있거나 있는 편)과 창작자들을 대표창작분야로 교차분석한 결과 그림책 작가 48.0% > 기타 41.7%> 소설가 33.7% > 동시 작가 26.3% > 수필가 20.0% 순으로 높은 비율값을 보여줌. 희곡 작가는 5.9%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교차분석) 이의 제기 및 수정 요구 경험(자주 있거나 있는 편)과 창작자들의 성별을 교차분석한 결과 남자 18.5%, 여자 27.6%, 기타(others) 40.0%의 비율값을 보여줌

■ (교차분석) 이의 제기 및 수정 요구 경험(자주 있거나 있는 편)과 창작자들의 연령을 교차분석한 결과 20~29세 40.8% > 30~39세 33.8% > 40~49세 27.5% > 50~59세 19.0%> 60~69세 15.1% > 70세 이상 14.5% > 순으로 분석되었음

○ 젊은 세대일수록 이의 제기 및 수정 요구 경험이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이의 제기 및 수정 요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을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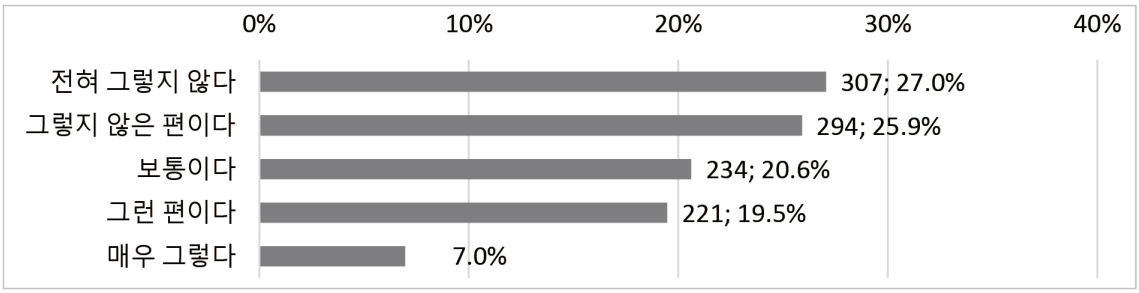
■ (교차분석) 이의 제기 및 수정 요구 경험(자주 있거나 있는 편)과 창작자들의 협회나 단체 소속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협회단체에 소속 19.9%, 소속 되지 않음 30.6%로 분석됨

○ 협회나 단체에 소속된 경우 평균값인 24.0%보다 낮은 비율로 경험이 있었음

차. 도서 출간 이후 인세 발생과 판매량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 도서를 출간한 이후 인세 발생과 판매량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307명, 27.0%) > '그렇지 않은 편이다'(294명, 25.9%) > '보통이다'(234명, 20.6%) 순으로 응답함. 53%의 창작자가 인세와 판매량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5-30] 도서 출간 이후 인세 발생과 판매량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정도



■ (교차분석) 인세 발생과 판매량에 대한 정기 보고 경험 정도(전혀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편)와 창작자들을 대표창작분야로 교차분석한 결과 시조 시인 75.0% > 희곡 작가 70.6% > 시인 69.3%> 수필가 57.3% > 평론가 51.1% > 동시 작가 42.1% 순으로 높은 비율값을 보여줌. 그림책 작가는 24.0%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교차분석) 출판사에 정기 보고 경험 정도(전혀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편)와 창작자들의 성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남자 54.3%, 여자 52.1%, 기타(others) 40.0% 비율값을 보여줌

■ (교차분석) 인세 발생과 판매량에 대한 정기 보고 경험 정도(전혀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편)와 창작자들의 연령을 교차분석한 결과 60~69세 64.4% > 50~59세 61.4%> 70세 이상 58.1% > 40~49세 52.3% > 30~39세 35.9% > 20~29세 26.3% 순으로 분석되었음

○ 연령이 높을수록 인세 발생과 판매량에 대한 정기 보고 경험이 적고 젊은 세대일수록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을 나타남

■ (교차분석) 인세 발생과 판매량에 대한 정기 보고 경험 정도(전혀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편)와 창작자들의 협회나 단체 소속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협회단체에 소속 59.5%, 소속되지 않음 42.1%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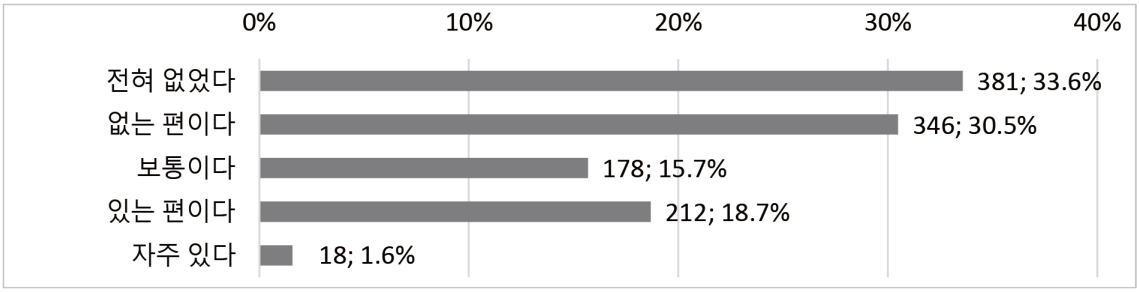
○ 협회나 단체에 소속된 경우 평균값인 53.0%보다 높은 비율로 정기 보고를 받지 못한 편으로 나타남

카. 정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출판사에 보고를 요청한 경험 정도

■ 출간 이후 인세 발생과 판매량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출판사에 보고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없었다'(381명, 33.6%) > '없는 편이다'(346명, 30.5%) > '있는 편이다'(212명, 18.7%) > '보통이다'(178명, 15.7%) > '자주 있다'(18명, 1.6%) 순으로 응답함.

■ 64.1%의 창작자는 인세와 판매량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여도 아무 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보고 요청을 하고 있는 창작자는 20.3%에 달함.

[그림 5-31] 정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출판사에 보고를 요청한 경험 정도



■ (교차분석) 출판사에 정기 보고 요청 경험 정도(자주 있거나 있는 편)와 창작자들을 대표창작분야로 교차분석한 결과 그림책 작가 36.0% > 동화 작가 35.8% > 소설가 31.6%> 기타 작가 22.2% > 동시 작가 18.4% 순으로 높은 비율값을 보여줌. 시조 시인은 5.0%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교차분석) 출판사에 정기 보고 요청 경험 정도(자주 있거나 있는 편)와 창작자들의 연령을 교차분석한 결과 20~29세 32.9% > 30~39세 28.7% > 40~49세 26.4% > 50~59세 16.6% > 70세 이상 9.7% > 60~69세 9.3% 순으로 분석되었음

○ 연령이 높을수록 출판사에 정기 보고 요청 경험이 적고 젊은 세대일수록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을 나타남

■ (교차분석) 출판사에 정기 보고 요청 경험 정도(자주 있거나 있는 편)와 창작자들의 협회나 단체 소속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협회단체에 소속 14.1%, 소속 되지 않음 30.4%로 분석됨

○ 협회나 단체에 소속된 경우 평균값인 20.3%보다 낮은 비율로 정기 보고 요청 경험 정도를 나타남

타. 정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출판사에 보고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

■ 출판사에 보고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727명(64.1%)에 대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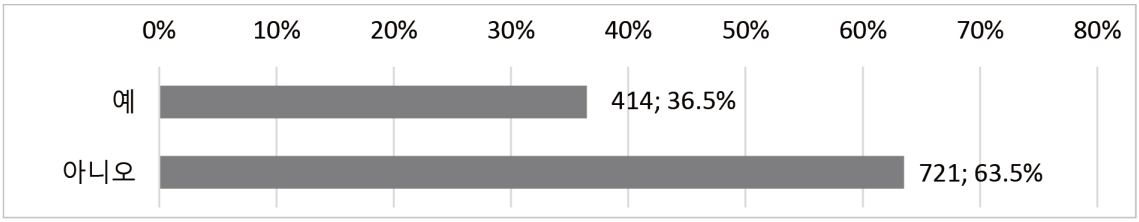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답변부터 "출판사에 밉보이는 등 불이익을 받을까 봐", "도서 판매량이 많지 않을 듯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등의 업계 관계성에서 비롯된 이유가 대다수이며, "주위 작가들이 보고를 요청해도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다고 얘기해서"라는 답변으로 작가들의 걱정이 일부 사실에 근거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예지와 마찬가지로 "출판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묻지 않았다"는 답변도 존재함

- 출판사를 믿기 때문에(신뢰) / 상업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싶지 않아서
- 출판사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에 /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서
- 대범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까봐 / 눈치보이고 쑥스러워서 /
- 서로에게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 될 것이기에 / 싫어할까봐, 싸울까봐, 불편해지기 싫어서
- 갑을 관계이므로 출판사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염려되어서 / 다음에 책을 못 내게 될까봐
-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 정직한 보고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 재쇄가 들어가야 인세가 지급이 될 것이므로
- 내 책이 얼마나 팔리려나 하는 생각에 /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 보고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알고 있기에 /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생각에
- 신인작가라서 모르는 게 많고 출판사에 요청하는 게 불편해서

파. 인세를 현금이 아닌 기타 물건으로 지급받은 경험 여부

■ 출판도서에 대한 인세를 현금이 아닌 책이나 잡지, 정기구독권, 기타 물건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414명(36.5%)이 '예'라고 응답함

[그림 5-32]　인세를 현금이 아닌 기타 물건으로 지급받은 경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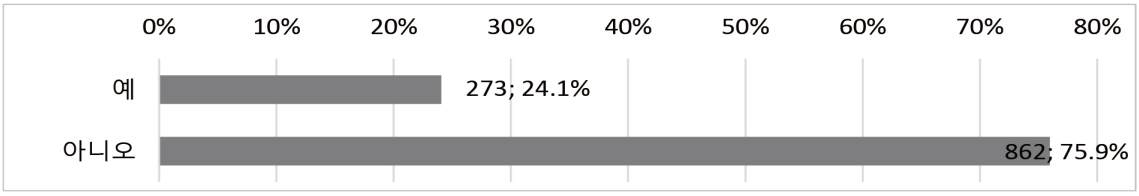
■ (교차분석) 인세를 현금이 아닌 기타 물건으로 지급받은 경험과 창작자들을 대표창작분야로 교차분석한 결과 시인 55.8% > 동시 작가 47.4% > 평론가 44.4% > 시조 시인 35.0% > 동화 작가 20.4% 순으로 높은 비율값을 보여줌

○ 그림책 작가는 12.0%으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하. 무리한 원고 집필 일정을 요구받은 경험 여부

■ 출판사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무리하게 짧은 일정으로 원고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273명(24.1%)이 '예'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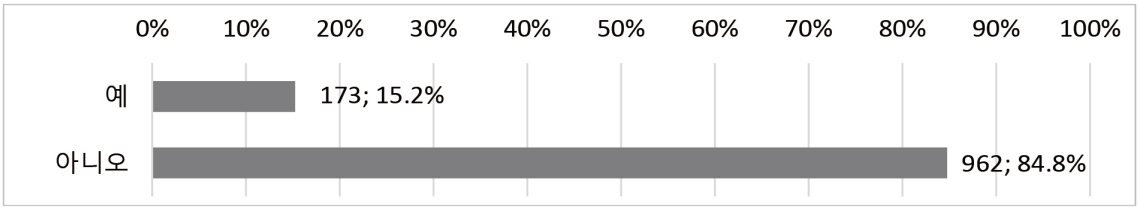
[그림 5-33] 무리한 원고 집필 일정을 요구받은 경험 여부



거. 출판사 임의로 작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계약 체결 경험 여부

■ 출판계약 체결 시 출판사 임의로 작품을 수정 , 보완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73명(15.1%)이 '예'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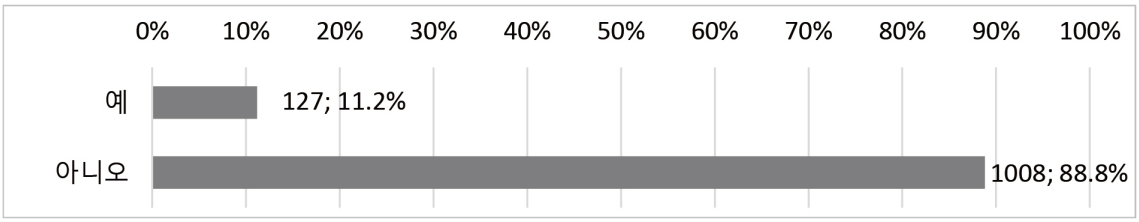
[그림 5-34] 출판사 임의로 작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계약 체결 경험 여부



너. 차기 작품도 동일 출판사에서 내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험 여부

■ 단행본 출판계약 조건으로 차기 작품도 동일 출판사에서 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27명(11.2%)이 '예'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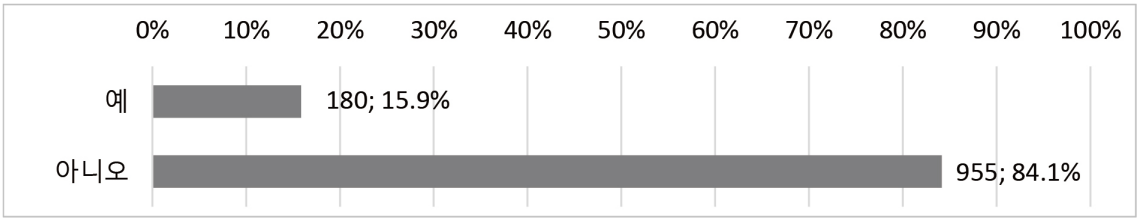
[그림 5-35] 차기 작품도 동일 출판사에서 내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험 여부



더. 자신의 책을 다량 구입할 것을 강요받은 경험 여부

■ 단행본 출판계약 시 자신의 책을 다량 구입할 것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80명(15.9%)이 '예'라고 응답함.

[그림 5-36] 자신의 책을 다량 구입할 것을 강요받은 경험 여부



■ (교차분석) 자신의 책을 다량 구입할 것을 강요받은 경험과 창작자들을 대표창작분야로 교차분석한 결과 동시 작가 26.3% > 시인 24.8% > 평론가 20.0% > 수필가 18.7% > 시조 시인 15.0% 순으로 높은 비율값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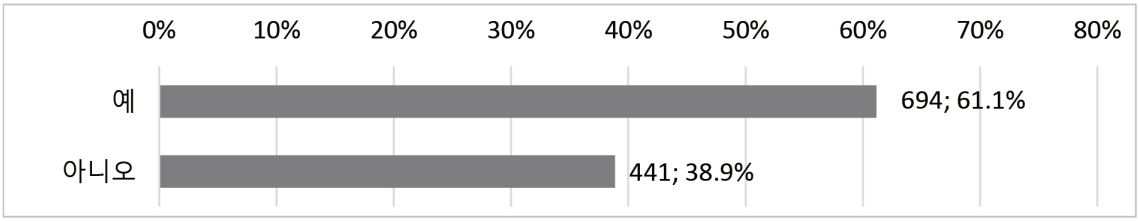
○ 동화 작가는 3.6%으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4.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가. 디지털 형태로 유통(전송)된 경험 여부

■ 종이책으로 출간되거나 문예지에 게재된 귀하의 문학작품이 전자책(epub, PDF), 웹진 등 인터넷 콘텐츠, 앱(APP) 등 모바일 콘텐츠, 오디오북 등 디지털 형태로 유통(전송)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94명(61.1%)이 '예'라고 응답함

[그림 5-37] 디지털 형태로 유통(전송)된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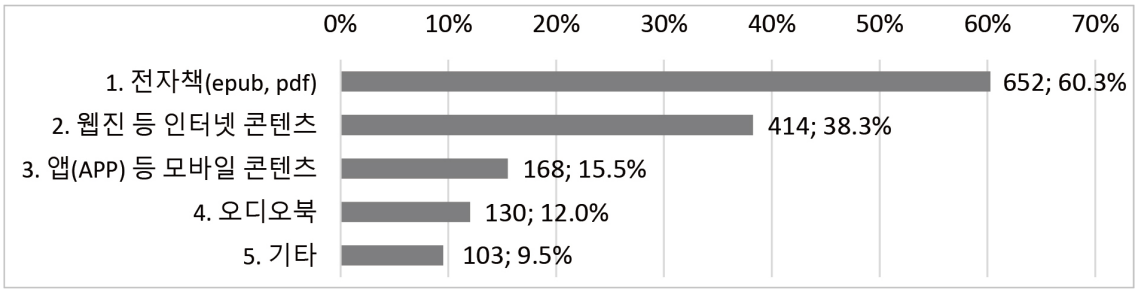


나. 전송(유통)된 디지털 형태의 종류(복수응답)[23)]

■ 종이책으로 출간되거나 문예지에 게재된 문학작품이 어떠한 디지털 형태로 유통(전송)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자책'(652명, 60.3%) > '웹진 등 인터넷 콘텐츠'(414명, 38.3%) > '앱(APP) 등 모바일 콘텐츠'(168명, 15.5%) > '오디오북'(130명, 12.0%) 순으로 응답하였음

23) 2)부터 5)까지의 내용은 1)에 대해'예'라고 답한 69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그림 5-38] 전송(유통)된 디지털 형태의 종류(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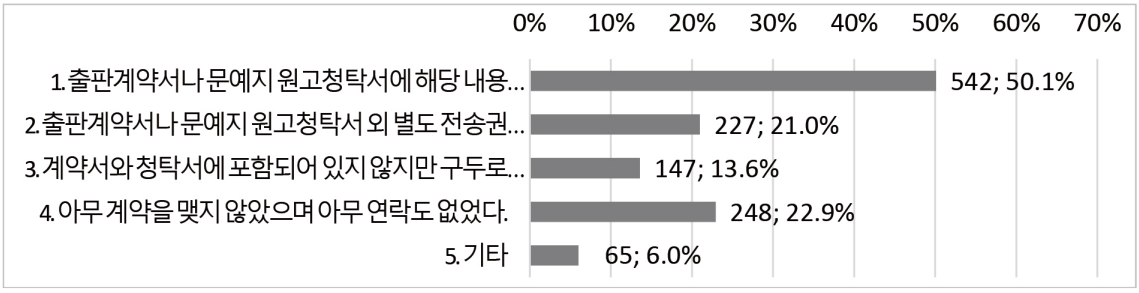
■ 기타 의견으로는 문예지 블로그 무단 게재, 유튜브, 누리미디어 또는 교보 스콜라 등 학술 DB 순으로 응답함

○ 문예지·잡지사가 관리하는 블로그와 SNS에 작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게재된 사례가 가장 돋보임

다. 디지털 형태 전송에 대한 계약 체결 방식(복수응답)

■ 디지털 형태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출판계약서나 문예지 원고 청탁서에 해당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542명, 50.1%) > '아무 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아무 연락도 없었다'(248명, 22.9%) > '출판계약서나 문예지 원고청탁서 외 별도 전송권 계약이 진행되었다'(227명, 21.0%) > '계약서와 청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구두로 통보되었다'(147명, 13.6%) 순임.

[그림 5-39] 디지털 형태 전송에 대한 계약 체결 방식(복수응답)



■ 기타 답변으로는 "모든 것을 통 계약 형식으로 진행"했거나 "디지털로 전송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계약서에는 있었지만, 전자책 출간 시 아무런 통보나 연락이 없어서 전자책이 나온 것을 인터넷을 보고 알았다."는 답변을 통해 불분명한 계약 방식과 보고 체계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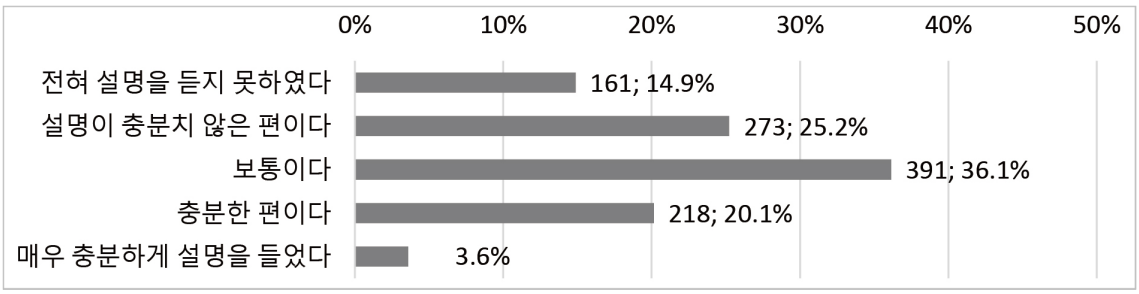
○ "번역 원고의 저작권을 매절 당했다", "무료로 게재했다"는 등의 불공정 계약도 있다는 응답도 있음.

라. 전송권과 2차저작권 내용에 대한 출판사의 충분한 설명 정도

■ 출판계약 시 전송권과 2차저작권 내용에 대해서 출판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391명, 25.7%) > '설명이 충분치 않은 편이다'(273명, 25.2%) > '충분한 편이다'(218명, 20.1%) > '매우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다'(39명, 2.6%) 순임

■ 출판된 문학도서나 문예지에 발표된 자신의 문학작품이 전자책이나 웹진으로 전송(유통)되는 현상에 대해 창작자들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충분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전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그림 5-40] 전송권과 2차저작권 내용에 대한 출판사의 충분한 설명 정도



■ (교차분석) 충분한 설명 정도(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설명이 충분치 않은 편)와 창작자들을 대표창작분야로 교차분석한 결과 시조 시인 63.2% > 시인 45.9% > 평론가 45.2%> 그림책 작가 38.7% > 동시 작가 36.6% 순으로 높은 비율값을 보여줌

○ 희곡 작가는 31.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교차분석) 충분한 설명을 들은 정도(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설명이 충분치 않은 편)와 창작자들의 협회나 단체 소속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협회단체에 소속 43.9%, 소속되지 않음 36.7%로 분석됨

○ 협회나 단체에 소속된 경우 평균값인 40.1%보다 높은 비율로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편임을 나타냄

마.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계약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항목들에 대한 동의

■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계약 관행 중에서 개선되어야 할 항목들을 [표 5-1]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전적으로 동의한다(5점)의 5단계로 동의 정도를 조사함

■ 각 항목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항목은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계약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4.48) >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계약 이후의 판매량 및 활동 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46) >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송권 계약의 세부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월정액, 다운로드, b2b 등)(4.43) 순이었음

○ 다른 항목도 모두 4점 이상의 동의 정도를 보임

[표 5-1]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계약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항목들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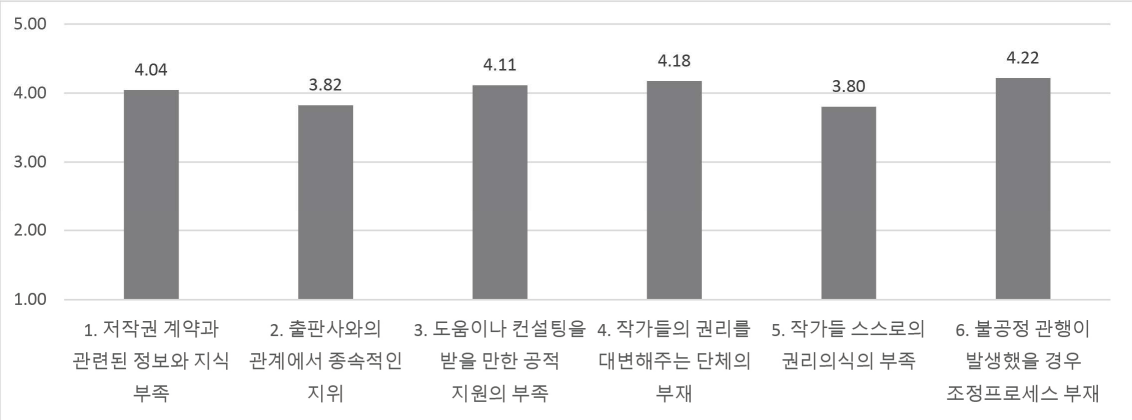
항목	평균
1. 출판계약과 별개로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4.28
2.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송권 계약의 세부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월정액, 다운로드, b2b 등)	4.43
3. 2차 저작권 활용을 위한 작가와 출판사의 기여도에 따라 수익배분율이 변동되어야 한다	4.36
4.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계약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4.48
5.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계약 이후의 판매량 및 활동 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46

바.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관련 작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동의 정도

■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관련하여 작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들을 ①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 부족, ②출판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 ③도움이나 컨설팅을 받을 만한 공적 자원의 부족, ④작가들의 권리를 대변해 주는 단체의 부재, ⑤작가들 스스로의 권리의식의 부족, ⑥불공정 관행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 프로세스의 부재의 6가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전적으로 동의한다(5점)의 5단계로 동의 정도를 조사함

■ 그 결과 '불공정 관행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 프로세스 부재'(4.22) >'작가들의 권리를 대변해주는 단체의 부재'(4.18) > '도움이나 컨설팅을 받을 만한 공적 지원의 부족'(4.11) > '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 부족'(4.04) >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3.82) > '작가들 스스로의 권리의식의 부족'(3.80) 순이었음

[그림 5-41]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관련 작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동의 정도



■ 기타의견을 통해 창작자들은 전송권과 2차 저작권과 관련하여 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양하게 응답함

○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불공정한 문제가 생겨도 호소할 곳이나 이를 대변할 단체가 없다는 점이며, 이와 관련해 "작가 노조와 같이 협의의 법적 지위가 보장된 단체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작가 권익 및 저작권 관련 기관 단체의 부재는 정보의 불투명성과 저작권 관련 정보 습득 기회의 부족으로 이어짐

○ 한 신인 작가의 경우 홍보물 제작 시 이를 인세에서 일정 부분 제하자는 부당한 제안을 받았음에도 소속 단체가 없어 계약의 공정성 여부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았다고 함

○ 이에 통합 데이터베이스, 체계적 인프라 구축, 합리적이고 타당한 표준계약서 마련, 관련 교육 제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

■ 문학계 불균형한 권력 균형의 문제도 거듭 언급됨. 이는 "출판 여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출판사와 편집위원이 절대 우위에 있다"는 의견과 "한국 출판업계의 암묵적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로는 원고의 재판을 찍을 때 작가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2차 저작권이 계약서 기본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전송권을 위임하는 계약 형태의 문제, 계약금(선인세) 지급의 지연, 인세 보고 미흡, 1년 이상의 출간 연기 등이 제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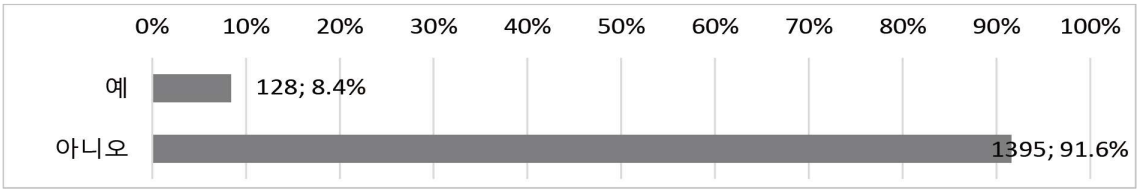
■ 이외에도 "플랫폼에 힘이 집중되어 적장 콘텐츠 주체인 작가와 출판사는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 리디북스 같은 대형 유통사의 수수료 횡포 문제도 지적되었는데, 프로모션을 담보로 수수료 50% 강제 조정해 나머지 50%를 작가와 출판사가 배분하는 사례를 예시로 들었음

사. 2차 저작물 전송권 계약 거부시 출판 계약이 중도 파기되는 경험 여부

■ 2차 저작물 작성권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을 때 출판사에서 계약을 중도에서 파기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28명(8.4%)이 '예'라고 응답함.

[그림 5-42] 2차 저작물 전송권 계약 거부시 출판 계약이 중도 파기되는 경험 여부



■ (교차분석) 출판 계약이 중도 파기되는 경험과 창작자들을 대표창작분야로 교차분석한 결과 그림책 작가 19.4% > 평론가 14.3% > 동시 작가 12.3% > 기타 작가 11.5% > 소설가 10.8% 순으로 높은 비율값을 보여줌. 시인 4.6%으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교차분석) 2차 저작물 작성권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에 의한 출판 계약이 중도 파기되는 경험과 창작자들의 연령을 교차분석한 결과 30~39세 14.0% > 20~29세 10.8% > 40~49세 8.3% > 50~59세 5.6% > 60~69세 5.0% > 70세 이상 3.0% 순으로 분석되었음

○ 연령이 높을수록 출판사에 출판 계약이 중도 파기 경험이 적고 젊은 세대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을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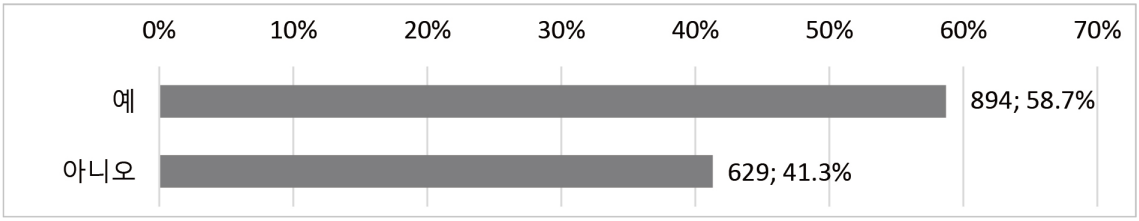
5. 공모전과 문학상

가. 공모전과 문학상 수상 경험 여부

■ 공모전과 문학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894명(58.7%)이 '예'라고 응답하였음

○ 이는 문예지에 원고를 게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060명(69.6%)이 '예'라고 응답한 것보다 10.9% 낮은 비율이나, 많은 창작자들이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문학상을 수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5-43] 공모전과 문학상 수상 경험 여부



나. 수상 상금을 행사비나 뒤풀이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받은 경험

■ 수상 경험이 있다는 894명에 대해 문학상이나 공모전 수상 상금을 행사비나 뒤풀이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주최 측으로부터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자,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512명, 57.2%) > '거의 없는 편이다'(140명, 15.6%) > '가끔 있는 편이다'(134명, 15.0%) > '보통이다'(87명, 9.7%) > '매우 자주 있는 편이다'(22명, 2.5%)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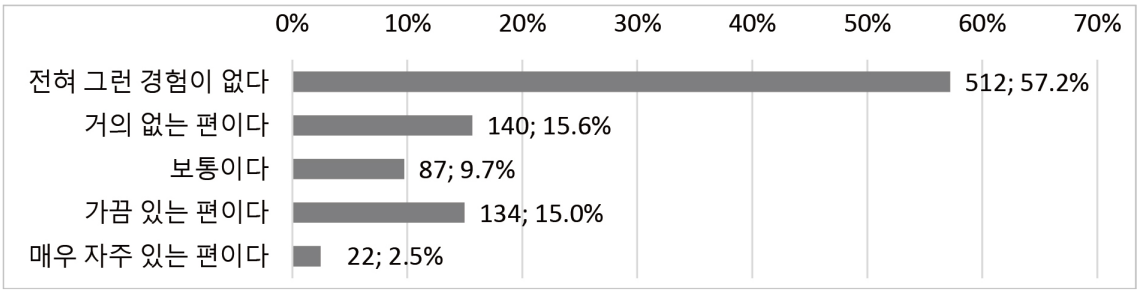
■ (교차분석) 수상 상금을 행사비나 뒤풀이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받은 경험(매우 자주 있는 편이거나 가끔 있는 편)과 창작자들을 대표창작분야로 교차분석한 결과 시인 23.9% > 동시 작가 22.7% > 수필가 20.7%> 시조 시인 19.0% > 소설가 14.5% 순으로 높은 비율값을 보여줌

○ 그림책 작가는 0.0%으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교차분석) 수상 상금을 행사비나 뒤풀이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받은 경험(매우 자주 있는 편이거나 가끔 있는 편)과 창작자들의 협회나 단체 소속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협회단체에 소속 20.0%, 소속 되지 않음 12.7%로 분석됨

○ 협회나 단체에 소속된 경우 평균값인 17.4%보다 높은 비율로 요구받는 편임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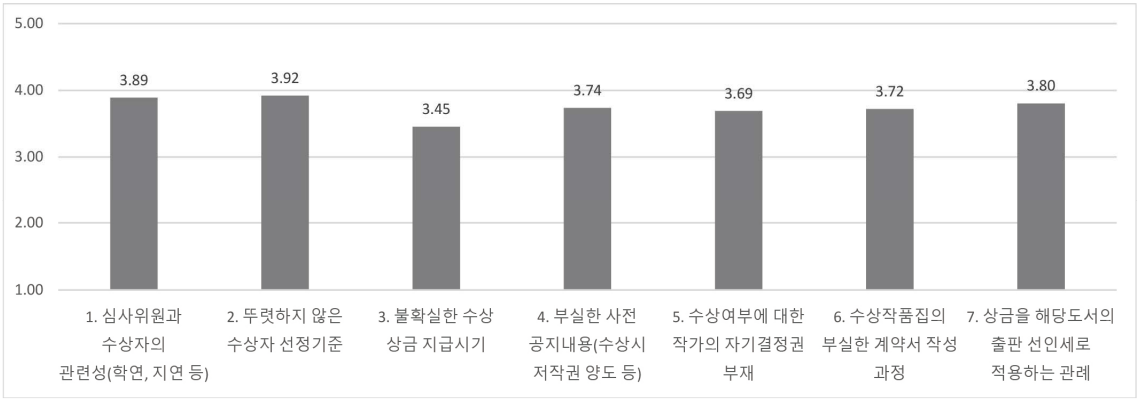
[그림 5-44] 수상 상금을 행사비나 뒤풀이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받은 경험



다. 공모전과 문학상 불공정 관행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항목들에 대한 동의 정도

■ 국내 공모전과 문학상 시행방식의 불공정 관행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7가지 항목을 ①심사위원과 수상자의 관련성(학연, 지연 등), ②뚜렷하지 않은 수상자 선정기준, ③불확실한 수상 상금 지급시기, ④부실한 사전 공지내용(수상시 저작권 양도 등), ⑤수상여부에 대한 작가의 자기결정권 부재, ⑥수상작품집의 부실한 계약서 작성 과정, ⑦상금을 해당도서의 출판 선인세로 적용하는 관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전적으로 동의한다(5점)의 5단계로 동의 정도를 조사함

[그림 5-45] 공모전과 문학상 불공정 관행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항목들에 대한 동의 정도



■ 각 항목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뚜렷하지 않은 수상자 선정기준'(3.92) > '심사위원과 수상자의 관련성(학연, 지연 등)'(3.89) > '상금을 해당도서의 출판 선인세로 적용하는 관례'(3.80) > '부실한 사전 공지내용(수상시 저작권 양도 등)'(3.74) > '수상작품집의 부실한 계약서 작성 과정'(3.72) > '수상여부에 대한 작가의 자기결정권 부재'(3.69) > '불확실한 수상 상금 지급시기'(3.45) 순이었음

■ 기타의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선인세' 형태의 상금 지급에 대한 것임

○ 상금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을 추후 발간되는 작품집의 선인세 처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임

○ "선인세보다는, 오롯한 상금인 양 일부러 왜곡되게 포장하거나 몇 부를 팔아야 인세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음

○ 웹소설 업계에서도 공모전 상금을 높이 책정해놓고 그것을 모두 선인세로 대체, 선인세를 감면하지 못할 경우 후속작 수익에서 변제 등의 방법으로 작가를 전속으로 묶어놓는 경우가 존재하였다는 응답도 있음[24)]

■ 일반 출간 계약에 비하여 작가에게 매우 불공정한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 "공모전 수상작 계약 관행"이라는 지적도 있음

○ 구체적인 일례로는 일반적인 인세보다 낮은 인세 요구, 2차 저작권 포기 요구, 신춘문예 당선 소설집 발간 시 계약서 부재 등이 있음

○ 관련해 상금의 부당한 반환 요구도 적지 않음

○ 발전기금 목적으로 오히려 문예지 구매를 권유하거나 상금의 10%를 단체에 기부하는 관행, 공동 수상 시 전체 상금을 나누어 배분하는 문학상 등이 언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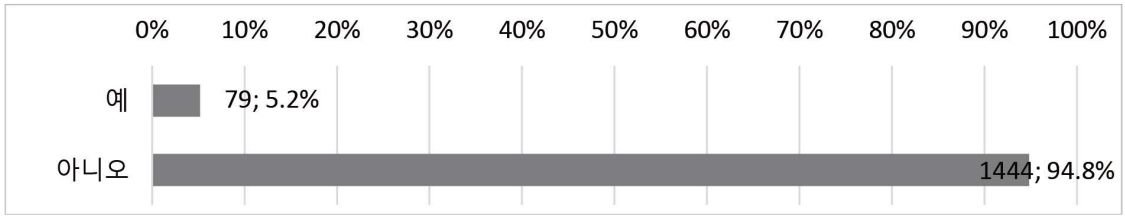
■ 심사 과정에 대한 불만으로는 예심 위원에게 작품들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아웃소싱 되는 경향으로 인해 작품 검토 기간에 비해 과중한 작품의 수를 보게 된다는 점, 마케팅적 측면을 고려한 작가 인지도 위주의 선정, 심사위원과의 인맥에 의한 영향 등의 불공정 사례가 응답됨

○ 이에 지원자의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되지 않은 우수출판콘텐츠 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공모전일 경우 무조건 이름, 인적 사항이 블라인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음

라. 문학상/창작기금 심의를 미끼로 금품요구,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한 경험 여부

■ 문학상, 창작기금 등의 선정 과정에서 심의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받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9명(5.2%)이 '예'라고 응답함

[그림 5-46] 문학상/창작기금 심의를 미끼로 금품요구,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한 경험 여부



■ (교차분석) 심의를 미끼로 금품요구,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한 경험과 창작자들을 대표창작분야로 교차분석한 결과 동시 작가 8.8% > 시인 6.7% > 기타 작가 6.6% > 소설가 4.9% > 평론가 4.3% 순으로 높은 비율값을 보여줌

○ 시조 시인 0.0%으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교차분석) 심의를 미끼로 금품요구,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한 경험과 창작자들의 협회나 단체 소속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협회단체에 소속 6.4%, 소속 되지 않음 3.8%로 분석됨

○ 협회나 단체에 소속된 경우 평균값인 5.2%보다 높은 비율로 경험한 편임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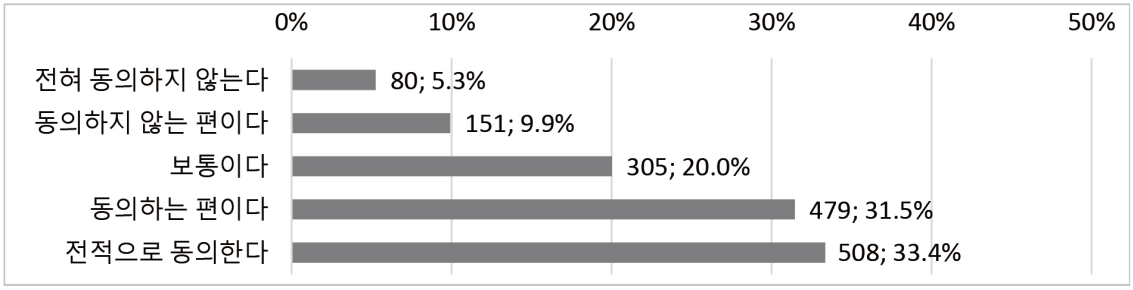
24) 이번 조사의 한계로 해당 문항을 포함한 다수의 항목에서 '웹소설과 관련한 항목의 부재'가 언급되었음.

6. 기타사항

가. 작가는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 작가는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508명, 33.4%) > '동의하는 편이다'(479명, 31.5%) > '보통이다'(305명, 20.0%)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151명, 9.9%)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80명, 5.3%) 순으로 응답함

[그림 5-47] 작가는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 (교차분석) 작가는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전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편)와 창작자들을 대표창작분야로 교차분석한 결과 희곡 작가 82.1% > 소설가 72.8% > 동화작가 72.2% > 기타 작가 67.2% > 동시 작가 66.7% 순으로 높은 비율값을 보여줌

○ 수필가 50.8%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교차분석) 작가는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전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편)와 창작자들의 성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남자 54.6%, 여자 71.8%, 기타(others) 63.6% 비율값을 보여줌

○ 남자 54.6%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교차분석) 작가는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전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편)와 창작자들의 연령을 교차분석한 결과 10~19세 80.0% > 20~29세 72.7% > 30~39세 70.1% > 40~49세 67.5% > 50~59세 64.7% > 60~69세 56.9% > 70세 이상 29.9% 순으로 나타남

■ (교차분석) 작가는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전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편)와 창작자들의 협회나 단체 소속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협회단체에 소속 61.0%, 소속되지 않음 69.2%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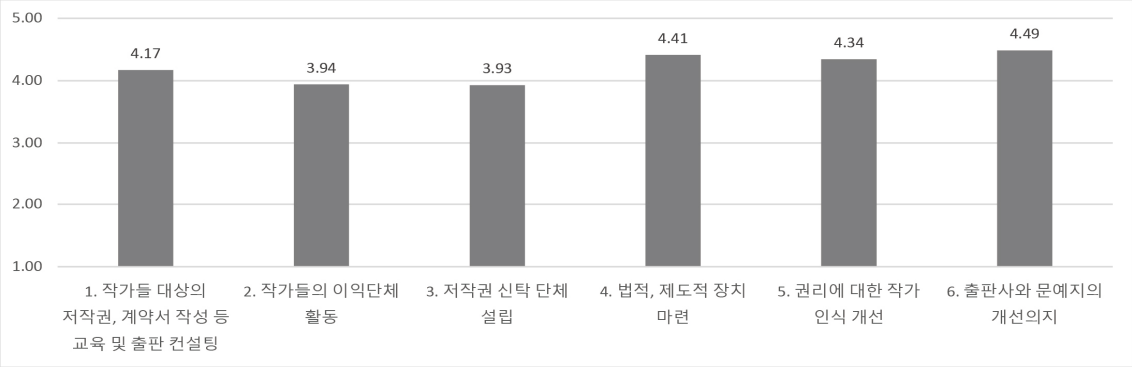
나. 불공정 관행의 개선방법에 대한 동의 정도

■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위한 6가지 방법을 ①작가들 대상의 저작권, 계약서 작성 등 교육 및 출판 컨설팅, ②작가들의 이익단체 활동, ③저작권 신탁 단체 설립, ④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⑤권리에 대

한 작가 인식 개선, ⑥출판사와 문예지의 개선의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전적으로 동의한다(5점)의 5단계로 동의 정도를 조사함

■ 각 항목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출판사와 문예지의 개선의지'(4.49) >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4.41) > '권리에 대한 작가 인식 개선'(4.34) > '작가들 대상의 저작권, 계약서 작성 등 교육 및 출판 컨설팅'(4.17) > '작가들의 이익단체 활동'(3.94) > '저작권 신탁 단체 설립'(3.93) 순이었음

[그림 5-48] 불공정 관행의 개선방법에 대한 동의 정도



■ 출판사와 문예지의 개선의지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권리에 대한 작가 인식개선을 그 다음으로 동의하고 있음

○ 이는 이러한 불공정관행이 문학생태계를 둘러싼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구조의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문예지/출판사와 창작자들의 관계를 갑과 을이라는 종속적인 관계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작가 스스로의 변화와 이익단체 활동을 통한 변화 추진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것임

■ 이외에도 작가들 대상의 저작권 계약서 작성 등 교육 및 출판 컨설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작권 신탁 단체의 설립에도 동의를 하고 있음

■ 이러한 창작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한 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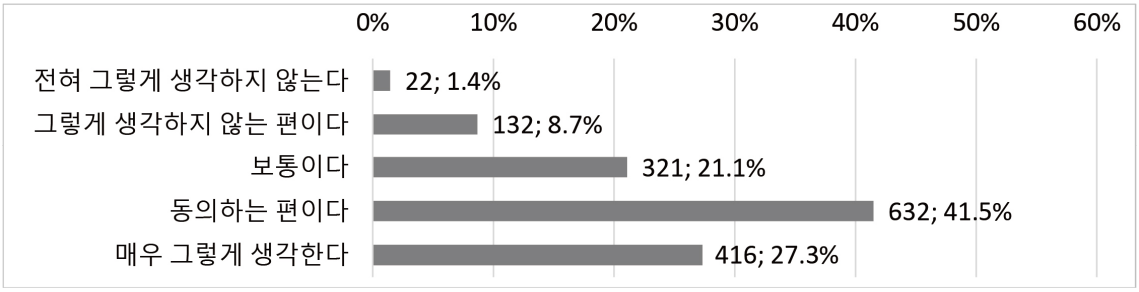
■ 이러한 환경의 제공과 함께 권리에 대한 작가의 인식개선과 작가들의 이익단체 활동이라는 작가 자신의 변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다. 민간 영역의 문예지와 문학 출판에서의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존재

■ 민간 영역의 문예지와 문학출판에서 특정한 작가를 배제하거나(블랙리스트)와 특정한 작가에게 특혜를 주는(화이트리스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다'(632명, 41.5%) >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416명, 27.3%) > '보통이다'(321명, 21.1%) 순으로 응답함.

■ 이는 문예지 원고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나, 출판사에서 인세 발생과 판매량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예지와 출판사에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로서 "관계가 틀어질까봐", "다음 원고청탁을 받지 못할까봐", "다음 책을 낼 수가 없을까봐", "갑과 을의 관계이므로"라고 답한 것과 상통하는 부분임.

[그림 5-49] 민간 영역의 문예지와 문학 출판에서의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존재



■ (교차분석) 민간 영역의 문예지와 문학출판에서 특정한 작가를 배제하거나(블랙리스트)와 특정한 작가에게 특혜를 주는(화이트리스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전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편)와 창작자들의 연령을 교차분석한 결과 10~19세 80.0% > 50~59세 76.7% > 60~69세 75.7% > 40~49세 67.2% > 30~39세 63.1% > 20~29세와 70세 이상 59.7% > 20~29세 59.7% 순으로 나타남

라.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문학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경험에 대한 자유 응답

■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문학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이 수집되었음

■ 이 자료를 정리하자면 심사문제, 지면, 문학권력, 인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투명한 정보 공유'와 '공평함'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되어짐

1) 심사문제

■ 공통의 지적은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문하생이나 학연 지연에 따라 공정하지 못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는 데 있음

○ 또한, 심사위원 풀이 겹치는 것 역시 문제로 제기됨. 심사과정을 공정하게 하고 보다 객관화된 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문제는 좋은 문학이란 개념이 사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며, 하나의 궁극적이고 훌륭한 좋은 문학이란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심사제도를 계량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좋은 문학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존재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권위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게 되고 개인의 감식안 안에서 심사가 일어나게 됨

○ 그 결과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며 이 과정에 이 **소수의 심사위원이 학벌 혹은 문학적 계파 협회 등 사적 지점**을 이용하여 심사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지면

■ 많은 참여자들이 청탁이 들어오지 않음과 소수의 사람들만 지면이 허락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청탁이 지연과 학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

■ 청탁을 받기 위해 돈을 지급하거나 월간 회원제 시스템에 들어가 돈을 내는 것 역시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되었으며 돈을 지급하고도 청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불만도 있었음

3) 문학 권력

■ 앞에서 말한 심사 권력과 지면 권력, 그리고 자신의 제자에 대한 위계 권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심사와 지면을 줄 수 있는 권력을 앞세운 성추행과 성폭행, 자본강탈 사례가 수집됨

4) 인세

■ 인세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 지적은 초판 1,000부가 팔렸을 때만 원고료를 지급하는 '조건부 인세 지급' 사례와 함께, 초판 1쇄 발행 부수와 인세 발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례가 함께 수집됨

■ 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책값의 10%가 인세로 들어와도, 동화 작가의 경우에는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10% 내외로 6대 4로 나눠 가지게 되며, 해외 출판과 대량 납품 시에는 인세를 10% 이하로 낮추는 사례가 수집됨

○ 이 경우에도 판매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함

■ "올해의 문제소설" 같이 선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책들의 경우 동의서만 받고 인세 지급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심각한 경우는 책 출간 혹은 문예지에 글을 싣기 위해 돈을 넣으라는 압박과 관행이라는 이유로 수백권의 책을 사게 강요하는 경우도 수집됨

■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계약서가 미비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많은 제보자들이 관행적으로 계약서를 안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5) 기타

■ 이외에도 등단을 돈 주고 파는 행위, 책을 내주고 돈을 받거나 책을 사게 하는 행위, 문학상을 문인들끼리 주고 받거나 돈으로 거래하는 행위들이 수집됨

제3절 소결과 시사점

1. 소결

가. 원고 청탁 및 작품 발표과정

■ 문예지에 원고가 청탁되고 작품이 발표되며 온라인을 통해 전송되고 또는 2차 저작물로 활용되는 과정에 대한 불공정 관행은 다음과 같음

○ 40.4%에 해당하는 창작자들이 문예지 원고청탁서를 받지 못하는 채로 원고를 게재하는 상황임

○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원고청탁서에 원고료 액수, 원고료 지급일, 전송권과 2차적 사용권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담기지 못하여 불공정 관행의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는 원고청탁서를 통해 청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에 충분한 정보가 담겨야 한다는 작가들의 의견과 배치됨

○ 또한, 구두 청탁 후 청탁서가 오지 않아 작품 발표시기를 놓치거나 실제 원고 게재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창작자들은 문예지에 원고를 게재하고도 원고료를 받지 못하거나(35.8%), 다른 물건이나 기금 납부를 요구받거나(68.6%), 문예지 구입 등을 강요받음(25.4%). 문예지 원고가 전자책, 인터넷, 웹진에 게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37.0%에 달함

○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작가들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행위를 문학계의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음

■ 원고청탁서에 원고료 지급액수, 원고료 지급 일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원고료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72.6%는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는 상황임

○ 그 이유로는 관행으로 생각하거나, 인간적인 관계 상 요청하기가 어렵거나, 다음 청탁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거나, 체면상 경제적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답함

나. 문학도서 출판 과정

■ 문학도서 출판 과정은 출판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를 편집하고 책을 출판한 후에 전자책 등으로 전송되거나 해외 출판 등의 2차 저작물로 활용되는 과정을 의미함

■ 문학도서 출판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은 출판계약서의 작성 시기에서 시작됨

○ 창작자들은 출판사와 최초 협의한 시점에 출판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67.8%만 그 시기에 작성될 뿐, 나머지는 편집이 진행되거나 인쇄가 진행되거나 판매 시점에 작성되며, 심지어 출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13.6%에 달함

○ 그 결과 창작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와 근거를 상실함

○ 출판계약서에도 출판 이후의 '인세 발생이나 판매량 보고'나 '인세 지급 방식(주기)' 등의 내용은 기재되

어 되어 있지 않으며, 판매량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창작자들은 보고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64.1%에 달함

○ 그 이유로는 묻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생각하거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요청해야 하는 것인 줄 모른다거나, 판매량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거나, 출판사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답함

○ 출판 계약 과정에서 강압과 강요를 경험한 비율이 11.2%에 달하며, 불공정 항목에 대한 이의제기 및 수정 요구를 하는 비율이 2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인세를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36.5%이며, 무리한 원고집필 일정을 요구받는 경우가 24.1%, 다량의 책을 구입할 것을 강요받는 경우가 15.9% 등으로 나타남

다. 전송권과 2차 저작권

■ 전송권과 2차 저작권은 도서로 출판하거 문예지에 게재된 작품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거나, 2차적 저작물로 활용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임

■ 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 대한 계약방식은 '출판계약서나 문예지 원고 청탁서에 해당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50.1%, '아무 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아무 연락도 없음'이 22.9%, '계약서와 청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구두로 통보됨'이 13.6%일 정도로 불공정 관행이 일상화 되어 있는 수준임

■ 출판 계약시 전송권과 2차 저작권 내용에 대해 출판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비율이 40.1%에 해당하여 불공정 관행의 중요한 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2차 저작권과 전송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출판계약이 중도에 파기되는 경우를 경험한 비율도 8.4%에 이름

■ 이 문제들은 ①출판계약과 별개로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②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송권 계약의 세부 조항(월정액, 다운로드, b2b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③2차 저작권 활용을 위한 작가와 출판사의 기여도에 따라 수익배분율이 변동되어야 하며, ④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계약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⑤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계약 이후의 판매량 및 활동 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 방법은 설문조사에서 창작자들의 높은 동의 정도를 보임

■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관련하여 작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들로는 ①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 부족, ②출판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 ③도움이나 컨설팅을 받을 만한 공적 자원의 부족, ④작가들의 권리를 대변해 주는 단체의 부재, ⑤작가들 스스로의 권리의식의 부족, ⑥불공정 관행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 프로세스의 부재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라. 공모전과 문학상

■ 출판사 또는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에 의해 진행되는 공모전과 문학상 수여 과정 및 대상 작품의 출판, 전송권,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내용임

■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서 수상 상금을 행사 뒤풀이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주최 측으로부터 강요받는 비율이 17.5%에 해당하며, 심의 과정에서 수상을 미끼로 하여 금품요구 혹은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받는 경우가 5.2%임

■ 문학상과 공모전의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①심사위원과 수상자의 관련성(학연, 지연 등), ②뚜렷하지 않은 수상자 선정기준, ③불확실한 수상 상금 지급시기, ④부실한 사전 공지내용(수상시 저작권 양도 등), ⑤수상여부에 대한 작가의 자기결정권 부재, ⑥수상작품집의 부실한 계약서 작성 과정, ⑦상금을 해당도서의 출판 선인세로 적용하는 관례로 볼 수 있음

○ 상금을 선인세로 적용하는 사례는 웹소설 공모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불공정 관행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마. 기타사항

■ 작가는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64.9%가 동의하는 정도를 나타냄

■ 민간 영역의 문예지와 문학 출판에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68.8%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문예지와 문학 출판이 지니는 폐쇄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위해 ①작가들 대상의 저작권, 계약서 작성 등 교육 및 출판 컨설팅, ②작가들의 이익단체 활동, ③저작권 신탁 단체 설립, ④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⑤권리에 대한 작가 인식 개선, ⑥출판사와 문예지의 개선의지가 필요함

2. 시사점

■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은 문예지, 문학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 등의 모든 분야에서, '원고청탁에서부터 문예지 작품 게재와 보상, 문학 출판 계약에서 인세 지급, 공모전과 문학상 선정'이라는 모든 과정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설문조사에서 드러남

■ 문학 분야는 작품이 창작되고 게재되거나 출판되며 문학상을 수상하는 과정 의 절차적 공정성과, 원고가 청탁되고 출판이 협의되며 문학상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 공유되는 과정에 대해 서로 존중되며 투명하게 협의되는 상호작용 공정성과, 게재되거나 전송되며 2차적 저작권으로 활용되며 수상되는 대가에 대한 분배 공정성이 '공정성 규범(Equity Norm)'으로서 정착될 필요가 있음

■ 작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원고청탁서와 출판권설정계약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원고청탁서와 출판권설정계약서가 체결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부실한 상태임.

■ 원고료 지급이 늦어지거나 인세 발생 및 판매량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상의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 해도 창작자들은 문예지/출판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고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학생태계의 관례화된 사회적 관계와, 문학창작자 스스로의 권리 인식의 부족, 정보의 교류 및 학습이 불가능한 고립된 활동 양식 등으로 분석됨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관련의 계약 조항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구체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출판권설정계약이나 원고청탁서의 부속 내용으로 간략히 취급됨

○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작가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음

■ 창작자들에게 존재하는 문학작품 발표에 대한 욕구를 활용하여 작품의 게재, 문학도서 출판, 공모전과 문학상 수상과 관련한 금품 요구, 다량의 도서 구입, 의무없는 봉사를 강요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음

■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은 창작자들의 대표활동 장르 및 협회 및 단체 소속여부에 따라 경험하고 있는 정도가 다르며 일정한 특징적 패턴을 보이고 있음.

○ 대표활동 장르에 따르면 창작자들은 시조시인, 시인, 수필가가 더 많은 불공정 관행을 경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그림책 작가, 동화 작가가 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아동문학도서의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작가들의 수익에 대한 관심이 높고 출판사 간의 계약 및 수익배분과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작가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의 단체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으로 판단됨

○ 협회나 단체에 소속된 창작자들이 소속되지 않은 창작자들보다 더 많은 불공정을 경험하고 있음

  - 이는 지금까지의 문학 협회나 단체들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작가들 간의 친목이나 단체의 비전이나 미션을 달성하는 데에 주요한 운영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이런 점에서 단체활동을 통해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와 같은 문학 단체의 활동은 시사점이 큼

■ 작가가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매우 커지고 있지만, 이는 작가들 간의 또다른 갈등 요소로 작동하기도 함

○ 그러나, 창작자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작가 자신의 인식변화보다는 문예지의 자발적인 변화의지나, 정책적 도움과 같은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수준이 머물러 있음

○ 문학창작자 자발적인 노력으로 불공정 관행을 극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따라서, 문학 창작자들을 직업군으로 인식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정한 정책적 기준과 체계가 먼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공정성 규범이 정책적, 사회적으로 적용되지 위한 노력과 함께 문학 창작자들의 인식의 변화와 집합적 활동과 실천의 활성화를 통해 문학 생태계가 공동의 협력으로 투명성과 존중, 그리고 대화에 기초하여 성장해야 함

■ 전통적 출판산업이 미디어 사용자 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문학 생태계가 출판자본의 역할이 강화되며, 미디어 융합과정에서 문학과 콘텐츠의 새로운 유형들이 출현하며, 거대 플랫폼이 문학 생태계에 직접 참여하는 상황이 본격화됨

○ 이 환경에서 전송권과 2차 저작권은 공정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많은 비즈니스적 기회와 가치를 마련할 수 있지만 불공정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25]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5) 생물학자인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은 1968년 〈사이언스(Science)〉에 실린 그의 논문에서 공유지의 희귀한 공유 자원은 어떤 공동의 강제적 규칙이 없다면 많은 이들의 무임승차 때문에 결국 파괴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이론'이다(Ostrom, 1990).

제6장

문학 출판 관련자 심층면접 분석결과

제1절 분석대상

■ 문학 창작자 대상으로 실시한 '문학분야 불공정관행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주요 문예지/출판사의 의견을 묻고자 '2020년도 문예지발간지원사업'에 선정된 47개 문예지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명 온라인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나, 총 9개의 문예지만 참여하였음

■ 미미한 참여가 이루어진 원인으로는 첫째, 8월 6일~ 8월 10일까지 시행된 설문조사가 하계휴가철과 중복되었으나 촉박한 연구일정 관계로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둘째, 문학분야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자체에 대한 문예지와 출판사의 거부감 존재, 셋째, 표절 사건 및 성추행으로 인한 문예지 폐간 등 문학계의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한 시점이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이에 다소 응답 수가 부족하지만 9개 문예지의 응답내용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문예지와 문학 출판사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2절 분석 결과

1. 면접 참여자

■ 면접 참여자는 총 9개 문예지의 편집주간, 대표, 발행인, 관리실장 등으로서 문예지와 출판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 문학분야 불공정관행에 대한 소속 문예지의 입장을 밝히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표 6-1] 면접 참여자 명단/소속문예지/직위

이름	직위
A	편집주간
B	대표
C	발행인
D	발행인
E	발행인
F	대표
G	발행인
H	관리실장
I	발행인

2. 불공정 관행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 문학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서 언급된 지적사항들에 대해 귀 문예지 또는 출판사에서 고려하고 있는 개선방향은 어떠한지 자유롭게 기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함

○ 원고 청탁서 미체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문예지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문예지 발간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조건에 이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원고료 지급일 미기재, 원고료 액수 미고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앞으로 반영하여 시행하겠다는 응답도 있었음

○ B의 경우에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응답하였는데, 이 답변만으로는 해당 항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뜻인지, 개선방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표 6-2] 불공정관행 지적사항에 대한 문예지의 개선계획(1)

이름	1) 원고청탁서 미체결	2) 원고료 지급일 미기재	3) 원고료 액수 미고지
A	원고청탁시 계약서 첨부	겨울호 청탁시 계약서에 원고료 지급일 기재 예정	원고료 액수 고지 중
B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C	체결	기재	고지함
D	원고 청탁서 체결 지향	원고료 지급 기일 기재 및 엄수 지향	앞으로 원고료 액수 고지
E	모든 원고에 대해 원고청탁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잡지 발행 후 1주일 안에 원고료를 지급하였는데, 앞으로는 원고청탁서에 원고료 지급일을 기재할 계획입니다.	원고청탁서에 원고료 기입하고 있습니다.
F	청탁과 함께 메일로 원고청탁서 보냄	원고청탁서에 잡지 발행 후 15일 이내 지급	원고청탁서에 밝힘
G	우리 [○○○○○]에서는 원고청탁서를 확실하게 보냅니다	원고료 지급일은 작품발표 후, 2주이내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지급합니다.
H	원고청탁서 체결하고 있음.	게재와 동시에 지급함	원고료 액수 기재함
I	원고청탁서와 서면계약서를 이행하고 있음	원고청탁서에 기재하고 발행 후 1달이내 집행하고 있음	원고청탁서에 기재하고 있음

■ 전송권 안내 미고지에 대해서는 많은 문예지가 이미 원고청탁서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B의 경우에는 '전송권'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C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미고지하겠다고 응답하였음

○ 이는 B과 C의 경우 전자책 발행을 하지 않으며, 블로그나 웹사이트, 웹진 등으로 문예지 게재 작품을 전송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됨

■ 비금전적 원고료 지급과 원고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모든 문예지에서 그런 불공정 행위는 없었다고 응답하였음

○ 이 문제 역시 '문예지 발간지원 사업'에 선정된 문예지의 운영 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D의 경우에는 비금전적 원고료 지급을 금지한다고 답하면서도, 원고료 미지급에 대해서 정기구독 외 원고료 지급이라고 답하였는데, 이 답변만으로는 정기구독료를 제외하고 원고료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한 상태임

[표 6-3] 불공정관행 지적사항에 대한 문예지의 개선계획(2)

이름	4) 전송권 안내 미고지	5) 비금전적 원고료 지급(정기구독권유, 잡지 구입, 기부금 등 요구)	6) 원고료 미지급(문예지 게재완료 후 원고료 미지급)
A	전송권 고지	비금전적으로 원고료 지급한 적 없음	출판지원금을 받아 원고료 지급한다는 것을 고지한 후 작가 전체에게 원고료 지급
B	전송권은 처음 접하는 용어임. 傳送權인가요?	해당사항 아님	해당사항 없음
C	미고지	요구하지 않음	지급함
D	청탁서 발송 때 안내	비금전적 원고료 지급 금지	정기구독 외 원고료 지급
E	잡지에 실린 모든 글의 권리는 저자에게 있다는 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창간 이후 원고료를 미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F	원고청탁서에 밝힘	전혀 없음	잡지 발행 후 15일 이내 지급
G	계약서 조항에 전송권 안내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순수하게 원고료만 지급하고 끝났습니다.	게재된 작품은 무조건 지급합니다.
H	안내함	요구하지 않았음	게재와 동시에 지급함
I	원고청탁서에 기재하고 고지함.	전혀 없고 정상 지급.	정상적으로 온라인 송금함.

■ 출판 계약서 외에 2차 저작권, 전송권 관련 조항이 포함된 별도 계약서를 체결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문예지가 원고청탁서 한 종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별도 계약서를 체결하는 곳은 1개 문예지에 불과하였음

○ 그러나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면 2차 저작권과 전송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 출판도서 판매량 미보고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출판을 병행하는 문예지는 보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출판을 병행하지 않는 문예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응답함

○ 그러나, G의 경우에는 교보문고 등에 판매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작가가 직접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

○ 현재로서는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판매정보는 출판사만 확인할 수 있음

■ 문학상 수상시 명확한 사전 안내(저작권 양도 등 사전공지 내용 부족, 수상 작품집의 계약서 작성 미비, 상금의 선인세 적용 등)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대부분의 문예지가 명확한 안내를 사전에 하고 있으며, 선인세가 아닌 순수한 상금으로 운영한다고 응답함

[표 6-4] 불공정관행 지적사항에 대한 문예지의 개선계획(3)

이름	7) 출판 계약서 체결 외 별도 계약서 체결 필요(2차 저작권, 전송권 관련 조항 포함)	8) 출판도서 판매량 미보고(계약 체결한 도서의 정확한 판매량 정보 미고지)	9) 문학상 수상 시 명확한 안내(저작권 양도 등 사전공지 내용 부족, 수상 작품집의 계약서 작성 미비, 상금의 선인세 적용 등)
A	별도 계약서 체결하고 있음.	출판도서 판매량 보고	문학상 수상 시 명확한 안내를 하고 있음.
B	현재 계약서만 체결하고 있음.	해당사항 아님	해당사항 아님
C	불필요	보고	공지
D	출판사 계약 체결	출판물 판매 고지	해당사안 없음
E	잡지사에서는 2차 저작권이나 전송권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잡지에 실인 모든 글의 권리는 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	신인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금은 선인세가 아니라 순수한 상금입니다.
F	원고청탁서에 밝힘	해마다 판매량 보고	문학상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나, 저작권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음
G	출판계약서만 체결합니다.	판매량은 교보 등 판매시스템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안내 등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H	체결함	보고함	안내함
I	원고청탁서에 기재하고 고지함	잡지이므로 별도로 고지는 안함.	해당사항 없음

3. 원고청탁, 출판 계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사항

■ 문예지 또는 출판사의 입장에서 작가와 원고청탁 또는 출판계약 등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해 [표 6-5]와 같이 응답함

■ 대다수의 문예지는 작가와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신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으며, '문예지발간지원사업'에 선정되어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 2개 문예지가 응답하였음

■ B의 경우에는 '필요 못 느낌'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 답변만으로는 작가와의 관계 개선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인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뜻인지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G의 경우에는 2달간 10번 이상의 교정을 요구하는 일부 작가들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나,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음

[표 6-5] 원고청탁 출판계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사항

이름	응답내용
A	원고료 지급과정에서 예술위원회가 제시한 원고료 1장 제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잡지는 예술위원회의 지원금을 받아 원고료를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원고료는 편당 5만원을 지급하고 특별기고나 계평은 10~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없이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상태라 작가들에게 응분의 대우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께 감사드립니다.
B	필요 못 느낌.
C	없음
D	크게 없음
E	없습니다
F	원고료 지원을 받음으로써 일정 금액의 원고료를 줄 수 있어 다행임
G	작가들 일부는 지나치게 많은 교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예, 교정만 약10회 이상 두어 달간)
H	잘 진행되고 있음
I	신뢰가 중요하다고 봄

4.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기타 제안 의견

■ **상기 지적사항 외에 현재의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귀 문예지 또는 출판사의 입장이나 또는 제안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하여 [표 6-6]과 같이 응답함**

■ **이 과정에서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에 대한 문예지/출판사의 불만도 표현되고 있으며 열악한 문예지 운영 상황에 대한 호소도 이루어지고 있음**

[표 6-6]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기타 제안 의견

이름	응답내용
A	우리 잡지사의 입장에서는 지원금으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기에 작가들의 문학활동을 지지하게 되는 결과라 출판지원금을 지원해 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께 거듭 감사드릴 뿐입니다.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B	1. 도서가 아닌 문예지 원고 계약서는 1회성으로 끝나는 원고이기에 작년처럼 청탁서로 갈음해야지, 계약서를 구비하여 제시한다는 것은 출판사나 저자를 피곤하게만 할 뿐 전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 같으니 저자들을 설문조사하여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문학나눔 심사위원들의 불공정성이 자행되고 있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아르코에 청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모양이니 심사위원 선정과 관리의 지속적인 개선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	없음
D	문예지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E	없습니다
F	어떤 명목으로든 불공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나갈 것임
G	1) 정부지원 문예지, 출판사 선정 심사위원은 전국 지역별, 문학단체(협회)별로 공정하게 선발되어야 할 것입니다.(중앙, 특정문인, 대형문학 단체 등에만 편중되어 있음) 2)군소 잡지사, 출판사 등은 경제적 문제로 이중고를 당하여 90%가사일상 폐쇄되어 나가고 있음(모든 문학 재정지원이 중앙에만 편중) 3)이런 설문조사에 매번 응했지만 제발 형식적으로 끝나지 말고 제발 문체부 등에서 실현되길 바랍니다
H	없음.
I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면 정착하리라 생각함.

제3절 소결

■ 심층면접에 참여한 문예지와 출판사의 경우 '문예지발간지원사업'에 선정된 곳으로서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공정 관행이라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변화하는 출판환경에서 창작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송권, 2차 저작권 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출판사 역시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건강한 문학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갖지 못한 상태임

■ 문예지/출판사와 작가 사이에서 상호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에, 최근 창작자의 저작권과 권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예술인의 권리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는 과정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창작자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이런 상황이기에 문예지/출판사에서는 창작자의 입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문예지/출판사의 열악한 운영 현황이나 문예지/출판사가 겪고 있는 불공정 관행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를 제시하기도 함

제7장

결론 및 실행 전략

제1절 연구결과

■ 본 연구는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창작자 12명을 대상으로 하여 ①문예지 원고청탁, 작품발표 및 창작대가 지급과정에서의 불공정, ②작품집 발간계약 등 출판과정에서의 불공정, ③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서의 불공정, ④문학상과 유사 공모제도 참여와 저작권에서의 불공정, ⑤ 불공정 관행에 대한 창작자 인식 등을 내용으로 진행함

■ 문단의 창작 작품 발표 등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한 차기년도 사업 공고 및 실행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함

■ 전통적 출판산업이 미디어 사용자 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문학 생태계가 출판자본의 역할이 강화되며, 미디어 융합과정에서 문학과 콘텐츠의 새로운 유형들이 출현하며, 거대 플랫폼이 문학 생태계에 직접 참여하는 상황이 본격화됨

■ 이 환경에서 전송권과 2차 저작권은 공정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많은 비즈니스적 기회와 가치를 마련할 수 있지만 불공정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1.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 문예지 게재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은 주로 원고 청탁, 작품 발표, 창작 대가 지급 과정을 통해 발생함

○ 원고 청탁은 구두로 이루어지도 하며, 고압적으로 또는 다른 작가를 통해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음

○ 원고청탁서에는 원고료, 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 대한 정보가 작성되어 있지 않는다고 서술되었음

○ 게재된 작품의 원고료가 지급되지 않거나 정기구독으로 대체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음

○ 원고료가 적다고 항의하면 인상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블랙리스트에 올려진다고 판단하고 있음

■ 문학도서 출판에서 불공정 관행은 발간 의뢰, 계약과 계약서, 인세 지급 과정을 통해 발생함

○ 특히 신인일 때 발간 의뢰가 구두로 진행되고 계약서에 기반한 계약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경험한 사례도 제시됨

○ 구두 계약조차 충분한 고려와 협의에 기반하지 못한 사례들이 서술됨. 미리 계약서를 써서 다른 출판사와 계약을 못하게 하는 경우나 전집이나 시리즈물 기존 계약 내세워 특정한 내용의 계약을 강제하기도 함

○ 인세 지급에서도 판매 수량이 보고되지 않거나 물어보는 것에 대해 협박을 당하고, 지급이 늦거나 대량 납품에 대해 인세를 낮추고, 출간된 책에 대해 강제로 사게 하는 사례도 있음

■ 전송권과 2차 저작권 불공정 관행은 문예지에 게재된 작품, 출판된 문학도서, 공모전과 문학상 작품 전체적으로 발행되고 있음

○ 문예지에 게재된 작품에 대해 전송권과 2차 저작권 내용이 원고청탁서에 작성되지 않으며 문학 출판에서는 별도 계약이 아닌 종이책 계약 부속 내용으로 간략하게 작성되고 있음

○ 문예지 게재 작품과 문학도서 모두 전자책의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와 인세 보고가 불규칙하고 서술됨
○ 2차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출판사가 보유하는 경우도 발견됨
○ 또는 계약서 내용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됨
■ 공모전과 문학상에서 불공정 관행은 공모 과정과 문학상 소개 내용에서 상금과 저작권 계약 등을 통해 발생함
○ 공모전과 문학상 소개 내용에 상금과 저작권 계약에 대한 내용인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은 채, 그리고 수상자로 결정되는 과정을 전후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있었음
○ 이런 과정은 상금을 작품 매절 계약금으로 지불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심지어 계약금을 되돌려 달라거나, 상금을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사례도 서술됨
○ 또한 문학상의 경우에는 수상의 작가 결정권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이상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은 '작가와 노동자', '기성 단체와 대안 단체', '정책 지원' 등의 주제에 대해 심층면접이 진행되었음
○ 참여 작가들은 작가가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보여줌
○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기존 단체들의 작가 대변 단체로서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한 데에 기반함
○ 정책적으로는 작가 정보 아카이브와 신인 작가 교육과 작가들의 2차 저작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2. 문학 창작자 설문조사

■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은 문예지, 문학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 등의 모든 분야에서, '원고청탁에서부터 문예지 작품 게재와 보상, 문학 출판 계약에서 인세 지급, 공모전과 문학상 선정'이라는 모든 과정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설문조사에서 드러남
■ 작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원고청탁서와 출판권설정계약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원고청탁서와 출판권설정계약서가 체결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부실한 상태임
■ 원고료 지급이 늦어지거나 인세 발생 및 판매량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상의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 해도 창작자들은 문예지/출판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고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학생태계의 관례화된 사회적 관계와, 문학창작자 스스로의 권리 인식의 부족, 정보의 교류 및 학습이 불가능한 고립된 활동 양식 등으로 분석됨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관련의 계약 조항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구체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출판권설정계약이나 원고청탁서의 부속 내용으로 간략히 취급됨
○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작가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음
■ 창작자들에게 존재하는 문학작품 발표에 대한 욕구를 활용하여 작품의 게재, 문학도서 출판, 공모전과

문학상 수상과 관련한 금품 요구, 다량의 도서 구입, 의무없는 봉사를 강요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음

■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은 창작자들의 대표활동 장르, 협회 및 단체 소속여부에 따라 경험하고 있는 정도가 다르며 일정한 특징적 패턴을 보이고 있음.

○ 대표활동 장르에 따르면 창작자들은 시조시인, 시인, 수필가가 더 많은 불공정 관행을 경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그림책 작가, 동화 작가가 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아동문학도서의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작가들의 수익에 대한 관심이 높고 출판사 간의 계약 및 수익배분과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작가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의 단체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으로 판단됨

○ 협회나 단체에 소속된 창작자들이 소속되지 않은 창작자들보다 더 많은 불공정을 경험하고 있음

- 이는 지금까지의 문학 협회나 단체들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작가들 간의 친목이나 단체의 비전이나 미션을 달성하는 데에 주요한 운영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이런 점에서 단체활동을 통해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의 활동은 시사점이 큼

■ 작가가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매우 커지고 있지만, 이는 작가들 간의 또 다른 갈등요소로 작동하기도 함

○ 그러나, 창작자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작가 자신의 인식변화보다는 문예지의 자발적인 변화의지나, 정책적 도움과 같은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수준이 머물러 있음

○ 문학창작자 자발적인 노력으로 불공정 관행을 극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따라서, 문학 창작자들을 직업군으로 인식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정한 정책적 기준과 체계가 먼저 제공될 필요가 있음

3. 문학 출판 관련자 심층면접 결과

■ 심층면접에 참여한 문예지와 출판사의 경우 '문예지발간지원사업'에 선정된 곳으로서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공정 관행이라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변화하는 출판환경에서 창작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송권, 2차 저작권 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출판사 역시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건강한 문학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갖지 못한 상태임

■ 문예지/출판사와 작가 사이에서 상호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에, 최근 창작자의 저작권과 권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예술인의 권리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는 과정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창작자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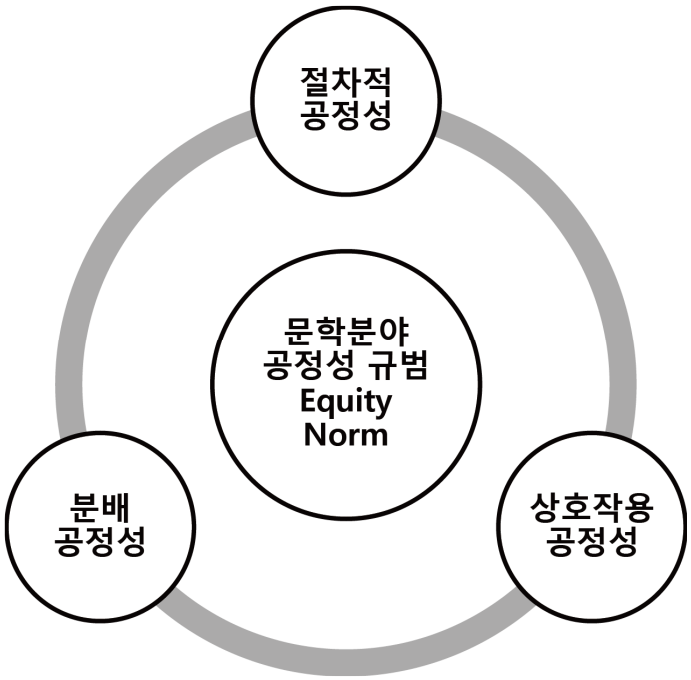
■ 이런 상황이기에 문예지/출판사에서는 창작자의 입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문예지/출판사의 열악한 운영 현황이나 문예지/출판사가 겪고 있는 불공정 관행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를 제시하기도 함

제2절 정책적 제안

■ 문학 분야는 작품이 창작되고 문예지에 게재되거나 단행본으로 출판되며 문학상을 수상하는 일련의 과정이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적 공정성**과,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문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이 상호 존중적이며 협의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공정성**과,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창작활동의 대가에 대한 **분배 공정성**이 '공정성 규범(Equity Norm)'으로서 정착될 필요가 있음

■ 공정성 규범이 정책적, 사회적으로 적용되지 위한 노력과 함께 문학 창작자들의 인식의 변화와 집합적 활동과 실천의 활성화를 통해 문학 생태계가 공동의 협력으로 투명성과 존중, 그리고 대화에 기초하여 성장해야 함

[그림 7-1] 문학분야 공정성 규범의 3대 영역



■ **표준원고청탁서**

○ 표준 원고 청탁서를 만들어 공표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은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하며, 차기년도 지원심사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 곳을 대상으로 함

○ 표준 원고 청탁서에는 원고료 액수, 원고료 지급일, 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야 함

○ 표준 원고청탁서의 사용 여부가 신뢰할 수 있는 문예지의 판단 척도로 사용되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출판계약 운영개선

○ 출판과정 불공정 관행 사례를 유형화하고 방지대책을 매뉴얼화하며, 신인 작가들 대상의 출판계약 불공정 관행 방지 교육에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관련 계약은 출판계약과 별도로 맺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문학 출판사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며 공동의 노력 촉구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정례적인 불공정 관행 사례 수집 발굴 및 사례 공유 프로세스화 할 필요가 있음

■ 작가 교육

○ 청탁문제와 문학도서 출판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는 신입 작가들이 이것이 불공정 관행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연 1회 오프라인 교육과 상시 언택트 교육 등을 통해 공공 기관에서 등단작가와, 신인작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과 저작권에 대한 강의를 시행해야 함

■ 작가 DB 운영

○ 원고 청탁시 폭넓은 작가를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작가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소수의 편집위원 등의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청탁이 진행되는 까닭에 자연스럽게 쏠림 현상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 문학 발표 이력이나, 문학 경향, 자료가 될 만한 평론 등이 제시되어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작가DB의 운영 사례로는 네이버 인물DB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작가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운영자가 검토하여 공개하는 프로세스임

○ 작가 스스로 소개하고 싶은 문학작품을 게재할 수 있으며, 유료 강의나 수업, 체험 프로그램 등을 등록하여 작가와 독자, 사업자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작가 플랫폼으로서 작동하게 함

■ 저작권법 개정 관련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창작자 대상의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교육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조성되어야 함

■ 작가를 위한 지원

○ 신뢰할 수 있는 저작권 신탁 단체나 작가들을 이익을 대변할 곳이 필요함

○ 특히 저작권 법 개정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저작권 신탁 단체는 단순한 관리 차원의 업무가 아닌, 문학작품이 2차 저작물로서 전 산업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함

○ 또한, 작가들이 저작권 문제를 상담할 변호사 혹은 법적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이름과 실명을 공개해야하는 상황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 문학상과 공모전의 가이드라인 보완

○ 2014년에 제정된 '콘텐츠 공모전 표준 가이드라인'에 문학분야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금과 선인세 관련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보완될 내용은 첫째, 문학상 수상과 출판은 별도 사안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둘째, 문학상 상금은 선인세와 구분되어야 하며, 셋째, 수상작의 출판계약 및 2차 저작권과 전송권 관련 협의는 공모전과 별도로 작가와 협의되어야 한다는 것임

■ 작품 인증

○ 현행 작가 지원 제도에서 종이책 형태의 출판경력을 자격요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화하는 출판환경을 반영하여 웹진의 원고 게재나 전자책 형태의 출판물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제3절 연구의 특장점과 활용에 대한 제언

■ 처음 이루어진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에 대한 창작자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문학 생태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학 창작자의 시각과 요구에 기반한 접근 방법을 시도함

■ 문학 생태계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나 현상들에 대한 실증적 자료로서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에 대한 창작자들의 의견을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함으로써 균형감 있고 현장감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었음

■ 문학분야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이란 무엇인지를 이론적 근거에 입각하여 구체화시키고 불공정 관행의 분야와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 ①원고청탁 및 작품 발표과정, ②문학도서 출판과정, ③전송권과 2차 저작권, ④공모전과 문학상 4가지로 분류된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은 각각의 상황과 조건, 과정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각 분야별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활용이 가능함.

■ 저작권을 포함한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정책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 본 연구는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을 둘러싼 창작자 중심의 실태조사로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로 나아가는 데에는 한계를 지님

■ 문학생태계의 또다른 축인 문예지와 문학 출판사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관행이나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요구됨

■ 불공정 관행을 둘러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률적, 정책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전송권 및 2차 저작권과 관련된 창작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직업으로서의 문학창작자들의 권리에 대한 보장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 이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협의와 현장 적용이 가능한 원고청탁서, 출판계약서, 전송권과 2차 저작권,

문학상 관련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권장안이 개발되어야 함

■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문학 향유자 또는 콘텐츠 사용자의 진화 역시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문학 창작자의 창작 방식이나 환경, 독자와의 소통 방식, 유통 방식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대한 미래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함

■ 최근 2차 저작권이나 전송권 분야에서 창작자들이 경험하는 불공정 관행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여기에도 법률적, 정책적, 산업적 측면의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2차 저작권이나 전송권 영역은 권리의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문학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 문학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참고문헌

1. 고봉준(2018). 디지털 시대와 문예지의 방향, 문학주간 2018 문예지 세미나 『지금 여기, 문예지 공동체를 꿈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9. 5.
2. 공병훈(2018). 제4차 산업혁명과 출판의 미래 모델 연구 : 기술 혁신 환경의 출판 모델과 적응,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80호, pp.3-39.
3. 공병훈(2019). 문예지 지원 정책 연구 : 2017년 국내 문예지발간지원사업과 문예지 미래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한국출판학회, 통권 89호, pp. 5-36.
4. 공병훈·이민우(2019). 독립 문예지 속성과 모델 연구 : 2018년 국내 독립 문예지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한국출판학회, 통권 86호, pp. 5-39.
5. 김기태(2013). 『출판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6. 김병익(1979). 신춘문예의 재검토, 『문화와 반문화』, 도서출판 문장.
7. 대한출판문화협회(2017).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발행권 설정과 관련된 사용계약서」, Available http://kpa21.or.kr/(접속일자 2020. 06. 7.)
8. 도종환, 임헌영, 이재무, 오봉옥, 홍용희, 유성호(2016). 문예지 지원 제도의 현황과 제언, 『계간 시작』, 15(3), 2016. 9, pp.26-63.
9. 문화체육관광부(2017).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2008~2002)」, 2017. 12.
10. 박현수(2006). 한국 근대문학, 재생산구조의 제도적 연원 ; 한국 근대문학의 재생산 과정과 그 의미, 『대동문화연구』, 53권0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p. 41-75.
11. 방재석(2012). 문예지에 대한 문학 작가의 인식과 정책적 대안 ,『문화정책총론』, 제26집 2호, pp.9-30.
12. 서덕순(2018). 문학창작 지원 정책 연구: 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대산재단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17권 제1호(통권 42호), 2018. 4, pp.143-169.
13. 양재훈(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 지원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주간 2018 문예지 세미나 '지금 여기, 문예지 공동체를 꿈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9. 5.
14. 위키피디아 : 문학상, Available(2020. 5. 31) : https://ko.wikipedia.org/wiki/문학상
15. 이건웅·고민정(2018). 독립출판의 개념과 사례 연구『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83호, pp.101-135.
16. 이기현(2011). 콘텐츠 향유의 개념정립 및 정책적 함의, 『콘텐츠의 문화적 향유 확대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4, 10~19쪽
17. 이병국(2018). 문예지 지원 사업 정책과 구조 변화 연구, 『한국학연구』, 제49집, pp.293-206.
18. 이성호(2008). 출판계약의 유형과 실제, 『法曹』, 2008·1(Vol.616), pp.244-285.
19. 장용호·공병훈(2012). 문학 커뮤니티의 집합적 창작(collective creation) 과정에 대한 생태계적 모형 연구 : 온라인 커뮤니티 문장(Munjang)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9권 제3호, 2012.9, pp.163-218.

20. 장용호·공병훈(2013). 디지털 출판 생태계와 출판사의 적응 전략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65호, pp.167-194
21. 장호병(2001). 문인등단 매체와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논문.
22. 정홍익(2014).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가치와 역할 재설정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12. 8.
23. 지요하(2001). 문인 자격의 허와 실, 월간 『인물과 사상』, 제44호, 2001. 12.
24. 최진원(2019),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11.
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a). 지금 여기, 문예지 공동체를 꿈꾸다, 문학주간 2018 문예지 세미나 자료, 2018. 9. 5.
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b). 2017년 문예지 아카이빙 사업 위탁용역 결과보고서, 2018. 3. 20.
27. 한국문화정책학회(2014).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가치와 역할 재설정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12.
28. 한국저작권위원회(2019). 『2018 저작권 백서』, 2019. 12.
29. 한국정책학회(2017). 문화예술정책 현황진단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5.
30.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문화산업분야 공정상생 관련 법안 연구, 2018.
31. 한국콘텐츠진흥원(2019), 콘텐츠산업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전략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1. 30.
3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0). 출판권설정계약서, Available http://www.kpipa.or.kr/(접속일자 2020. 06. 7.)
33. 한승준(2017). 문화예술정책 현황진단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2.
3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년 문예지발간지원사업, http://www.arko.or.kr/business/pup_2018_02_2.jsp(접속일자2020. 04. 15.)
35. 한국저작권위원회, Available https://www.copyright.or.kr/(접속일자 2020. 04. 15.)
3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지발간지원, https://www.arko.or.kr/content/popup/2020/pup_2020_1-2.jsp(접속일자2020. 04. 15.)
37. 홍성민(2000), 『문화와 아비투스』, 나남출판사, 2090.09.30.
38. Adams, J. S.(1963).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equ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pp.422-436.
39. Barker, C.(2004). The SAGE Dictionary of Cultural Studies, SAGE Publications Ltd.
40. Riley, D.(2017). Bourdieu's Class Theory, Catalyst 1(2).
41. Ostrom, E. (1990). Page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42. European Fair Trade Association.(2006), 공정 무역의 정의, Available : https://www.newefta.org/(접속일자 2020. 06. 7.)

<부록 1> 문학 창작자 설문조사 설문지

2020년도 문학분야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안내문

안녕하세요.
이 설문조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서 <문학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문학 창작자와 평론가 등 문학 생태계의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 신청·선정 경험이 있는 문학분야 창작자들을 포함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작가회의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문학 생태계의 공정성을 위해 이 설문조사에 솔직하고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주변분들에게도 참여를 권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구와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기간 : 2020년 7월 6일(월) ~ 7월 27일(월) (15 일간)
▶ 대상 : 문학 창작자와 문학 평론가
▶ 혜택 : 참가하신 분 중 200 분께 편의점 기프티콘 5000원권 추첨 증정

연구책임자
공병훈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조정미 스토리미디어랩 대표
이민우 뉴스페이퍼 대표

A. 인구통계학적 속성

a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남자
○ 여자
○ 기타 (others)

a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나이 기준)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69세 ○ 70세 이상

a3. 귀하의 창작활동은 다음의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등단한 작가이다
☐ 문학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 문학공모전에 당선되었다
☐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였다
☐ 등단을 준비중인 지망생이다
☐ 등단과 관계없이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다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a4. 귀하께서는 창작자로서 어떤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 시인
○ 소설가
○ 수필가
○ 시조시인
○ 동시작가
○ 동화작가
○ 그림책작가
○ 평론가
○ 희곡작가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a5. 귀하가 a4에서 체크하신 활동 외에 대표적인 활동이 무엇인가요? 중복된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선택해 주세요.
○ 문학 출판
○ 문예지 출판
○ 문학분야 교육자
○ 관련분야 공무원
○ 해당사항 없음(창작자로만 활동함)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a6. 귀하는 문학 관련 협회나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예
○ 아니오

B. 원고 청탁 및 작품 발표
다음은 문예지의 원고 청탁 및 작품 발표와 창작 대가 지급에 대한 설문내용입니다.

b1. 문예지에 귀하의 원고를 게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 예 (B_2로 이동)
○ 아니오 (C로 이동)

b2. 문예지 원고 청탁 과정에서 원고 청탁서를 받는 경우는 비율상 어느 정도입니까?(레버를 움직여 표시하거나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0----------100

b3. 원고청탁서에는 다음 각 항목들이 얼마나 수록되어 있습니까 ?

항목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수록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수록되어 있는 편이다	항상 수록되어 있다
기획의도와 방향					
원고 마감일					
원고 분량					
원고료 액수					
원고료 지급일					

b4. 원고 청탁서 없이 구두로만 원고 청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b5. 구두로 청탁한 후 청탁서가 오지 않아 작품 발표 시기를 놓친 경험이 있습니까 ?
○ 전혀 없었다
○ 없는 편이다
○ 보통이다
○ 있는 편이다
○ 자주 있다

b6. 구두청탁이 실제 원고 게재로 연결되지 않은 경험은 비율상 어느 정도입니까?(레버를 움직여 표시하거나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0----------100

b7. 문예지 원고 청탁 과정에서 원고청탁서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보통이다
○ 동의하는 편이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b8. 원고청탁서에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원고료 액수					
원고료 지급일					
전송권 (전자책 , 인터넷 , 웹진 등)					

b9. 원고료 지급은 대략 언제쯤 이루어졌습니까?
◯ 문예지 발간 후 1 주일 이내
◯ 문예지 발간 후 2 주일 이내
◯ 문예지 발간 후 1 개월 이내
◯ 문예지 발간 후 3 개월 이내
◯ 문예지 발간 후 6 개월 이내
◯ 문예지 발간 후 6 개월 이상

b10.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b11. 원고료 지급이 예상보다 늦어질 때 문예지에 원고료 지급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b12. 원고료를 현금이 아닌 책이나 잡지 , 정기구독권 , 기타 물건 등으로 지급받거나 , 문예지 발전기금의 형태로 납부할 것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b13. 문예지 작품 게재를 명목으로 대량의 문예지 구입 및 금품지급을 요구받거나 , 명목상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b14. 문예지에 게재된 귀하의 원고가 전자책이나 인터넷 , 웹진에 게재되는 경우 귀하께서는 사전에 이 사항을 전달받는 편입니까 ?
◯ 전혀 전달받지 못하였다
◯ 전달받지 못하는 편이다
◯ 보통이다
◯ 전달받는 편이다
◯ 항상 전달받아 왔다
◯ 해당 사항 없음

b15. 문예지에 게재된 원고가 전자책이나 인터넷 , 웹진에 게재되는 경우 작가에게 그 사항이 원고청탁서를 통해 미리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보통이다
○ 동의하는 편이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C. 문학도서 출판과정

c1. 귀하께서는 문학분야의 도서를 출간(공저 포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예(C-2로 이동)
○ 아니오(D로 이동)

c2. 귀하께서 단독 또는 앤솔로지(공저)로 출간한 문학도서는 어떤 도서 분류에 해당합니까? 복수인 경우 가장 대표적 장르를 선택해 주세요.
○ 시 ○ 소설 ○ 수필 ○ 시조 ○ 동시
○ 동화 ○ 그림책(단행본 , 전집 포함) ○ 평론 ○ 희곡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c3. 귀하께서 문학도서를 출간할 경우 출판계약서는 대체적으로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중복 선택 가능)
□ 출판사와 최초 협의한 시점
□ 최종 원고가 마감되어 전달된 시점
□ 출판사에서 원고를 편집, 인쇄하는 시점
□ 도서가 출판되어 판매가 시작된 이후
□ 구두로만 계약하고 출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c4. 귀하께서는 출판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출판사와 최초 협의한 시점
○ 최종 원고가 마감되어 전달된 시점
○ 출판사에서 원고를 편집 , 인쇄하는 시점
○ 도서가 출판되어 판매가 시작된 이후

c5. 귀하께서는 출판계약서 내용을 얼마나 꼼꼼하게 검토하십니까 ?
○ 거의 검토하지 않는다
○ 검토하지 않는 편이다
○ 보통이다
○ 검토하는 편이다

◯ 매우 꼼꼼하게 검토한다

c6. 출판계약서에는 다음 각 항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

항목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수록되어 있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수록되어 있는 편이다	항상 수록되어 있다
계약금(선인세) 액수					
인세비율					
작가의 최종원고 전달일자					
출판사의 출판의무일자					
인세지급 방식(주기)					
판매량 보고 방식					

c7. 출판계약서의 각 항목들은 계약 후 얼마나 잘 준수되는 편입니까 ?

항목	전혀 준수되지 않는다	준수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준수되는 편이다	항상 준수된다
계약금(선인세) 액수					
인세비율					
작가의 최종원고 전달일자					
출판사의 출판의무일자					
인세지급 방식 (주기)					
판매량 보고 방식					

c8. 출판 계약 과정에서 귀하 본인의 의사와는 별도로 강압이나 강요로 이루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

◯ 전혀 없었다
◯ 없는 편이다
◯ 보통이다
◯ 있는 편이다
◯ 자주 있었다

c9. 출판계약서의 내용에서 불공정한 항목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출판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사항의 수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 전혀 없었다
◯ 없는 편이다
◯ 보통이다
◯ 있는 편이다
◯ 자주 있었다

c10. 도서를 출간한 이후 인세 발생과 판매량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졌습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c11. 인세 발생과 판매량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출판사에 보고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전혀 없었다
◯ 없는 편이다
◯ 보통이다
◯ 있는 편이다
◯ 자주 있었다

c11-1. 출판사에 보고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c12. 출판도서에 대한 인세를 현금이 아닌 책이나 잡지 , 정기구독권 , 기타 물건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가 있 습니까 ?
◯ 전혀 그런 적이 없다
◯ 그런 적이 없는 편이다
◯ 보통이다
◯ 종종 그런 편이다
◯ 매우 자주 그런 편이다

c13. 출판사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과도하게 짧은 일정으로 원고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c14. 출판계약 체결 시 출판사 임의로 작품을 수정 , 보완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c15. 단행본 출판계약 조건으로 차기 작품도 동일 출판사에서 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c16. 단행본 출판계약 시 자신의 책을 다량 구입할 것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D. 전송권과 2차 저작권

※ 이 설문에서 다루는 각 용어의 의미는 저작권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전송권’이라 함은 전자책, 인터넷(웹), 모바일, 앱(APP) 등을 통해 문학작품이 전송되는 권리를 의미함. 2)‘2차 저작권’이라 함은 ‘번역, 변형, 각색, 영상, 캐릭터 개발 등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의미함.

d1. 종이책으로 출간되거나 문예지에 실린 귀하의 문학작품이 전자책(epub, pdf), 웹진 등 인터넷 콘텐츠, 앱 (APP) 등 모바일 콘텐츠, 오디오북 등 디지털 형태로 유통(전송)된 경험이 있습니까 ?
◯ 예(d2로 이동)
◯ 아니오(d6으로 이동)

d2. 종이책으로 출간되거나 문예지에 실린 귀하의 문학작품은 어떠한 디지털 형태로 유통(전송)되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전자책(epub, pdf)
☐ 웹진 등 인터넷 콘텐츠
☐ 앱 (APP) 등 모바일 콘텐츠
☐ 오디오북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d3. 디지털 형태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출판계약서나 문예지 원고청탁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출판계약서나 문예지 원고청탁서 이외에 별도의 전송권 계약이 진행되었다
☐ 계약서와 청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구두로 통보되었다
☐ 아무 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아무 연락도 없었다.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d4. 출판계약 시 전송권과 2차저작권 내용에 대해서 출판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 설명이 충분치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설명이 충분한 편이다
○ 매우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다

d5.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계약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출판계약과 별개로 전송 권과 2차저작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송권 계약의 세부 조항을 명 시하여야 한다 (월정액 , 다운로드 , b2b 등)					
2 차저작권 활용을 위한 작가와 출판사의 기여도 에 따라 수익배분율이 변동되어야 한다					
전송권과 2 차저작권 계 약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전송권과 2 차저작권 계약 이후의 판매량 및 활 동 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d6.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관련하여 작가들이 다음 항목들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 부족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					
도움이나 컨설팅을 받을 만한 공적 지원의 부족 작가들의 권리를 대변해 주는 단체의 부재					
작가들 스스로의 권리의식의 부족					
불공정 관행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프로세스 부재					

○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d7. 2차 저작물 작성권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을 때 출판사에서 계약을 중도에서 파기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E. 공모전과 문학상

e1. 귀하께서는 공모전이나 문학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예(E-2로 이동)
○ 아니오(E-3 이동)

e2. 문학상이나 공모전 수상 상금을 행사비나 뒷풀이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주최측으로부터 요구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
◯ 거의 없는 편이다
◯ 보통이다
◯ 가끔 있는 편이다
◯ 매번 있는 편이다

e3. 다음 각 항목들은 국내 공모전과 문학상 시행방식의 불공정 관행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항목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영향을 끼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영향을 끼치는 편이다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심사위원과 수상자의 관련성(학연, 지연 등)					
뚜렷하지 않은 수상자 선정기준					
불확실한 수상 상금 지급시기					
부실한 사전 공지내용(수상시 저작권 양도 등)					
수상여부에 대한 작가의 자기결정권 부재					
수상작품집의 부실한 계약서 작성 과정					
상금을 해당도서의 출판 선인세로 적용하는 관례					

e4. 문학상, 창작기금 등 선정 과정에서 심의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받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한 적이 있 습니까 ?

◯ 예
◯ 아니오

F. 불공정관행에 대한 기타사항

f1. 작가는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보통이다
◯ 동의하는 편이다
◯ 매우 동의한다

f2.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위한 다음 요소들 중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작가들 대상의 저작권, 계약서 작성 등 교육 및 출판 컨설팅					
작가들의 이익단체 활동					
저작권 신탁 단체 설립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					
권리에 대한 작가 인식 개선					
출판사와 문예지의 개선 의지					

f3. 민간 영역의 문예지와 문학출판에서 특정한 작가를 배제하거나(블랙리스트) 특정한 작가에게 특혜를 주는(화이트 리스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f4.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문학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세요.

( )

<부록 2> 전문가 심층면접

1. ○○○ 시인 심층면접(A)

■ (시집출간 계약방식) 내 시집을 출간했던 ○○○○은 전송권과 출판이 며칠까지 된다는 약속 조항이 있고 '사정에 따라 미룰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음. 비평(해설)이 늦게 들어와서 미뤄지긴 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음

■ ○○○○에서 책을 낸 사람들이 힘들어 함. 등단하자마자 구두계약으로 진행하는데 이후에 소식이 없었음. 시가 좋으면 생각보다 빨리 나오기도 하는데, 먼저 계약했는데도 줄줄이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음. 출판사가 원하면 계약 순서와 상관없이 빨리 내게 되니 반대로 출간 일자가 미뤄진 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탓하게 되고, 시간을 갉아먹게 됨. 즉, 구두계약 후 언젠가 내긴 내는데 정확한 서면 계약 일시와 출간 일정은 모름

■ 신인의 경우에는 등단작을 보고 데려가는데, 타 출판사 등에 뺏길까 봐 혈안이 되어있음. 등단 두세 달 만에 대형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신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승낙하게 되지만 정작 이후에 출간 일자, 시간, 편집 일정은 지켜지지 않음. 사람들이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우선 구두로 허락은 받고 책임은 지지 않음. 누군가의 시집이 빨리 발간되는 반면, 출판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밀린 다른 시인에게 '미뤄야겠다. 시집 더 좋게 내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인 입장에서는 이런 말에 대해 아무 말도 못 꺼냄. 선배 시인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암묵적인 압박이 들어있기 때문임. 이런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할 문제임.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

■ (독립출판) 독립출판의 열악함도 같이 알게 됨.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굴복할 수 없는 현실, 메이저에서 호명되기 바라는 모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호명되고 싶은 인정욕구가 존재함

■ (출판권 저작권 전송권) 이런 내용들은 계약서에서 한꺼번에 같이 씀. 가계약서 먼저 주고 확인하고 미뤄지면 시집 나올 때 다시 하게 됨. ○○○○에서는 ○○시스템을 가져와서 못지않게 해주려는 게 있음. 제대로 해주려는 노력은 있음

■ (최저 원고료) 내가 ○○○○에서 편집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출판사 상황이 열악함. 문예지 최저원고료 제도 때문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원고료를 올렸는데 만 원 올려서 시 한 편에 사만 원이었고, 이번에는 오만 원이 되었음. 점차적인 노력은 기울이고 있음. 열악하더라도 다 하고 있음. 글 쓰는 게 고결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 문학 엄숙주의가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그들임. 그것을 깨고 사람을 보면 시 한 편에 삼만 원이든 오만 원이든 폐지 줍는 거에 반해 내 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 이거라도 받자 하는 생각이 듬. 그런데 정당한 노동인데? 하는 생각도 듬. 여하튼 이상한 죄책감을 동반하는 것이 돈 이야기임. (이상한 분위기) 돈이 관계되면 물어보는 게 마치 천박하게 느껴지기도 함

■ (노조 및 단체활동의 필요성) 단체 활동은 이미 많이 하고 있음. 근데 권력화 싫어서 단체의 규모를 키우지 않음. 권력이라는 것의 속성은 권력을 싫어해도 권력이 생김. 이를테면 시인 ○○은 그 이름 그대로 권력이 되고 있음. 권력이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이 문제임.

여하튼, 권력이 생기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문화가 있음. 노조는 사실상 불가능함. ○○○의 이야기는 상식선을 넘어서고, 논리적 합당성도 없으며, 너무 이상적임. 사실 이상적 개념, 이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실현하고 사람의 마음도 생각해야 하는데. 이상과 현실은 다름. 이념과 실현이 다르고. 감정을 배제하면 아무것도 안 됨. 사람의 마음을 못 움직이면 안 됨

■ (청탁이 이루어지는 방식) 황당한 경우 많음. 전화해서 되는지 물어보고 허락을 하면 청탁서를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않고, 전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 와서 마감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함. 다섯 달 전에 '청탁받아 주세요'라고 구두로 말했을 뿐임. 원고료는 얼마인지 물어보기 힘든데, ○○○○이나 ○○는 한 편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음. 원고료 지급 날짜는 웹상에 게재된 다음이나 출간된 다음에 지급된다고 적혀 있는데, 대부분은 지급일이 안 적힌 경우가 많음. 원고료 지급이 늦어질 때는 단체 메일이라도 보내서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룸. 또한, 문예지 청탁에는 계약서가 없음. 청탁서가 계약서를 대신하는데, 계약서만큼 세밀하지 않음

■ (계약서에 저작권 관련 내용 게재 여부) 계약서 상에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음. 시집 뒤에 '이 시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와 출판사에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음. 전적으로 작가의 권리가 아니고 출판사에도 있다고 이야기함

■ (청탁을 위한 문인 DB의 필요성) 편집자도 사람이다 보니 결국 아는 사람에게 청탁하게 됨. 전화도 허락 받아야 하고. 무조건 만나 봐야 함. 이러다 보니 문단 활동이 중요해지게 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글만 보고 청탁하기에도 힘들다고 함. 인격을 모르는 채 글만 보고 지면에 실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임

■ (시 수정이나 원고 수정의 압박)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음. 특히 비평에서 그런 현상이 드러남. 계간지에서는 열띤 토론을 해야 하는데 제도, 환경, 사조에 대한 비판은 이루어지지만,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짐. 비평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고. 책임감 있게 말해야 함

■ (문학상/공모전) 심사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견제할 사람 두어야 함

■ (원고료) 초반에는 원고료 못 받고 책으로 받은 게 너무 많음. 신인 때 원고료 받은 적이 없고 대담 나가서 원고료 부쳐준다 했는데 받지 못함. 시 두 편에 7만 원인데 5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음

■ (기타) 처음엔 몰랐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메이저 호명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집 광고와 판매량 등등에 대해 점점 알게 됨. 강한 게 좋은 거구나, 저렇게 하면 편하구나. 계속 학습하게 됨. 바람이 있다면 미미한 것들이 짓밟히지 않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음

2. ○○○ 시인, ○○○ 소설가 심층면접(B, C)

■ (문예지 청탁과정) 여전히 작은 곳은 책으로 주거나 하는 등 원고료를 주지 않음. 이런 곳은 문인들끼리 공유해서 원고를 주지 않게 함. 원고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음. 청탁도 먼저 전화나 메시지로 진행되고 이후에 청탁서가 오게 됨. 청탁서에 원고료 금액이 안 적힌 경우도 많음. 요즘은 원고료 표시가 없으면 안 하기도 함(B)

■ (원고 청탁서 내용) 대형출판사도 청탁서에는 저작권, 출판권, 전송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2차로 홍보문구 등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음. 전자책도 안내해 줌(B)

■ (원고 청탁서 내용) 청탁서에 저작권, 출판권, 전송권에 대해 쓰여 있는 거 본 적 없음(C)

■ (원고료 지급 기한이나 책정 기준) 원칙적으로는 책이 출간되어 집에 책이 도착하는 날에 지급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들어오겠지.'하고 기다림. 받아야 할 원고료를 표로 정리해 놓음. 사실상 물어보기도 어려움(B)

■ (원고료 지급 기한이나 책정 기준) 소설은 60-100만원 정도인데 시보다는 큰 돈임. 기본적으로 문예지 지면이 많지 않음. 시는 발표 공간이 많아서 더 많이 발생함. 소설은 금액이 높아서 지면도 없고. 다루는 문예지도 많지 않음. 거의 대형 문예지에 국한됨. 따라서 소설은 원고료 지급은 잘 지켜지고 있음. 기다려달라고 한 적은 없음. 폐간할 정도로 영세한 작은 문예지였어도 그런 것들은 잘 지킴(C)

■ (원고료 지급 기한이나 책정 기준) 시집 출판도 구두계약으로 이뤄짐. 같이 커피 마시다가 '나중에 우리 쪽에서 내요.'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임. 이런 식으로 구두계약이 이루어질 뿐, 시집이 나오기 전까지도 계약서 안 쓰고 진행됨. 시인 입장에서는 시집이 진짜 나오기 전까지 너무 불안함. 진짜 여기서 나오는 건지 다른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됨. 다른 출판사를 알아보면 "다른 데서 내면 출판계에 소문이 돈다", "출판 관행도 모르고 별로다" 하고 비난을 함. 이런 현상은 ○○○○가 정말 심함. 작가를 묶어 놓고는. 내내 기다리게 만듦. 상대적으로 ○○는 그러지 않음. 첫 시집 나오는 요즘 시인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특히 두 번째 시집 계약할 때는 구두로만 진행하고 시집이 나온 이후에 계약서를 씀. 시집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고, 몇 년이 되기도 함. 원고를 보내도 아무 말 없음.(B)

■ (이상문학상 사태 및 문학상/공모전) 심사위원에 젊은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음. 권력이 적은 사람도 함께 포함되면 좋겠음(B)

■ (이상문학상 사태 및 문학상/공모전) 신춘문예 시즌이 되면 한 명이 예심을 돌려보고. '오늘은 여기 갔다 왔어' 라고 말하고 다님. 심사위원들이 시창작 수업도 하고. 예심도 보러 다니고 하는 게 문제임.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너 거기 보내. 보내면 내가 갈게"라고 이야기함. 그렇게 해서 본심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확인했음. 일단 창작 수업을 하는 사람은 심사위원에 제외해야 함. 심사위원이 대체로 공개되지만, 예심은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음(C)

■ (문학상/공모전 상금과 선인세) 선인세라는 건 상금이 아니라는 뜻임. 밀고 싶은 사람한테 준 다음에 상을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것임. 계약서를 그냥 투명하게 쓰면 됨. 나는 여기까지 제공할 수 있고, 작가님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음(B)

■ (문학상/공모전 상금과 선인세) 상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음. 댓글 중에 '출판사는 무슨 돈으로 상금을 주냐? 그들도 팔아먹어야 할 거 아니냐.'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럴 거면 상을 없애는 게 나음. 스타 작가를 만들어 거액의 청탁비용을 주고 몇 년간 사용하는 것임. 권위도 명예도 없는 상은 없어져야 함. 작가 개인이 스스로 PR할 수 있는 시대임. 예전의 이상문학상 권위 생각하는 독자와 지금의 독자는 다름. SNS 팔로워수에 따라 권위가 생기기도 하고 자기 PR에 따라 명예가 생겨남. 상이 필터를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문학상 수상작품이라고 해서 지금 1020세대가 읽지는 않음(C)

■ (창작자의 책임) 창작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꺼려하는 이유는 "나도 잘 되는 작가 축에 들고 싶은데 찍히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임. 괜히 이야기했다가 지면이 끊기고. 문의할 곳도 없으니 두려워 하는 것임(B)

■ (기타) 작가회의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관행적 답습 안에서 운영됨. 문단 내 성폭력 이후 그곳에 있던 사람이 가해자였음. 작가회의라는 단체를 결코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음. 지금 데뷔한 친구들이 신춘문예당선시집에서 자신의 시를 싣지 않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임. 그들과 함께 그루핑이나 게더링

이 되어서 무언가를 이룩하자 하기에는 선배와의 갭이 있으며, 폐해가 많음. 작가 노조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넣지 않겠다는 것도 연대를 이루고 있음. 목소리의 힘으로 연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음. 발언을 모으다 보면, 모아서 이런 기관에서,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음. 기존 단체가 아닌 새로운 단체는 필요함(B)

- (기타) 등단 비등단 상관없이 글을 유통하는 문학 웹 플랫폼은 등단 작가들의 플랫폼이라기보다 비등단 작가 플랫폼일 확률 높아짐. 등단 작가들은 메이저에 내고 싶어 하고 독립 플랫폼에는 올리고 싶어 하지 않음. 그렇지만 창구가 생기니 비등단 작가들이 많이 투고하고 있음. 이런 구조가 결국에는 출판사가 상업성을 띠게 하고, 쏠림 현상이 발생함. 소설은 지면이 너무나 부족하여 청탁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음. 한 문예지의 경우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미 청탁이 차 있음. 그런 상황인데도 투고 메일은 운영되며, 계속 투고는 받고 있음. 현실감이 없는 것임. 공정하게 뭔가 하는 거 같지만. 술자리에서 '내년 겨울호에서 하시죠.'식으로 진행됨.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에게는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불가능함. 그 해의 신인이나 주목받지 않은 작가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 일부 작가에게 지나치게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음(C)
- 독립문예지가 출현하고 있고, 작가들은 독립문예지와의 상생을 위해 적은 고료를 받으면서도 메이저와 마이너 경계 흩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음. ○○○○ △△△△상은 한 해에 나온 소설을 다 보고 평가하는데, 독립문예지에서 발표한 누군가의 소설이나 작은 문예지의 작품들을 과연 심사위원들이 볼 것인지 궁금함(C)
- 책 팔려고 ○○○○에서 밀어줬던 작가들이 있음. 관행적인 출판사와 작가와의 관계, 즉 어떤 출판사 표 작가라는 게 공고했던 시절이 있었음. 요즘은 좀 덜해지긴 했음. 그런데 여러 출판사를 돌아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상 거기서 거기임. 대형출판사 셋 다 똑같음. 대표, 편집자끼리도 친하고 왔다 갔다 함(C)
- 독립문학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상금 문제가 걸려 있음. 자본이 없는 게 제일 문제임. 독립문예지의 특성상 유통사를 끼지 않고 동네서점에 공급하고 있는데 아예 밸런스가 맞지 않음. 문예지 지원기금 신청 시 기존 출판사를 위주로 받고 있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됨. 독립문예지는 점점 사라지고. 모티프는 잠정 폐간됨. 돈 많은 출판사가 왜 기금을 타야 하는지, 심사하는 측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임(C)
- 유명 작가에는 명절 선물로 명품백을 주고, 신인들은 가장 작은 거로 와인 한 병임. 소설 팔리는 급대로 선물이 달라짐. 잘 팔리는 작가 다른 데 갈까 봐 돈으로 묶어 놓는 것임. 그런 작가들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음. 고소하면 개인이 드러나게 됨. 조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짐(C)
- ○○○ 활동을 통해 여성 시인들을 도와주고 있음. 작은 연대체가 모여서 하나씩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는 게 맞는 거 같음. 큰 움직임으로 뭔가 바꾸기보다. 목소리가 모여 큰 움직임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함. 작은 연대체가 활발해졌으면 좋겠음(C)
- (공공기관에 거는 기대) 문인 DB 아카이빙 작업이 필요함. 모 신인이 당선되어서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문학생태계를 아무도 모름.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소설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여기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이런 발표. 들러리 같은 사람이 되기 쉬움. 사라지는 작가의 존재를 알려주는 장치가 필요함. "요즘 누가 유명하냐? 걔? 싣자." 이런 식으로 청탁하지 말고 문인 DB가 있었으면 좋겠음. 작가별로 그간의 청탁 과정, 발표 면 확인할 수 있는 작가 아카이브를 만들고 이를 참고하여 청탁하면 좋겠음.(C) 작가 DB 만들어도 사용을 안 할 수 있으니, 청탁 시 활용하는 데에 강제성이 있었으면 좋겠음

(B)

- (공공기관에 거는 기대)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진이 두 개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음. 작가들의 불공정함을 이야기해도 공공사업이 아닌 이상 사업체에는 권고에 그칠 뿐임. 그러니 공공기관 웹진을 더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말한 게 정책으로 발현이 되어 써먹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함(C)
- (단체) 문단 내 성폭력 이후 단체에 대한 공포가 생겨남. 단체 안에서 좋은 일 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 가해자였음. 어떤 단체든 믿을 수가 없음(C)
- (단체)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정화하고 쇄신해서 잘 끌어나가겠다는 식이 아니라 갑자기 단체가 없어져 버림. 힘들게 만든 단체를 그냥 없애버리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음. 단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음. 그래도 단체는 있어야 함(B)
- (기타) 이해관계에 부딪힘. 노동자고 근로자인데 노조를 설립하는 순간 찍힘. 우리 두 사람을 부른 이유도 그동안의 발언과 사건이 있으므로 호명했을 것임. '계속 이야기만 하다가...' 나는 안티테제가 되었나보다. 밖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나도 메이저에서 책 내고 싶고 맨날 투고함. 내가 뭘 원하는지 혼란스러움(C)
- (기타) 출판사 권력이 너무 많음. 어떻게 약화할 수 있을지(B)
- (기타) 작가도 성찰해야 함. 완충재 역할을 하는 독립문예지에 더 발표하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기득권을 지향함. 지켜보는 선배가 있거나 기성작가가 도움 줘야 하는데 너무 자기 앞만 보고 있음. 아무리 독립문예지를 만들어도. 소수의 마니아에 치우치다가 결국 흩어지게 됨(C)
- (계약서)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수정을 요청함. 계약서 똑바로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에서 준비 중임. 구두나 사인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으니까 아예 배포를 해버리자는 것임. 올해의 활동은 그것을 많이 알리는 것임. 요청 메일을 거절하는 방법, 청탁을 무서워하며 받아들이고. 불공정한 건 승낙하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캠페인처럼 해버리면 불공정한 것들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지레 겁먹지 않을까 함(C)
- (기타) 돈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뺏는 것, 알아서 먹고살라는 건 자유가 아님. 오히려 문학이 고사하게 됨(B)
- (기타) 문학도 너무 많은 걸 공공기관에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음. 문학의 산업화는 어쩔 수 없고 작가들이 바꾸어야 함. 자생력 키우려면 출판사나 그의 시계에 놀아나지 말고. 청탁을 주지 않더라도 내 생산력을 보여주고 그럴 수 있는 연대체와 작가 정신이 필요함(C)
- (기타)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이걸 거부하더라도 작가로서 살 수 있는 삶이 있어야 함. 다른 삶이 없음. 어디에도 문학만으로 살 길이 없으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함. 그러나 자본이 없으면 불가능함(B)
- (기타) 그래서 더더욱 독립문예지에게 기금을 주어야 함. 문예지 지원기금 신청 자격 조항에 몇 년간의 유지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유지하는 문예지에 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음(C)
- (기타) 익명성이 보장되는 작가 소통 창구를 만든다면 좋겠음. 온라인 기반으로 허접한 하나의 창구라도 있으면 함(B)

3. ○○○ 평론가 심층면접 (D)

■ (원고 청탁 과정) ○○○○ 문예지에서 비아냥과 함께 원고가 반려된 일이 있었음. 신인일 때는 어이가 없는 일이었음

■ (청탁서 내용) 당시 청탁서에 원고료 안 적혀 있었음. 기한, 분량, 원고료 적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원고료는 안 적혀 있음. 최근에 바뀌는 추세이긴 함. 문예지 주관하는 사람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메이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정적 어려움 없는 경우라고 해도 원고료 물어보면 화를 내고. '우리를 못 믿냐.' '어차피 줄 건데' 식임. 이런 일들이 신인일 때는 매우 난감함. 요즘에는 원고료가 안 적혀 있으면 '원고료를 적어주세요'라고 적어서 보냄

■ (청탁서 내용) 청탁서에는'읽어보시고 해답을 주시길 바랍니다.'가 보통의 관례인데, 2017년에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음. 사실 '청탁과 주제를 보냅니다. 읽어보시고 숙고 후 3일 후에 연락을 주세요.'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함. 이마저도 4년 차에서야 듣게 되었음. 신인일 때는 그냥 청탁을 줄 테니까 하라는 식임. 신인인데도 대우를 해주는 ○○○○○는 참 좋은 사례임. 등단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맞는지 안 맞는지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함. 잘 맞지 않은 주제라서 청탁을 거절했다가 영영 안 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는 계속 원고청탁이 옴. 편집자라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함. '이 평론가는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작품을 했구나. 어울릴 것 같네.' 하는 생각으로 청탁을 넣어야 함. 이번에 ○○○에서 작품 해설이 왔는데, 받자마자 '아, 이래서 나한테 맡겼구나. 내 걸 읽어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음. 내 글을 읽어보고 적합할 것 같아서 청탁을 넣은 것임. 신인에게도 신경을 쓰고 읽고 나서 부탁하는 것임. 그러나, 이런 일은 대형 출판사니까 가능한 것은 아닐까 함. 편집장, 위원, 에디터 따로. 두세 명 이상의 편집인이 있으니 시간과 여유가 있는 것임

■ (원고료 지급 기한과 책정 기준) 대형 출판사나 공공기관 웹진 빼고는 청탁할 때 원고료 액수가 적혀있지 않음. 또한, 공부량에 비례해 고료가 많이 짬. 지급이 늦어질 땐 필진에게 '이런저런 상황으로 늦어집니다. 지급은 언제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대부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음

■ (원고료 지급 기한과 책정 기준) ○○ 문예지에서 겨울호 봄호 원고료가 아직도 안 들어왔기에 문의하자 '지원금 때문에 늦어집니다. 급하시면 먼저 입금해드리겠습니다.'이런 식으로 답변이 옴. 반면, 같은 상황이지만 ○○ 문예지의 경우에는 먼저 작가들에게 전체메일을 보냈음. 전체메일로 사정을 설명하고 입금이 되고 난 후에도 전체메일을 다시 보냄. 지원기금 영수증과 들어온 날짜까지 캡처해서 보여주었음. 작가 입장에서는 문예지 내부 사정이나 행정 체계를 모를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임

■ (이상문학상 사태와 공모전/문학상) 이상문학상은 워낙 말이 많이 나옴. 윤이형 작가가 정말 용기 있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권위있는 문학상 말고도 여러 가지 문학상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됨. 평론 문학상은 별로 없는데 시나 소설은 엄청 많음. 소위 상금 콜렉터인 사람들도 있음. 문학상에 특화된 글을 쓰는 것임. 물론 본인의 노력이 있겠지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님. 평론은 아예 이야기하기 어려움. 다만, 이상하게 상은 타는 사람이 탐. 쏠림 현상이 있음. 평론은 다른 장르보다 종잡을 수 없음. 상금, 선인세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하기 어려움

■ (불공정 사례) 평론이다 보니 글에 대한 간섭. 대표적인 게 문학선에 수록된 예시. 각 출판사에서 평론가 길들이기가 어느 정도 있음.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인데, 주례사 비평을 하라는 뜻

임. 문예지 신작 시에 관해.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질 때 솔직하게 썼는데, '이런 식으로 쓰지 마라'고 피드백이 옴. 60대 후반 선생님의 시를 평론한다는 것은 너무 난감했음. 결국 그 시는 가을호에 다른 분이 맡았음. 맡게 된 작품을 쓴 시인은 해당 문예지와 관련 있는 연배 있는 사람이었음. 더욱이 원고 청탁서에 원고료를 적어서 보내지 않았기에 물었더니 '추신, 원고료는 드려야 되겠지요? 1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라고 답이 옴. 영향력 있는 평론가라면 저렇게는 말하지 않았을 것임. 원래는 15매에 최소 10만 원. 간단한 리뷰 서평.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임. 원고지 30매를 원하고 12만 원은 매우 적은 것임. 시 다섯 편만 해석하는 거도 아니고 이전 작품도 봐야 비평을 쓸 수 있음. 해당 작가는 등단도 이 문예지에서 했고, 시집도 이 문예지에서 출간하였으며, 그 시인이 심지어 해당 문예지의 문예지부국장임. 연락 온 사람은 문예지랑은 상관없고 그 일만 맡은 사람이었음. '저한테 맡긴 이유가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물었더니 '◯◯◯ 선생님이 평론하는 제자들 번호를 알려 주셔서요.' 라고 이야기함. 알게 모르게 수혜자가 된 것임. 시스템이나 체계가 아니라 인맥으로 이뤄지는 청탁이었음. 작품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거나, 평론가 DB가 구축되었으면 이런 식으로 청탁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임. 결국 '저희도 박사님을 잘 모르고 청탁을 드린 거 같아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이것도 일종의 비아냥으로 들림. 이번 일로 인해 경험한 것은 압박감에 대한 것임. 내가 이런 글을 쓰기 때문에 절대 청탁이 오지 않는 매체가 있고. '내가 이런 글을 쓰니까 저쪽 출판사에선 싫어할 거야.' 하는 압박감이 있음. 대놓고 지적한 적은 없지만, 암암리에 존재함. 물론 이렇게 저렇게 고치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때도 있음

■ (불공정 사례) 길들이기를 당한 사례가 있었음. 모 문예지의 '이 시집 어땠어?'라는 기획이었는데, 익명으로 그해에 출간된 시집을 놓고 별점을 매겼음. 한 사람당 두 권씩 맡았으며 비판과 리뷰를 함께 실었음. 처음에 이 코너는 매우 좋았음. 그런데 두 권 중에 꼭 하나는 ◯◯ 문예지에서 출간한 시집을 해야 했음. 그런데 그쪽 주최 시집이 다 안 좋았음. 세번째 만난 시집은 연배 있고 낡고, 숙원 사업처럼 낸 시집이었는데 너무 별로였음. 이 시집을 꼼꼼히 읽고 별점 3개를 주었는데, 별이 하나가 늘어나 있었음. 또다른 사람이 매긴 별점도 늘어나 있었음. 초창기 논의 시 1년 맡아달라 했는데 1회차 남긴 상태에서 연락이나 안내도 없이 평론가 두 사람이 빠지게 됨

4. ◯◯◯ 시인 심층면접 (E)

■ (원고 청탁 과정) 청탁을 하면서 고압적으로 이야기함. 대뜸 '시 있죠? 급하게 연락했는데요. 바로 줄 수 있죠?'라고 이야기함. 자기를 아느냐고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말함. 이런 청탁 과정이 맞는지 틀린지 물어볼 데가 없음.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내성이 생겨서 '그런가보다. 그냥 여기는 이렇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됨. 그러나ㅣ, 내가 가만히 있어서 신인이 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듬. 가장 힘든 건 어디 물어볼 곳이 없다는 점임. 혼자 앓거나,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 동료 작가들을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그제야 다들 이야기를 하게 됨.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는 '왜 나에게만? 여성 작가라서?'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함

■ (원고 청탁 과정) 단어를 바꿔 달라고 말을 한 적 있음. 종합지에는 편집이 완료된 형태인 pdf로 파일을 줌. 제멋대로 정렬을 수정해서 책을 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편집된 상태에 대해 작가 확인이

나 연락 없이 그냥 인쇄를 해버림

■ (원고 청탁서의 내용) ○○○○, ○○○○ 원고청탁서에는 이 원고가 전자책에 들어간다고 쓰여 있는데 좋은 사례임. 그렇지만 아닐 때가 많음. 굉장히 모호한 것이 문예지임. 재수록도 마찬가지임. 분명한 청탁계약서는 독립출판 잡지에서 처음 경험함. 반면 체계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음. 책이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렸다가 혹은 실리는지도 몰랐는데 실리기도 함. 문예지마다 편차가 큼. 메이저 출판사는 전화로 충분한 설명해줌. 문자로 와 있거나 충분한 설명 이후 청탁서를 정식으로 보내줌

■ (원고료 지급 시기) 원고료가 1년 뒤에나 들어온 사례가 있는데, 청탁서 없었고 게재된 잡지도 오지 않았음. 짜증은 나지만, 언젠가 주겠지 하고 버티게 됨. 왜냐면 바닥이 좁아서 다 연결되어 있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음. 사실, 원고료를 받는 시기와 지급일을 적어준 곳은 딱 한 곳이었음. 7년 차가 되다 보니 이젠 감으로 언제쯤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됨. 책이 나오고 2주 뒤에 오겠지 이런 식임. 물론 메이저는 어기지 않지만, 작은 출판사는 기약이 없음. 늦게 준다고 해서 별도로 연락하는 경우는 없음. 며칠 전에도 4개월째 원고료를 안 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메모를 보내려고 마음먹은 날에 원고료가 들어옴. 사실 큰 돈도 아닌데. 적은 돈으로 사람을 전전긍긍하게 하는 게 불쾌함. 지원기금으로만 문예지가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이상함

■ (원고료 지급 기일) 지방지의 경우에는 '우리는 5만 원 밖에 못 줘요. 하실 수 있어요?'이런 식으로 청탁이 들어옴. 심지어 다른 작가 연락처를 물어보는 사례도 있음. 회사에서는 프리랜서한테 일 시킨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일 텐데, 작가 세계에서만 있는 일임. 창작자 입장에서는 단 하루도 어긴 적 없는 마감일인데, 왜 고료는 정확히 맞춰주지 않는지 모르겠음. 또한, 원고료 지급 시점을 문의한 이후의 일도 작가가 떠안게 됨. '백만 원, 천만 원도 아니고 십만 원 가지고 좀만 기다려주지. 문예지 어려운 거 알면서.' 이런 식의 반응이 올까봐 두려워서 말 못 하는 경우 많지 않을까 싶음

■ (원고료 지급 기일) 어쨌든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고료 지급일이 정확했으면 좋겠음. 신인들에게 매우 중요함. 최저 고료가 너무 적어서 살아갈 수 없는 정도임. 연봉이 415만원임. 2014년 10월에 데뷔했는데 3만원 짜리 원고청탁이 엄청 많음. 신인 특집이라고 하면 그걸 보고 청탁이 또 들어와서 거절할 수 없음.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신인은 노출이 되어야 하니, 불평등해도 일을 할 수밖에 없음. 누군가 위에서 바꾸어주어야 하는데. 아무리 말해봤자 안 바꿔주면 달라지는 게 없음. 문예지 아무도 안 읽음. 문예지에서 버티는 기간의 원고료 같은 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생계 때문에 회사 다니게 되고, 작품의 질이 떨어짐. 신인에게 있어서 고료는 생존의 문제임

■ (문학도서 출판) 인세는 잘 들어오고 있는데, 전자책 출판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이에 대해 질문하지도 않았음. 전자책 조항은 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곳도 있고 아닌 데도 있음. 전자책 판매 부수에 대해서는 보고를 들어본 적 없음. 물성이 없다 보니 파악 못 함

■ (지원금) 단 한 번도 작가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데, 문예지 지원금은 독립 출판하는 친구들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함. 비등단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함. 이들과 공존해야 나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음. 등단이라는 제도를 거치면 순응하게 됨. 같이 트여있고 젊은 사고 가진 사람들. 등단자들도 참여하고. 기존이 아니라 새로운 문예지에 투자해야 함

■ (문학도서 출판) 출판 계약은 보통 메이저와 했는데, 큰 불편함 없었음. 구두계약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음. 시는 구두계약이 많으나, 내 경우에는 없었음. 후배들이 구두계약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으니, 모두 서면계약을 해주셨으면 함. 아무래도 서면 계약을 하면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됨. 나는 서류 아니면 믿지 않음. 구두계약으로 묶여 있으면 투고도 못 하니, 출판사와 작가가 윈윈하려면 계약서를 쓰는 것

이 좋음

■ (문학도서 출판) 시집의 저작권은 나한테 있음. 그런데 계약서에는 갑인데 갑 같지 않음. 처음에는 이게 적은지 큰지 알 수도 없었음. 원고 청탁도 마찬가지임. 첫 청탁은 시 한 편에 오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서 칠만 원임. 처음엔 청탁이 오는 거 자체가 고맙고. 뭐라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었음. 작가들은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하루살이임. 청탁도 '시 당연히 있죠?' 식으로 고압적이고 위협적임. 결국, 시는 명예로만 생각하고 문학 외의 다른 직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음. 보이지 않는 길이기에 결국 강의를 해야 함. 또한, 장르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들이 지켜져야 함. 문학생태계와 문학판은 이대로 가다가는 더 좁아질 것임. SNS는 작가들에게는 양날의 검. 작품들이 잘려서 돌아다님. 시 열 편이 한꺼번에 올라오기도 함. 글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 함. 글을 쓸 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음

■ (작가노조) 작가노조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음. 누구라도 행동할 수 있을 텐데, 부당함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원래 이런 건가 하면서 4년이 흘렀음. 다들 혼자니까 비슷한 상황임.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함. 선배들이 가이드를 잡아서 후배들을 편하게 활동하도록 해줘야 함. 연대든 단체든 규격이 있어야 함. 노동법처럼 문학도 명확해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하나도 명확한 게 없음. 지금이라도 바뀐다면 좋겠음.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야 하는데 막상 시인들이랑 아무리 친해도 고료 이야기는 하지 않음. 서로 조심스럽기 때문임. 문학도 노동이니 노동의 대가가 있어야 글을 쓸 동기부여가 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는 한, 만나고 도모할 일도 없음. 실제적인 자본이 되는 플랫폼이 필요함

■ (기타) 고료가 밀릴 때 안내해주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음. 내가 그동안 가만히 있어서 고생하는 게 아닌지 겁도 나고. 시인으로 살아갈 수록 시가 주가 되지 못하고, 강의를 하고 산문을 쓰게 됨

05. ○○○ 평론가 심층면접(F)

■ (저작권위원회 소개)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는 오래되지는 않았으며, 지난 집행부에서 신설하였음. 작가들의 권익 측면 고려할 부분이 많아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짐. 다른 작가 협회들과 달리 권익 단체보다는 사회적 목소리, 문학 가치 확산과 같은 가치 연대를 목표로 함. 권익 보호는 후순위로 생각해왔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못 한 부분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함. 회원을 넘어 작가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조사를 실행할 계획임

■ (원고 청탁 과정) 글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활동 초기에는 단지 청탁이 왔다는 자체가 기쁘기에, 청탁서나 고료를 확인하기 어려움. 문학계 전통상 매문의 혐의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원고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물어보는 게 금기시됨. 글쓰기를 노동으로 보느냐 아닌가는 아직도 고민 중임. 다른 곳에서는 ARTIST FEE라고 해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비라고도 하고, 각각 논의가 활발함

■ (원고 청탁 과정) 편집위원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에,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잘 챙겨주고 공정하게 하고 싶은데, 원고료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함. 이럴 때 상호신뢰 관계가 필요함. 가령 원고가 펑크난 경우에도 문예지에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음. 따라서, 동료 집단이라는 인식이 필요함

■ (이상문학상 사태와 공모전/문학상) 문학상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 첫 번째로는 현상 공모로서 문예

지에서 상금 걸고 조건을 내거는 형태임. 이 경우에는 작가들이 조건을 사전에 살필 수 있음. 응모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 경우 작가들이 어느 정도 조건 파악 후 응모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적음. 상금을 걸고 상업적 이익을 수행하겠다는 역할이며, 작가들도 이에 동의 후 응모하는 것임. 반면, 이상문학상이나 김소월, 현대 등의 경우에는 기발표된 작품을 작가의 응모와 상관없이 평가함. 작가의 업적에 대한 보상에 대한 상으로 운영됨. 이 경우에는 상업성보다는 업적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문학상의 성격이므로, 상업성을 안 띠는 게 적합함. 그런데, 이상문학상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충돌한 사례임. 반사효과로 상업성을 가지게 되고. 상의 권위가 생기니까 받기 싫어도 받음. 또한, 심사위원과의 관계 및 문학계의 좌장 안에서 상의 권위를 벗어나기 어려움

■ (이상문학상 사태와 공모전/문학상) 작가회의의 분명한 입장 발표가 있었으며, 해시태그 운동이 전개됨. 불공정 저작권 양도는 원치 않는다는 작가들의 의견이 전반적 흐름임. 이제 다른 출판사도 감히 그런 조건을 내지 못할 것임. 문학상 제도가 상금과 권위에서만 본다면, 현상 공모 형태의 문학상은 상업성을 가지고 가는 게 맞고, 이상문학상과 같은 문학상은 업적에 대한 보상 측면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봄. 그러니, 굳이 저작권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봄

■ (2차 저작권) 2차 저작권 문제는 작가의 열악한 지위에서 비롯되었음. 대표적인 것이 매절 계약임. 특히 어린이 대상의 책과 전집류에서 매절 계약이 많음. 출판사에서 그 이후의 권리 자체를 가져가게 되는데, 작가 입장에서는 당장 열악한 지위에서는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임. 이런 매절 계약은 거의 법적인 단계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봄. 계약 자유의 원칙은 있지만, 법규에서 규정해야 함. 작가 성명이나 연대 차원에서 그런 출판사를 보이콧 하든가 해야 함. 물론, 매절 계약의 장점도 있음. 매절은 선인세 계약이라 돈이 먼저 지급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판단해야 할 수도 있음

■ (2차 저작권) 계약서 조항 너무 어렵고 복잡함. 계약서 전면에 핵심조항을 먼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협과 협조하거나 예술위 복지재단을 합쳐 하나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억울한 사태 예방해야 함. 2차 저작권, 계약 기간, 파생되는 핵심 권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체부 표준계약서 외의 것)

■ (불공정 사례) 불공정 계약은 다른 분들이 말해준 것처럼 2차 저작권 관련 사항이나 신춘문예 당선 수록 시집과 소설집, 올해의 문제 소설 이런 출판물들에서 추가 인세 안 주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봄. 계약 규정이 없으며, 계약 기간도 부재함. 작가 입장에서는 출판사가 영업이나 판매 시스템이 부족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대책이 없음. 전자책 문제는 공모전을 열어서 상을 주고 그 외에 욕심나는 작품을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형식으로 신인을 컨택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기출간 작품이 되어서 다른 데에 수록이나 응모를 못 하게 됨. 더욱이 출판사가 홍보도 안 하고 묻어두는 악질적인 사례도 있음. 따라서, 2차 저작권 문제는 문예지에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아닌 경우도 있어서 모든 과정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터넷에 시 작품들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많은데, 거의 시집 한 권이 다 올라온 경우도 있음. 이런 문제는 공적 부분에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싶음. 소설에는 공적 대응이 있는데 시는 아직까지 없음. 공공재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공적으로 보상해야 함

■ (작가 권익보호)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슈 대응을 위해 문학상에 관련한 부분과 청탁서 형식의 개선, 작가인식을 심어주려는 노력, 문예지와 작가 양방이 권익 지킬 수 있도록 계약서 양식을 개선하려고 함. 또한, 공공도서 대출권에 대한 실태조사 통해서 의견 수렴이 필요함.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함. 향후 더 이야기하겠지만, 출협과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음

■ (작가 권익보호) 작가 조합 형태를 생각하고 있음. 재원이 필요한 부분임. 커뮤니티 형식의 단체도 좋

음. 작가가 처음 데뷔 이후 한 번씩 모아서 권익을 교육하고 저작권 교육할 수 있으면 좋겠음. 원고료 문제는 동인일 때는 액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됨. 그것보다 선택권이 있고 공정한가의 문제임. 절대적으로 원고료 액수를 정하는 건 최저임금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됨. 노동의 문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함. 작가의 존재 양식이 많이 달라졌음. 변화의 시기임.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중요함. 젊은 작가들의 목소리가 나와서 많이 바뀌고 있음

06. ○○○ 시인 심층면접 (G)

■ (이상문학상 사태와 공모전/문학상) 이상문학상의 역사는 문학 권력이 약화되어 가는 과정과 일치함. 요즘 젊은 작가는 굳이 이상문학상이 아니어도 되며, 충분히 다른 것을 통해서도 가능함. 문학상이라는 타이틀이 아니어도 SNS 등 독자와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려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체재를 유지하려는 이상문학상이 문제임. 우수상 작품의 저작권을 양보하라는 것에 대한 김금희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 ○○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음. 다른 창작집에 작품을 싣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됨. 이상문학상 수상작은 자기도 애착이 가는 좋은 작품임. 근데 마땅한 대가도 없이 다른 곳에 쓸 수 없다는 것임. 이런 것들이 상충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이 자기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한 것임. 저작권법상에도 이런 것은 위배됨. 위임한 경우에는 저작권협회가 우선 순위임. 저작권에 관한 강한 적용이 필요함. 출판사가 오판한 것임.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개선책도 저작권법 위반임. 저작권자에게 우선 물어야 하며, 양도 안 한다고 뽑지 않으면 심사라고 할 수 없음. 이상문학상의 권위와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겉으로 말한 것과 달리 순전히 장사를 위한 행동임. 제동 장치가 필요함. 책 판매가 상금을 웃돌면 그때부터 인세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상금은 별도로 간주해야 하며, 선인세처럼 말하면 안 됨. 모든 문학상이 마찬가지임. 상금은 상금이고, 계약할 때는 별도의 인세로 계약해야 함. 어디에도 상금이 인세의 일부라고 밝힌 곳이 없음. 밝혔다면 정상이겠지만. 광고나 공지나 어디에도 없음. 이 두 가지가 문제임. 둘 다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음. 대안도 위반인데 후속 조치가 없음. 이상문학상으로 불거졌지만, 출판사 운영하는 곳들은 대부분 앞으로는 힘들어질 것임. 개선방법은 간단함. 상금은 상금, 인세는 인세. 상을 줬다고 출판에 동의한 것이 아님. 상금은 받은 거고. 출판 행위는 비로소 계약을 맺으면서 하는 것임. 선인세면 처음부터 선인세라 하든가 해야 함. 그간 서로 묵인했는데 작가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시작한 것임. 당연한 권리이며 출판사의 잘못에 의한 착취 행위임

■ (원고청탁서) 예술위 원고청탁서에 보면 최소한의 원고료를 지급하게 만들어 두었으며, 이를 보고하게 함. 지원금을 받으면 같은 포맷의 청탁계약서를 사용하게 됨. 3만 원을 줬던 곳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계약서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고, 원고를 싣는 것마저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함. 정기구독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원고료를 지급해야 함. 그동안 정기구독으로 원고료를 대체하게 그렇게 유도해 왔는데, 나한테도 그런다면 다른 사람은 더욱 압력으로 느낄 거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 이후로 소문나서 아무도 내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음. 지원을 받기 위해 원칙대로 시행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민간 영역의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좋은 사례임

■ (출판계약서) 표준계약서는 현재 여러 종이 쓰이고 있음. 출판사별 계약서는 출판사의 권위를 이야기함. 누가 됐든 그 계약서에 사인하게 됨. 그러나, 출판권 설정 계약서에 2차 저작권은 해당이 되지 않는데,

다 그렇게 뒤에 슬쩍 넣어서 포함시키고 있음. 그렇다면 계약서 이름이 출판권이 아니라 저작권이어야 함. 저작권을 넘겨받으려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에이전시나 중개사가 있어야 함. 그런 자격이 있거나. 이런 인력을 갖춰야 2차 저작권 위임받을 수 있음. 등록도 안 되어있고 에이전시 역할도 할 수 없는데 넘기라고 하는 것은 다 불법임. 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 ◯◯는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음. 2차 저작권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위임받아야 정상임. 따라서 현재 쓰이고 있는 표준계약서도 저작권자에게 불리함. 출판사마다 다를 게 아니라 타입에 맞춰서, 각 형태에 맞춰서 계약해야 함. 현행처럼 표준계약서 7종이면 안 됨. 전자책 등 다양한 출판 유형에 맞춰야 함. 이는 애초에 불평등하게 계약을 하게 만드는 조건으로서 작가의 기본권을 위배함

■ (구두 계약) 구두계약은 작가 자신이 안 하면 됨. 법적인 권리 실현되려면 구두는 아무 소용이 없음. 계약 성립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마저 무효가 됨. 저작권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됨. 저쪽에서 무시하듯 나도 무시하면 됨. 어떤 의미에서는 메이저에서 책을 내보고 싶은 저작권자의 욕구가 문제임. 이건 계약이나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문제임. 작품에는 시효가 있음. 출판사가 출판일자를 미루다가 작품이 이미 헌 거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

■ (매절 계약) 구름빵 사건은 지금 보면 출판사가 잘못한 것임. 저작권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려는 지금으로 보면 그러함. 애초에 구름빵이 나왔을 무렵으로 가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관습이었고, 당시에는 다 매절이었음. 뜨고 나서 생각해보니 당했다고 볼 순 없지만, 작가와 출판사 둘의 해석이 다름. 계약서에 다 나온 것을 작가가 사인했는데, 그때 따졌어야 함. 이것이 당시의 관습이었겠지만, 지금은 바꿔야 함. 이번 건으로는 어렵겠지만, 2차 저작권에 대한 해석으로는 다시 재판해서 이길 만함. 지금도 매절 계약하는 곳들이 있는데, 작가들이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관철하고 출판사도 정당한 대가도 지급해야 함

■ (인세 할인율) 아동문학의 경우 불공정 관행으로는 할인율의 변화를 들 수 있음. 작가들이 인세 잘 받으면 10%, 8% 등등인데, 납품할 때 공급률이 원래 60인데 50으로 내려오면 작가한테도 당신도 인세를 깎으라고 요구함. 공급률을 정한 건 출판사이고, 판매 조건이나 마케팅은 저작권자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임. 서로 상의해서 이야기해 볼 수는 있지만, 거절해야 정상임. 관습처럼 모든 출판사가 깎고 강제하는 건 착취라는 생각을 해야 함.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공급률을 낮춰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온라인 서점에서는 해당 도서를 마케팅하고, 더 많이 노출하니 더 팔리는 현상은 평등에도 위배됨. 장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작가나 출판사가 가져야 할 평등한 권리를 위반하는 것임. 이는 상술로서 정상적인 공정 거래가 아님.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통해 누군가를 이득 보게 하고 누군가를 손해 보게 하고. 유리한 쪽만 선택하게 되며 시장이 왜곡됨

■ (작가 단체) 단체는 굉장히 어려움. 왜냐면 노조를 만들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단이 강력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달려 있음. 권력의 문제임. 대중적 인지도나 장악력이 높은 작가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음. 그런 작가들은 '출판사 옮길 거야' 이렇게 한 마디만 하면 출판사들이 말을 들음. 지금의 구조로 권력자들은 피해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은 공론화가 필요하고, 공개를 해버려야 함. 일반 시민과 독자도 뛰어들게 해야 함. 계속 작가가 불리하고 손해 보는 사람도 생기고, 결합한 사람들 책은 안 내주고, 배제하게 됨. 이런 현상은 어떤 압력 단체를 구성해도 해결이 안 됨. 누군가는 손해 보고. 장기적으로도 쉽게 해결이 안 됨. 출판사를 선으로 해석하면 안 됨. 출판사는 이익을 위한 이익집단인데 공익성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이상함. 출판사는 마케팅하는 곳인데 공정한 걸 들이대려면, 나머지 유통 구조도 모두 공정해야 함. 자본주의 사회 아래에서 불가능함. 선한 의지에 맡

겨서는 안 됨. 정말 공론화해서 공공의 질서가 개입해 움직이도록 해야 함

■ (외국 출판 사례) 외국에서는 편집자 권위가 높음. 작가도 출판사도 모두 편집자 중심이며, 이것이 정상적인 구조임. 단순하게 작가와 출판사만 있는 게 아니라 편집자가 있고 같이 결합해 작가를 도와주고. 장기적 기획으로 출판사가 만들고. 좋은 책이란 게 작가의 뛰어난 재능뿐만이 아니라 좋은 기획과 마케터의 방향성. 공동의 작업을 통해 책이 생산되어야 함. 아무리 좋은 작가라도 아무도 안 보는 거 쓰면 의미 없음. 국내에서는 출판사가 그런 편집자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작가의 권위나 권력이 더 강하고, 작가들이 말을 안 듣게 됨. 교정 교열도 내가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함. 최근에 ○○○○에서 시집을 내는데, ○○○ 편집장이 제목을 정해도 문제 안 생김. 투덜거리지 않음. 피드백도 주고 받음. 관계의 문제이지, 권력이나 권위의 문제가 아님. 권력의 불균등함으로 인해 삐걱거릴 때마다 생기는 문제임

■ (메이저 출판) 메이저로 가고픈 욕망은 유통 구조의 문제이기도 함. ○○○○ 시선집에 들었다고 다 좋은 책 아니고 ○○에 있다고 다 좋은 거 아님. 서로 인정하면 됨. 별도의 시선집 냈는데 괜찮다고 인정하면 됨.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파급력, 마케팅력, 인정 제도 포함해서 폭력적인 유통의 관례가 발생함. 돌이켜보면 내 경우도 ○○○○에서 첫 시집을 냈는데 시리즈 없어졌고, ○○에서도 냈는데 거기는 살아있음. 세 번째로 ○○○○에서 냈는데 시리즈가 없어졌으며, 이후에 별도의 시선집 만들었는데 내가 보기에 별로임. 떠버린 시집이 되었음. 돌이키면 그래도 메이저에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린 시집이 되었음. 이런 걸 빈번하게 겪은 누군가가 있다면 권력과 상관없이 내 시집이 살아있길 바라기 때문에 대형 출판사에서 내고 싶은 것임. 당연한 욕망임

■ (문학 생태계)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는 생태계. 죽어가고 자라나는 게 공존할 수 있는 게 생태계. 노후화된 게 전부를 장악한다면 생태계가 아님. 신규 출판사가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는 정책적 밑받침이 필요함. 균일한 공공성 작용해야 함. 시장 논리에 맡겨두면 새로운 건 시장에 진입할 수 없음. 새로운 씨앗들이 활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함. 새로운 무언가가 없다는 건 그 사회가 새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이며, 새로운 상상력을 갖출 수 있는 영역임. 나머지는 변화 발전 답습하더라도 예술의 미션 자체는 새로워야 함. 내가 빵을 못 먹더라도 더 큰 빵을 줄 수 있는 최초의 싹이 되어야 함

■ (출판생태계의 문제점) 출판 쪽에 보면 출판 산업이 위기라고 하는데, 정작 웹툰이나 웹소설은 통계로 안 잡히고 콘텐츠로 잡히고 있음. 출판 산업이 넓혀진 영역인데도 이쪽으로 편입을 안 시키고 있음. 고지식하게 좁게 보니까 고사하는 것임. 새로운 신규 독자는 웹소설을 선택하고 있으며, 전자책도 고루하다고 보지 않음. 웹툰과 웹소설을 인정해야 함. 그런 독자들과 그 독자들의 불건강성을 끊임없이 견인해야 함. 독자를 가르치고 키워서 넓혀야 함. 매체만 다를 뿐이니, 그들이 종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시선을 옮겨야 하고, 그 독자들의 수준을 올려서 시장을 넓혀야지 배제하면 안 됨. 문학도 마찬가지임

■ (불공정 관행과 공론화) 욕망의 실현은 개별적임. 덩어리로 실현되지 않음. 공론화하는 게 중요함. 공론화의 장으로 해서 공적인 논의, 공동선을 펼쳐놓게 하는 것. 가령 미투도 공론화함으로써 사회가 달라지고 있음. 남성 지배, 폭력이 일상화된 시절에 그것을 통해 배운 남성은 자신의 폭력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깨짐. 개별적으로 두면 불가능한 일임. 개인적으로 감방 갔다 오면 그만인 것과도 다름. 사회 전체가 이야기해야 함. 세계적으로 만연하던 문제였지만, 그것이 잘못됐으니 개선하자는 목소리와 운동으로 인해 격변의 순간을 맞이하게 됨. 따라서, 각각의 욕망을 다양한 방식으로 들여다 보

아야 함. 시기, 크기, 남녀, 법 등등 공론화해서 보고 걸러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함. 공론화하여 계속 부딪히고 폭력적 해결을 하게 됨. 법으로 끌고 가도 강자가 이득을 보게 되고, 이기는 사람은 정해져 있음. 약자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공론화를 통한 점검임

■ (실태조사의 맹점) 실태조사 대상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응했을 때의 퍼센테이지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응했을 때의 값이 똑같은데 그건 잘못된 것임.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의 가중치가 있어야 함. 전혀 모르는 사람의 엉뚱한 의견을 조심해야 함.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안 풀리게 됨. 문제의 초점이 없는 쪽에 던지고 해답을 얻으면 맞지 않는 답이 나옴. 따라서, 실태조사를 기계적으로 해선 안 됨. 이런 문제가 객관화되는 현장이 없음. 공청회 세미나는 폐쇄적임. 이런 작업을 통해 계속 공론화하는 건 중요함

7. ○○○ 소설가 심층면접 (H)

■ (원고 청탁 과정) 직접 겪은 건 많지 않은데, 지면과 기회 배분이 공평하지 않음. 신춘문예 당선자는 당선된 해에 ○○○○ 4월호에 두 번째 작품을 내서 평가받는 관행이 있는데, 이 작품을 평론가와 선배 문인들이 주목하고 이 중 한두 편을 호명하고 호평하면 살아남는 것임. 만약 여기에 내는 작품을 못 쓰면 끝임. 15년 차의 등단 동기 중에 거기 발표가 마지막이 된 사람이 있음. 그저 ○○○○이라는 하나의 문예지인데 마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은 암묵적 관행이 있음. 그 지면조차 모든 신춘문예 당선자가 아니라 중앙 일간지 중에 골라서 진행되며, 살벌한 걸러내기 과정이 됨. 좋지 않은 관행이라 없애려고 했는데, 당선자들이 원해서 계속하고 있다고 함

■ (원고 청탁 과정) 소설은 불공평이 심함. 소설은 빈익빈 부익부 자본주의 양극화 현상으로, 지극히 소수의 작가가 문예지 지면 독식하고 있음. 청탁권을 가진 편집위원들이 친맥, 인맥, 학벌로 연결된 사람에게만 청탁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냥 좋아서 한 거라고 이야기함. 서로 호명하고 추천사 쓰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닌데, 친분과 청탁권의 결탁이 아주 빈번함. 심하면 이게 문학상까지 가게 됨. 친구 작품이 예심에서 올라오면 참가를 안 해야 하는데, 그냥 들어가서 심사함. 청탁을 전혀 못 받고 소외당하는 작가가 많은데 실력이 떨어진다고 증명이 안 됨. 그러니까 신인 작가들이 새 플랫폼, 메일링 서비스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

■ (원고 청탁 과정) 장르문학이나 청소년 등의 출신은 리뷰나 호명에서 차별을 받게 됨. 출신 성분이나 데뷔 작품에 따라 아예 취급을 안 하거나 적극적으로 배제당함. 그래서 재등단이나 문학상에 공모하게 됨. 또한, 쉽고 상업성이 있는 작가에게만 청탁이 진행되며 처음 몇 번의 기회를 보고 판단되는 것도 문제임

■ (원고 청탁서 내용) 소설 쪽은 시보다는 잘 되어 있는 편임. 원고 내용 매수 마감일 원고료. 단, 지급일자가 없는 경우가 90%에 달함. 문예지 전자책 제작이 많은데, 이 경우 출판 수익에 대한 안내는 없었음. 딱 한 번 봤는데, '해당 원고가 개별적으로 전송되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별도의 금액을 지급한다.' 정도로 모호함. 추후 인세 지급이나 내역 안내는 없었음. 청탁서에 원고료에 일부를 떼서 정기구독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답하지 않으면 떼어가고 원하지 않으면 회신해야 함.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런 경우 두 번 있었음

■ (원고료 지급 기한과 책정 기준) 원고료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왕왕 있음. 청탁서에서부터 늦어진다고 양해해달라는 때도 있었고 대형출판사가 아닌 곳은 자주 있음. 앤솔러지를 내는 영세한 출판사에서 단편 하나로 참여하는데 35만원을 받은 적도 있었음. 한번은 원고 80매 한 매당 5천 원이었는데 올려주겠다 해서 70만 원을 받기도 했는데, 다른 작가들도 올려 줬는지는 모르겠음. 한 매당 만 원은 되어야 함. 연재한 동료는 중견작가. 출판사가 협박해서 연재 원고료 일부를 떼어먹히기도 했음

■ (이상문학상 사태와 공모전/문학상) 상금하고 따로 인세를 받아 본 적이 없음. 워낙 작품집은 1쇄를 넘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2쇄를 찍어도 안 주기도 함. 대체로 선인세 개념이고 잘 팔려도 추가 인세 받은 적 없고 계약서를 쓰거나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음. 후보일 때 재수록 매절로 한 번 2, 30만원 받기도 했음. 작품집 여러 쇄 찍어도 추가 인세 받았다는 소리 못 들어봄. 추가 수익 및 판매 여부를 알 수가 없음. 문학상에 관한 작가 결정권이 없음. 후보에 오르면 그 상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알 수 없음.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자기 권위를 의심하는 거냐 하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음

■ (문학상 수상과 저작권) 수상 작품의 저작권 관련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없었음. 아예 언급이 없음. 이상문학상의 경우 수상 통보 직후에 저작권 양도 문서에 서명하라고 하니, 생각하거나 따져볼 상태가 아님. 이어서 장편 단편 계약하자는 때에도 그러함. 축하한다고 밥 먹는 자리에서 다음 책의 계약을 강요당함. 상을 주최한 곳은 모두 사설 단체였음

■ (문학 단행본 출간)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2차 저작권, 인세, 출판권, 전송권 등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들은 적은 없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음. 대형출판사는 계약서에 모두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작가들이 자세히 보는 경우 많지 않고 모르는 채 서명하곤 함. 편집부 직원을 만나 식사한 다음 시간이 많지 않을 때 서명하는 경우가 많음. 사실상 검토할 시간이 없음

■ (문학 단행본 출간) 신인일 때, 신인을 묶어 놓으려고 출판사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앞다퉈 계약을 진행함. 연락이 와서 밥이나 먹자 해서 나갔는데 2차로 술을 마시고 3차로 노래방 가서 계약서 꺼냄. 위계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신인들이 거절하기는 어려움. 계약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일 때문에 출판사 갔다가 계약하는 경우도 흔함. 계약해야 자리가 파함. 계약은 편집자의 임무라서 계약 성사가 편집자의 역량이라 혼나고 쪼일까 봐 어지간하면 하게 됨

■ (2차 저작권) 2차 저작권은 계약서에 두루뭉술한 언어로 포함되어 있음. 2차 저작권에 대해 따로 계약서를 쓴 경우 없음. ebook 연극 영화 해외 다 똑같음. 계약서 하나에 뭉뚱그려있음. 매체가 다양하고 다변화하여 2차 저작권에 포함되는 수익이 전에는 없던 형태로 생기는 경우가 발생함. 문장의 사용, 캐릭터 뽑아내기, 다른 형태의 웹 콘텐츠 등등 새로운 것들이 시도되고 있음. 따라서, 먼저 쓴 계약서 이외에 따로 계약하고 수익 배분, 배분 비율, 지급 시기 등의 이야기가 필요한데 이런 사례는 거의 없음. 2차 저작권은 여러 항목 중 한 항목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계약서 내용 외에 발생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음. 정산할 때 액수만 찍히지 내용을 알 수 없음. 무엇으로 왜 등등. 내역서도 없고. 입금만 돼서 들어온 사실조차 모를 때가 있음

■ (인세 정산) 종이책으로도 내고 전자책으로도 여러 권 출간했는데, 전자책 인세를 정상 고지받은 건 딱 한 군데임. 인세는 중쇄를 찍을 때나 일 년에 한 번 지급함. 항목별 내용 없이 총액만 통보되니, 작가가 판매내역을 알기 힘듦. 일 년에 한 번만 줘도 좋은 사례이고, 2, 3년에 한 번 통보받거나. 책을 내고 아무에게도 못 듣고 인세도 못 받은 사례가 대다수임.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도 안 알려줘서 작가가 먼저 물어야 들을 수 있음. 출판사 직원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인세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사업

을 한다든가, 부동산을 산다든가 하는 출판사 내부 사정이라고 함.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니까 며칠 전 5년 전에 받아야 할 인세를 뒤늦게 정산받았음

■ (불공정 사례) 가장 많이 들은 것은 심사와 관련한 불공정임.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아는 사람이 심사할 때 기피 체크를 하도록 하지만, 소용이 없음. 체크를 안 하면 그만임. 심사위원이 겹치고, 권력은 그 심사위원에게 집중이 되고. 똑같은 작품이 그 심사자 때문에 기회를 잃게 됨. 대부분 제자들이기 때문에 강의하지 않는 자로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응모자가 피하기엔 정보가 없음. 심사위원 풀을 구성할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함. 심사위원 성비 불균형도 문제임. 나이가 아무리 경력 있는 여성 작가여도 많은 수를 차지한 남자 심사위원의 목소리가 더 영향력이 있으며, 마지막에 슥 뒤집어 엎어버리는 경우도 있음. 성폭력 가해자한테 상이 가는 것도 그런 심사위원 때문임. 문예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신춘문예의 경우에는 심사받는 작품이 내 제자라고 거리낌 없이 말하기도 함

■ (기회의 불공평) 소설은 특히 같은 출판사에 책을 내도 밀어주는 작가와 신경 안 쓰는 작가 사이 차이에서 SNS 홍보, 편집자 홍보 등의 수준 차이가 큼. 책이 출간이 되어도 단 한 번의 취재도 홍보도 없는 작가도 있음. 자본주의 양극화라 뭐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회의 불균형이 존재함. 인기작가의 스케줄에 출판사가 맞추느라 비인기 작가 출간을 한없이 미루거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음. 모든 게 다 인기작가 위주로 이루어짐

■ 비인기 작가의 경우 불공정한 일을 당하고 있으나 지급 시한 지연도 말을 못 꺼냄. 회사가 열심히 키우든지 아니든지 마케팅은 작가의 권한이 없는 영역임. 신인 작가는 목소리가 약하고 불이익을 바로 받고, 목소리를 내면 바로 고립되어 청탁이 끊기게 됨. 인기작가가 되면 극진한 대접을 받아서 더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출판사가 밀어줬던 게 있으니 나는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함. 인기작가나 비인기작가나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아무도 비판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됨. 작가들이 불공정에 동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포섭됨.

■ 시는 원고료가 적어서 생계유지가 힘듦. 소설은 분량과 원고료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 소설을 한 계절에 여러 편 쓰면 먹고살 수는 있음. 그러다 보니 출판사에 의지하는 지점이 많아짐. 전업이 되고 나면 문예지, 문단 구조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움. 당장 생계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임

■ 문학계 가해자 복귀 문화는 ○○가 다 만들었음. 표절 사태 복귀에 대한 기사를 대놓고 자기 문예지에 싣고 그걸 덮어버림. 그게 문제였다고 말하는 작가나 저자는 없고 독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음. 오직 책의 판매 부수, 마케팅, 인기작가에게만 관심이 가는 시대임. 그러다 보니 성폭력에도 표절에도 관심 없고. 문제 제기를 잘 할 수 없고 누군가 문제 제기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일반적이게 됨

8. ○○○ 소설가 심층면접 (I)

■ (대한민국예술원 불공정 사례) 한정된 예산을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100명 중 문학분야가 20명인데, 종신제이고 매월 연금을 수혜하고 있음. 예술 원로에 대한 우대는 좋지만, 예술원 회원들 대부분 대학교수를 했던 사람들로서 이미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연금을 주는 격임. 정말 생활이 궁핍하거나 예술인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예술에 삶을 바쳤던 분들에 대한 예우의 형식이 아니라 뭔가 회원의 입회 자격부터 잘못되어 있음. 말하자면 전업 예술인들을 위한 제도였으면 좋겠음. 예술원의 모습을 보면서 기존의 젊은 예술가 분들이나 기존의 동료 예술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됨. 국가 행정이 잘못 작동되고 있다는 느낌이 듬

■ ○○○ 선생뿐만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음. 한국의 예술원은 제도, 입회 자격, 운영 등이 전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 예술원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도와 운영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 ○○○ 들어간 다음 ○○○이 들어가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의 문제가 있음. 한 명이라도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관계임. ○○○ 안 되고. 평생을 예술가로 살아온 분들은 입회 자격이 없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음. 예술원 회원 자격에서 평론가는 학술원으로 가야 하고, 대학교수직 또는 공무원을 해서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을 갈 필요가 없음. 예술 예산 분배의 문제 정의롭지 못한 지점임

■ (지자체 예산 배분의 불공정 사례)지자체마다 문학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도 분배의 문제가 발생함. 각 지자체의 예산들이 정말 불필요한 곳에 많이 지출되어서 개개인 예술가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들이 예술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음. 광주의 경우 문학 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1년에 2억 5천만원임. 단체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단체들이 지원하면서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요청함. 그런데, 10건을 내면 8건이 시낭송회이고, 1회 시낭송회 하면서 4천만원을 지원받음. 이건 시 원고료가 아니고, 공연에 가수 부르고 밥 먹고 장소 대여하는 비용임. 이런 예산을 젊고 어려운 문인을 키우고 지원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심사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됨. 단체 중복해서 가입된 문인도 많고, 각 단체의 친목 도모를 위해 쓰이고 있음. 제도의 이반과 변형이 발생하고 있음. 심사위원들이 계속 항의하여 예산을 깎았더니 단체에서 시위하고 시의원에게 압력을 넣고 이어서 괴롭힘. 대부분 의원과 결탁한 단체의 영향력 아래 자유롭지 못함. 문학 예산 이 친목 도모 행사에 쓰이는 현실은 매우 참담함. 이걸 신인, 젊은 문인에게 쓸 수 있다면 좋겠음

■ (출판사의 불공정 사례)물론 출판사도 불공정 사례 많음. 다만 작가-출판사의 대립 구도보다도 국가가 작가에게 끼치는 불공정 관행 및 문학을 등한시하는 제도들을 깨고 나야 출판사도 그 뒤를 따를 수 있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음. 예를 들어 교과서 보상금의 경우, 작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데 이것이 공익적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교과서 보상금이 2만원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 한 예술가의 저작권을 가지고 가면서 그 저작권을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음

■ 예술가들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게 자존심의 문제나 예술가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시대는 아니고. IT 발전을 위해 기초과학에 예산 지원하듯. 문학도 똑같음. 그런데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되는 게 문제임. 정부에서 예술위 등을 통해 많이 지원하지만, 굉장히 일부분이고 면피 수준임. 정부에서 저작권이나 혹은 이런 문제에 힘을 쓰고 있지 않으며, 이런 일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천함

■ 1999년에 등단하여, 이제 등단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당시에 소설 한 편 원고지 장당 8,000원에서 10,000원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수준임. 좀 잘 나가는 출판사 단편 하나에 150만 원. 노무현 정권에는 작가의 어려움을 알고 예술위에서 원고료 지원 정책을 폈었음. 자본의 영역으로 두면 출판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출판사도 적자 상태이고, 원고료를 일반 물가 상승률만큼 올린다는 건 출판사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임. 그런 것은 작가도 원하지 않으니, 같이 살 방법이 필요함. 그러나 작가는 열악하니 정부에서 보존하는 정책을 썼으면 함. 분기별로 지정해서 우수 문예 작품 선정해서 많이 뽑고 그 분기 소설, 시 작품 대상으로 50% 이상 선정해서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하면 좋겠음

■ 문예지 지원 기금. 원고료 지원으로 가고는 있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출판사 지원이라고 보여짐. 이건 출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임. 반값등록금 정책처럼 원고료 차원에서부터 개입이 들어가 줘야 함. 99년 8천 원 하던 책이 지금 13500원인데, 그 이상은 못 올리는 게 현실임. 출판사들의 한계와 보폭이 뻔하다는 것은 작가들도 알고 있기에 원고료 인상을 말할 수 없음. 이 문제의 핵심에 정부가 있음. 정부의 예산 확보를 통해 출판사와 작가 혹은 작가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함. 불공정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님. 작가들도 이야기하려면 정부에서 본을 보이고 예산을 확보해야 함

■ (2차 저작권) 분명히 계약서에 2차 저작권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사실은 나같이 경력이 된 작가도 무슨 말인지 모름. 특히나 중요한 건 2차 저작권 문제를 제기했을 때, 1차 저작권 문제까지도 계약이 안 될 것 같은 압박. 그러다 보니 2차 저작권만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움. 미래에 발생할지 아닐지 모를 저작권 때문에 당장 책 계약을 놓치긴 싫은 것임. 1차 저작권 문제 인세 10%는 누구든 알지만, 2차 저작권은 통용과 상식이 없음. 영화 판권이 팔리면 출판사와 내가 어떻게 나누는지, 전자책은 어떤지. 통일된 혹은 평균화된 숫자 개념이 우리에겐 없음. 표준계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것들이 상식화되려면 꽤 오랜 기간이 필요할 텐데, 주요 출판사라도 통일되었으면 좋겠음. 통일된 규정과 계약이 있었으면 함. 다만 에이전시 있는 작가 등 복잡해지고 있는데, 2차 저작권에 대한 통일된 계약서를 주요 출판사에서 먼저 만들고. 출판계에서 먼저 통일된 규칙을 선행해서 한다면 작가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음

■ (2차 저작권) 출판사마다 달라서 작가에게 혼란을 주는 지점도 있음. 영화 판권, 협상 시 작가마다 다름. 이로 인해서 2차 저작권의 배분 비율도 달라짐. 공용되는 정보와 기준선. 기준선이 없음. 어느 출판사에서는 7:3하고 다른 출판사에서 9:1 했다 하면 불공정처럼 보임. 이런 걸 정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하나도 없음. 2000년대 초반까지 2차 저작권은 부수적인 것이었지만, 이제는 중요해진 문제가 되었는데 그에 따른 제반여건이 못 따라오고 있는 것임. 원고료니 책값이니 하는 것과 함께 2차 저작권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2차 저작권) 월 정액제. 무제한 다운 시 작가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표준안이 없음. 밀리의 서재는 25회 다운하면 전자책 한 권 산 것으로 치고 있음. 그들이 정한 것임. 작가마다 다르고 출판사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다름. 출판사 내부적으로도 바뀌기도 함.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하게 토대가 세워져야 함

■ (작가노조) 이런 면에서 작가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지금 만든다고 하더라도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임의단체가 되는데,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무산 때문임. 문체부의 잘못이 큼. 국회의원의 잘못보다도 문체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함.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발로 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된 것임. 1차 책임은 문체부. 21대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어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작가노조의 설립이 필요함. 한국작가회의는 작가 권리 위하지 않고 있음. 한국의 문인단체들의 가치 연대를 목표로 하는 단체이지,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아님. 그 단체의 구성원 중 특히 시인이 많고 권리는 중요하지 않음. 따라서, 생업이 달려 있는 젊은 작가들과 거리감이 큼. 국가에서 정책 세울 때 그런 단체의 의견 수렴하는데 그런 단체들 정작 작가 권리 이야기하지 않고 있음. 그러므로 더욱 노조가 필요함. 작가노조에 대해 오해하는 점들이 있는데, 출판사와 작가 사이 권리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작가와 국가와의 관계가 더 큼. 예술가들은 소속 단체나 기관과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국가 정책에 따라 너무 많이 변화하니까, 국가 정책과의 협상 과정에

서 작가노조가 필요함. 지금은 정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부분 예술인이 배제되고 예술인 권리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단체가 가서 이야기하고 있음. 예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법적인 문제들과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함.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항해 투쟁하거나 가치를 이야기하는 단체의 성격은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음

■ 물론 작가노조는 복잡한 문제임. 엄연히 작가들은 개별 주체여서 개별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어떻게 규합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임. 그래서 뭔가 문학으로 여태 혜택을 받았던 중견작가들이 신인 작가들을 위해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는 지점으로 나서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작가노조를 만들어야 함.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주요 작가들이 있음. 많은 신인이 말할 때 그 윗세대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야 사회에서 더 들어주는 이들이 많아짐. 지금은 중견 작가가 해야 할 책무가 큼

9. ○○○ 동화작가 심층면접 (J)

■ (문학상/공모전 상금) 구분이 되지 않음. 출판사가 운영하는 공모전은 대부분 상금이라기보다는 선인세인 경우가 많음. 저작재산권 양도 요구하는 문학상에서 주는 돈은 상금도 선인세도 아님. 돈을 좀 더 많이 주는 매절원고료이며, 저작재산권을 양도해주는 대가임. 일반 문학상도 엄밀히 말하면 상금이 아님. ○○○에서 하는 '박지리문학상'은 창작지원금을 주고, 책을 출간하면 인세도 지급하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임. 이런 경우를 제외하곤 출판사 공모전에서 상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음. 상이라는 이름으로 작품 뽑고, 상금 대신 선인세를 왕창 주는 것임. 그래서 아예 공모 요강에서부터 상금 대신 고료라는 말을 쓰거나, 상금이 선인세라고 밝히는 출판사들이 많음. ○○, ○○○, ○○○○○○○, ○○○, ○○○○○ 등등 모두 그렇게 하고 있음. 또 책을 판매하면 인세가 발생하는데, 그 인세가 상금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음. 이런 방식으로 상금이 상금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음. 출판사들이 수지타산 등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상금 없는 문학상들이라고 할 수 있음. 출판사에서 주최하지 않는 문학상 공모도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나다움어린이책 창작공모전' 같은 것은 선인세가 아닌 상금이 주어짐

■ (문학상/공모전 안내 및 계약서 체결) 공모 요강에 나와 있으니 안내를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응모작가 대다수가 미등단 작가거나 신인작가들이라서 공모요강만 보고 이해할 수 있을지는 걱정스러움. 계약서 작성은 출판사마다 다를 것임. 일반적으로 수상작으로 결정되면 출판사 편집부에서 수상자와 연락해서 계약서 쓰고, 시상식 후에 상금을 받음. 상금을 시상식 전에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음

■ (문학상/공모전 저작권) 정채봉문학상, MBC창작동화, 천재교육 밀크티창작동화상 그런 데는 저작재산권 양도를 요구하는 문학상들이니 당연히 주최 측이 가져가며, 작가에게는 저작인격권만 남김. 그러나, 일반 문학상의 수상작들은 저작권이 수상자에게 있으며, 출간도 출판권설정으로 진행함. 권정생문학상, 어린이와문학 문학상, 창원아동문학상 박지리문학상 등은 많건 적건 창작지원금을 주고, 저작권은 당연히 작가에게 있음

■ (2차 저작권 및 전송권) 계약서 쓸 때 2차적 저작권이 뭐냐고 물으면 편집자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줌. 이를테면 2차 저작권은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걸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전송권은 E- Book으

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 것이라고 말해줌. 그런데 요즘은 작품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니까 편집자가 모르는 용어들도 많음. 용어를 알아도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수익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작가의 저작권료는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계산하고 책정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음. ◯◯ 같은 큰 출판사는 저작권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곳에서 알아서 하고, 작가에게도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음. 출판사 측에서 작가에게 설명을 얼마나 잘 하느냐도 있겠지만 문제는 작가가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며, 이 점이 당혹스러운 부분임

■ (2차 저작권 및 전송권 안내)신인작가들은 대체로 계약할 때 편집자에게 설명을 듣게 되고, 선배나 단체 저작권교육을 통해 알기도 함. 그러나 막상 닥쳐야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됨

■ (도서 출간시 계약)어떤 계약을 하느냐에 다르겠지만, 출판사에서 기획하여 작가에게 그에 맞는 글을 의뢰하는 작업들, 그러니까 전집이나 시리즈물, 지식정보책 같은 경우에는 작업 의뢰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계약서를 쓰게 됨. 전집이나 시리즈물은 여러 작가가 동시에 작업하기 때문에 모든 작가가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할 때는 면대면이든 전화든 메일이든 작가와 편집자 사이에 질의응답이 이루어짐. 그러나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정도이지 계약내용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아님. 전집, 시리즈물은 그 작업에 참여하는 작가 모두에게 동일한 계약서가 적용되므로 개별 작가가 요구한다고 해서 수정을 해주거나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지는 않음. 작가가 계약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면 계약을 못하게 되며, 글을 쓰다가도 계약은 파기됨.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렇게 진행됨. 이런 경우는 2차적 작성권 관련해서도,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작가가 수정을 요구할 수 없음.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됨. 저도 초고 쓰고 계약 조건이 안 맞아 계약이 중간에서 멈추고 작업도 중단한 적이 있음. 모 작가도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 요구했다가 출판사가 거부하여 계약을 하지 않았음

■ (출판권설정계약시기) 출판권 설정 계약의 시기는 천차만별임. 제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쓸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서부터 쓴 경우가 있음. 또 구상단계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초고 쓰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문학작품의 경우 대부분 작가가 원고 완성 후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고, 출판사에서 편집회의를 거친 후 연락이 와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으며, 이게 일반적임. 물론 그 후에 수정작업에 들어가기도 함. 가끔 책이 나온 후에 계약서를 쓰기도 함. 이런 건 그저 실수라고 볼 수 있음. 어린이청소년책 쪽에서는 서면 계약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극히 적은 편임

■ (출판권설정계약방법) 예전에는 계약서 쓸 때 무조건 면대면으로 했지만, 요즘은 우편으로도 하고, 메일로 하기도 함. 메일로 계약서를 먼저 보내줘서 살펴보고 수정요구하거나 계약 조건이 안 맞아 거절하기도 함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경우, 대부분 출판권설정 계약서 안에 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음. 작가와 출판사의 저작권료 배분 비율도 정해져 제시됨. 가끔 2차적저작권을 세분화시켜 따로따로 배분비율을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가 출판사가 미리 정해 놓음. 특약으로 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님. ◯◯출판사와 계약할 때 2차적저작권 관련 조항은 빼 달라고 요구해서 뺀 적도 있으며, 배분율을 조정한 적도 있음. 조항 수정 요구하다가 계약이 파기된 경우도 있고, 해외출판을 제외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조항은 삭제해 달라고 해서 삭제한 경우도 있음. 그러니까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논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이건 정말이지 출판사마다 다름

■ (인세 지급) 인세지급도 출판사마다 다름. 계약서 작성 후 초판본 부수에 따른 인세 중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먼저 받고 출간 후 남은 금액을 받음. 2쇄를 찍으면 인세 지급을 안 하고 3쇄를 찍으면 2쇄

인세를 주죠. 4쇄를 찍으면 3쇄 인세를 줌. 그런데 이걸 재쇄 찍은 후 한 달 이내에 주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음. 선인세 지급하는 경우에는 2쇄 찍으면 2쇄 인세 주고, 3쇄 찍으면 3세 인세를 줌. 전자책은 대개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 2차례에 나눠서 주기도 하고, 연 1회 주기도 함. 이것도 회사마다 다를 것 같음. 그런데 주변 작가들 말을 들어보면 그 인세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음. 많으면 몇 만원, 적게는 천 원 단위라고 함. 그런데 지금 시급히 살펴봐야 하는 게 전자책보다 월정액구독서비스로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임. 이게 형편없이 적고, 계산법도 꽤 복잡함. 유럽은 월정액구독서비스업체로부터 저자들의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음. 그냥 시장 논리에 내맡겨 저작재산권 침해가 심각함.

■ (불공정 사례)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 관련한 것임. 저작권법 45조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해도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작가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특약이라기보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안에 2차적저작권 관련한 조항이 있고, 저작권료가 발생했을 때 출판사와 몇 대 몇으로 나눈다고 처음부터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이 비율이 출판사마다 다름. 어떤 출판사는 작가 2, 출판사 8인데도 있고, 작가 3, 출판사 7인 출판사도 있음. 그런데 어떤 출판사는 작가 5, 출판사 5, 더 심한 경우는 작가4, 출판사 6인 경우도 있음. 출판사가 대리중개업을 겸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대리중개 수수료를 훌쩍 넘은 것임. 그러나 이게 계약서 안에 들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해도 '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이런 식의 답변만 듣게 되니 책을 내는 작가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사인을 하게 됨. 이건 강요와 다름 없는 거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매우 불공정함

■ (불공정 사례) 전집, 시리즈물, 학습물 등은 더 심함. 이런 책들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작가가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는 언급도 못함. 출판사가 다 행사하고 저작재산권을 다 가져감.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도 알 수 없음. 출판 계약은 책이 얼마 팔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인세율을 정하고 사인을 하게 됨. 그런데 많이 팔려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어떤 출판사는 인세를 상향조정해 주기도 함. 그러나 오래된 관행이 전집이나 시리즈물, 학습물들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많이 하는데, 이들은 판매부수를 알려주지 않음. 이번에 문체부가 백희나 씨의 '구름빵'을 언급하며 '추가보상청구권'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출판권설정계약의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구름빵'처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의 경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하면 출판사는 책이 얼마 팔렸는지 작가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임. 많이 팔렸는지 적게 팔렸는지 작가는 알 수 없으니 추가보상청구권을 신청할 수 없음

■ (불공정 사례)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니 알 수 없음. 작가연대 회원 중에는 자기가 쓰지 않은 2차적저작물이 시중에 돌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함. 그래서 출판사에게 말했지만 출판사는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저작권료보다 더 많이 드는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고민을 하고 있음.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은 그 자체가 불공정을 발생시킴

■ (불공정 사례) 이와 관련하여 종종 벌어지는 황당하고 심각한 불공정 사례가 있는데 저작물을 팔아넘기는 것임. '구름빵' 같은 사례임. 전집 출간한 출판사가 작가들과 상의 없이 저작물들을 타사에 팔아넘기려 했는데, 이에 작가들이 항의하니 5만원권 상품권을 준다고 하였음. 참으로 황당한 불공정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불공정 사례) '대량납품시 인세 하향 조정'도 심각한 불공정임. 저는 출판계약할 때 이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함. 그럴 수 없다면 대량납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협의한다로 수정해 달라고 함. 출판사에서 검토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음. 저 역시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음. 그러다 보니 원고를 1차로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계약서에 사인하지 못했음. 그 과정에서 오고간 말들.. 잊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떠올리면 참담함.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두어 달 동안 글을 못 썼음. 지금도 떠올리면 눈물이 남. 마음을 다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음. 가깝게 지내는 분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나마 집필 전이라 마음만 상하고 손해는 안 봤다고 하는데 마음은 너덜너덜해졌는데 뭐가 다행인지 모르겠음. 어린이, 청소년 대상 책들은 대량납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일반 도서랑 다르게 이런 불공정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음. 그 다음은 월정액구독서비스 등 저작물 전송 관련해서 인세가 참담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음. 작가의 요구가 반영이 안 되고 있음. 또 출판사가 작가에게 알리지 않고 '밀리의 서재' 같은 월정액구독서비스업체에 전자책을 넘겨주는 것도 최근에 발생하기 시작한 불공정 사례이고, '아이윙'에서 그림책카드를 만들어 영상으로 그림책을 볼 수 있게 했는데, 문제는 작가들이 이런 작업이 진행되어 출시되도록 알지 못한 사례가 있음. 불공정 사례는 꼽다보면 한도 끝도 없음

■ (어린이청소년책 작가연대 활동) 회원들 대상으로 저작권법과 표준계약서, 계약서 작성법을 강의하고 있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다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음. 또 현재의 저작권법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조항들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논의하고 있음

■ (기타) 최근 저작재산권 양도를 전제로 한 문학상 문제가 불거졌고, 백희나 작가가 린드그렌 문학상을 받으며 '구름빵' 문제가 다시 이슈화되었음.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추가보상청구권'을 이야기했음. 반가운 일이지만,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하면 작가는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알 수 없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출판사는 책이 얼마 팔렸는지 작가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책이 많이 팔렸는지 적게 팔렸는지 작가는 알 도리가 없으니 추가보상청구권을 신청할 수 없음.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니 알 수 없음. 그러나 이를 문제삼을 수도 없음. 문제라 여겨 소송을 해도 이기기 힘든 것이 현실임. 법은 당사자 간의 계약, 약속이 우선이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임. 물론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할 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작가에게 있다고 하지만, 몇몇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본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음. 게다가 출판사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 받으려 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외의 모든 권리를 소유하기 위해서이니,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작가에게 남겨두지 않으려고 함. 그래서 전부를 양도해도 계약기간을 정해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 또한 해결책은 아니었음. 계약기간 동안 저작물을 제3자에게 팔아넘길 수도 있기 때문임.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함. 그래서 필요한 것은 45조 개정이다, 전부를 양도해도 제3자에게 저작물을 팔아 넘기지 못하게 해야 하고, 계약기간을 반드시 설정하게 해야 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작가 고유의 권리이니 출판사가 권리행사시 작가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젠 시대가 바뀌어 종이책만 만들어내지 않고, 전자책, 오디오북, 디지털그림책 등등 문학작품이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음. 새로운 방식은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건 새로운 방식과 구조를 만들 때 저작권에 대한 고려가 극히 부족하다는 것임. 기업이나 국가가 작가의 창작활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할지,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장할지에 대한 생각이 지극히 약함. 콘텐츠 '산업'의 측면에서만 저작권을 다루려고 하고 있음. 창작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먼저 생각하지는 못하더라고 동시에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함

■ (기타) 각종 불공정행위,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 어떤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건 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몰이해임. 모 학습지 회사가 작가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지에 실어 돈을 버는 일이 발생하여, 해당 작가들이 저작권료 지급을 요청했는데 주지 않았고 반복해서 학습지에 무단 게재하였음. 결국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놀랍게도 판사가 기각을 시키거나 기소유예를 판결하였음. 수십 명의 작가가 당했고, 이 회사는 반복해서 이런 무단 게재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음. 법이 피해자 편을 들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정하긴 해야 한다고 봄.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집행자들, 정말 이해할 수 없음

■ (기타) 코로나로 인해 작가들 피해가 적지 않음. 취재가 중단되어 출간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했음. 강연이나 강의는 다 취소되고 연기되었음.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예년에 봄학기면 팔리던 책이 팔리지 않아 인세 수입이 감소한 것임. 작가도 코로나 피해를 입었는데 그 어디도 작가의 피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재난지원을 하지 않음.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작가는 해당되지 않음. 문제가 많아 딱히 할 말은 없지만 그나마 20대 국회에서 특례로 문화예술인 고용보험법이 통과되었는데, 작가들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음. 왜 작가는 늘 예외인지 모르겠음. 답답함

10. ◯◯ 시인 심층면접 (K)

■ (공모전/문학상 불공정 사례) 예술 분야 어디에나 불공정 사례는 존재함. 특히 등단 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는 심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맥, 학연 등에 따른 것들이 대부분임. 아는 사람, 아는 후배, 부탁받은 사람 등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철저하게 응모자 이름과 주소 등을 가린 채 심사를 해야 함. 그리고 대학이나 외부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됨. 아무리 사심이 개입하지 않게 한다고 해도 본심에 자신이 가르치면서 본 작품이 올라오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음. 그래서 어떤 양심적인 교수님은 그런 불공정 사례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심사 의뢰가 들어오면 거절을 하거나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나 어디 신문사에 심사 들어가니까 거기는 아예 투고하지 마라. 내 눈에 보이면 일부러 떨어뜨릴 거니까.' 라고 말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실천한다고 함

■ (등단 장사) 이런 것을 소위 등단 장사라고 하는데, 자본력을 갖고 있는 출판사의 경우는 그런 등단 장사가 거의 없음. 그리고 자본력이 없는 출판사라도 작가적 양심과 문학적 가치관이 또렷한 대표가 운영하는 잡지도 불공정 사례가 일어나지 않음. 그러나, 돈을 벌려고, 출판사 운영 비용이나 직원 월급을 확보하려고 그런 등단장사를 하는 곳이 여전히 있음. 그런 잡지를 3류 잡지라고 이야기함. 제가 가르치는 성인반 학생들 중에도 그런 3류 잡지의 등단 과정을 거쳐서 데뷔한 경우가 꽤 있음. 막연히 작가가 되고 싶은 심리를 악용한 사례인데, 나중에는 그렇게 등단한 분들은 대부분 후회를 하고 다시 재등단하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와서 배우는 경우가 많았음. 등단 잡지를 사 놓고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지 못하고 있다가 몰래 버렸다는 경험담을 들려주던 제자도 있었음

■ (신인상 심사 선정 과정) 솔직히 말하면 공정하게 공개하고 말고 할 정도의 투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소위 말하는 1류 잡지나 내실있게 운영하는 중소 문예지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투고자 수가 10명 내외인 경우도 있음. 저도 20명 정도 투고자가 있는 곳(중소 문예지)의 심사를 맡은 적이 있는데 기본

실력을 갖춘 사람을 가려내자 3명밖에 남지 않았음. 그만큼 중소문예지엔 실력을 제대로 갖춘 분들이 투고를 하지 않는다는 뜻임. '총 투고자 20명, 예심통과자 3명' 이런 내용을 심사평에 쓰는 것 자체가 그 잡지의 인지도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부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등단 시스템의 문제) 소위 A급 문예지나 A급 신문사를 통해서 등단하지 않으면 좋은 잡지에서 청탁의 기회도 잘 오지 않을뿐더러, 소위 말하는 메이저 출판사에서 시집 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움. 그러니 처음부터 A급을 통해서 등단해야만 인정받는 풍토가 문단에 자리하게 된 것임. 이런 풍토는 메이저 출판사로 좋은 원고가 몰리게 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킴. 같은 원고를 가지고 메이저 출판사에서 시집을 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판매량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메이저 출판사에서 시집을 내려고 함

■ (기타) 뉴스페이퍼 같은 문학 전문 신문사에서 A급 출신들의 작품과 소식만을 다루지 않고 B급 출신이어도 실력있는 작가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활동을 알리는 역할을 더 많이 하면 좋겠음. 사실 이 작업이 지루할 수도 있음. B급 출신들의 문학적 역량이 한계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그럼에도 실력이 있는 사람은 분명 있음. 안 찾았을 뿐임

11. ○○○ 시인 심층면접 (L)

■ (원고 청탁) 간소화한 청탁서가 오기 때문에 내용의 파악이 어려움. 지금까지 낸 단행본이 10권이 넘는데 개중에는 계약서가 없는 곳도 있음. 계약을 먼저 요구하기 어려웠음. 창간 후 100명의 신작 시를 모집하던 곳이 있었는데, 청탁서와 함께 정기구독 요구가 같이 왔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곳에서 청탁이 더이상 오지 않았음. 문학계 출판계의 관행이나 문화임. 기피 작가 목록이 블랙리스트처럼 만들어짐

■ (원고 청탁) 최근 모 문예지에서 수상하여 데뷔한 작가에게 데뷔한 문예지 500부를 사라고 강요했던 등단장사 사례를 당사자에게 들었음. 그 문예지는 나에게도 발행인이 전화를 걸어와서 "특집 좀 하자."고 반말로 이야기하였음. "시 좀 써서 보내봐. 시간 줬으니까 하자." 이런 식으로 전화로만 이야기하고, 원고청탁서를 요청해도 보내지 않음. 그래서 다른 사유를 둘러대며 거절했음. 만약에 "일을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면 또 한 번 블랙리스트가 될 테니 그렇게 요청할 수는 없었음. 이런 식의 대우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일어남

■ (출판 계약) 계약서를 쓸 때도 계약하고 싶다는 메일이 정중하게 오면 "지금 당장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라고 약하게 거절함. 그러면 "그냥 만나서 차 한 잔 해요. 밥 한 번 해요."라고 반응이 옴.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가면 그 자리에서 계약서가 나옴. 밥 먹다 말고 계약서를 검토하니 2차 저작권, 수출 등의 내용은 미처 못 살펴봄. 공과 사가 뒤섞여있고. 공은 없고 사로 운영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낌

■ (문학상/공모전) 문학상을 노작, 현대, 이육사시, 현대시작품상을 받았음. 이 중에 이육사문학상은 단행본에 주는 상이라 상금만 있었고, 나머지는 수상작품집이 출간되었음. 연보와 대표작을 추려서 주는데, 요구만 있지 계약서 없고 원고료 없고 재수록료 없음. 계약이 아예 없이 진행되다가 그냥 단행본이 툭 나옴. 이 과정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짐. 현대문학상 후보에 올라서 들러리처럼 수상작품집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재수록료는 받았지만, 계약서는 없었음

■ (문학상/공모전) 현대시작품상은 시 10편, 자전에세이 40매, 시인과의 인터뷰 50매, 평론 두 편이 실리는데, 원고료는 없음. 문예지 특집으로 실리는데 해당 호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분량임. 상금 500만원을 받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시상식 날 술값도 내야 함. 평론가 비용은 따로 지급해야 하고 3, 40매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임. 그러다 보니 너의 인맥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작가에게 맡김. 상을 받고 그 뒤에 겪는 것은 다시 돌려주고 싶음. 자율과 고정된 문화는 다른 이야기임. 기본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진행됨

■ (문학상/공모전) 상을 안 받고 싶을 때도 이런 환경 속에서는 거절을 못 함. 예비 후보를 통보하는 곳은 미당문학상 뿐이고, 그 외에는 그냥 수상작이 나옴. 심사에도 참여해봤는데, 예심 절차가 없었음. 미당문학상 때도 후보가 되었는데, 올해 발표한 시를 모아 달라는 요구를 받음. 이미 읽어야 하는데 이름만 보고 후보로 선정하고, 이후에 읽는 것임. 상 받으려면 비즈니스 잘 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옴. 작품을 읽지 않고 해버림. 별별 문예지까지 다 보고 읽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많은 걸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방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음. 공정한 시스템이 아님. 거의 공로상 같은 느낌임

■ (문학상/공모전) 단행본 인세는 증쇄할 때마다 정산하고. 월말마다 들어옴. 전자책은 몰아서 정산하는데 한 해에 할 때도 있고 1분기 2분기 나누기도 함.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정산은 잘하는 편임

■ (저작권 해외 수출) 계약서 마지막에 수출권 항목이 있었는데, 계약 당시에는 요원한 부분이었음. 그러니 반반의 책임이 있음. 대체로 수출권은 출판사가 알아서 하는 식으로 처리됨. 이후에 일본의 어느 출판사로부터 번역 요청이 왔는데, 답변 보내고 무소식이었음.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칠십몇만 원 입금과 동시에 선인세가 들어옴. 그래서 무슨 돈인가 싶어서 전화해서 계약 성사됐냐 물으니 그제서야 그렇다고 이야기함. 근데 계약서 쓸 때 왜 연락도 없었냐고 물었더니, 계약서에 "출판사에 일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함.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었음. 번역 시 번역가와 작가가 7:3으로 수익을 나누게 됨. 작가 입장에서는 어떤 번역가가 번역을 했는지도 모르고 출판사가 많은 지분을 가져감. 그것이 원래 회사의 방식인지 편집자의 실수인지는 알 수 없음. 문제를 제기하면 편집자의 실수라고 이야기함. 결국 해외에서 출간된 책을 아마존에서 구매해서 보았음. 결과물에 관한 보고 없음. 작가는 서류상으로만 갑이지 사실상 을임. 출판사의 자세는 작가가 특별히 까다롭게 요청할 때만 보고하는 것이 현실임

■ (재수록료) 시 같은 경우 재수록료가 비대해지며 출판 시장에 시선집이 안 나오게 되었음. 재수록료도 출판사 지분이 너무 많음. 이런 관례를 처음 만든 게 ◯◯임. 교과서 참고서 재수록. 출판사가 점점 영리하게 자기 권익을 챙겨가는 동안 작가들은 원고료도 동결되었음

■ (작가 노조) 노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어린이청소년책 작가연대처럼,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있어야 함. 현재 작가단체들은 국가 예산을 나눠 먹고 있으며, 여러 사업도 하고 있음. 그러나 단체에 소속된 회원의 기본권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음. 작가회의 회원인데 회비를 낸 적 없음. 처음 들어오라고 할 때는 작가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가입하고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음. 10년이 되어가는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함. 특히나 작가회의는 크게 관리하고 파생된 공생관계에 있는 문예지들이 있는데, 그 이익관계 안에서 작가의 편보다는 출판사의 편을 들고 있음

■ (작가 권익) 직업이 국가가 분류한 법 안에서 프리랜서인데, 코로나 안정자금 중에서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 받으려고 보니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원천소득 증명을 하라고 하는데, 작가로서는 구제책을 손쉽게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었음. 코로나 특수 상황이니 11, 12월을 증명하고 이후 얼마나 줄었는지 월별 원천소득 증명서를 내야 함. 소액으로 수없이 많은 곳이 있는데, 하나하나 원천징수 영

수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니 거의 불가능함. 또한 월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연간 수입 나누기 12를 해야 함. 작년 연간 수입 확인하려면 올 7월이 되어야 알 수 있음. 예술가는 돈을 못 벌어도 직업이 예술가인데 세무사랑 상담할 때도 '그래서 직업이 없나요?'라는 소리를 들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없음. 프리랜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은 당연히 있지만, 세금에 비해 받는 혜택 없음. 예술가는 노동자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노동하고 있으며, 그 노동에 대한 권익을 문예지와 출판사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작가 권익) 예술가는 법적으로 직업 인정이 되지 않음. 지워진 존재인 듯 함. 이 대목에서 불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함. 제도화되지 않아서 세금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함. 현재 80세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데, 노인 부양 부녀자의 위치에서 혜택도 없음. 대출도 못 받지만, 애매한 수입 아래 지원도 못 받음. 이런 위치가 멍에처럼 느껴짐. 이런 상황에서 출판사가 야금야금 저작권까지 지분을 넓혀간다면 벼랑 끝에 서 있다가 거기서 툭 건드리는 느낌. 상을 받으니 유명세나 명예만 높아지고. 이미지만 남음. 수상작품집도 그런 식으로 운영돼서 그 상으로 뭘 할 수가 없음

■ (작가 권익) 분기별로. 건강보험료, 해촉증명서 등등 활동 많음. 다 합치면 50번은 받아야 함. 1회 연결된 특강들도 상근자처럼 등록된 사례가 있고. 해촉증명서를 받아서 건강보험에 내면 올라가기도 하고 환급되기도 함. 프리랜서의 수입 패턴에 어울리는 제도가 하나도 정비된 게 없음. 매번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벌여야 함. 예술가로 살기 힘듬

■ (기타) 계약서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면 함. 항목만 많아지면 무의미하고, 원고를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이 청구됨. 표준계약서 개선된다고 하지만, 작가의 입장을 반영하기보다는 출판사의 입장만 듬뿍 반영하고 있음. 문장이 협박처럼 느껴지는 건 모호하기 때문임. 무엇에 관한 손해배상인지 명확해져야 함. 모호하면 출판사가 악용하기 쉬움. 모든 원고청탁서와 계약서에 원고 납부 기한만 적혀 있고 원고료와 인세 지급 기한은 없음. 불공정함. 일례로 작년에 모 문예지에 시 한 편 게재했는데, 아직 원고료 못 받음. 독촉할 때만 줌. 나쁘다는 인식도 없음. 사정이 있을 때는 그래도 된다는 낡은 문화가 만연해 있음. 낡은 방식을 고수함. 후배들이 뉴스페이퍼에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 기사를 읽고서 미안했음. 여태껏 왜 이런 걸 생각을 못 했는지, 질문을 받고 깨달음. 그 문화에 젖어 있던 나쁜 습성이 있음. 작가가 인식하도록 깨어나야 함. 그래서 노조가 필요함. 사적인 정보 공유는 전혀 없음

■ (기타) 모 출판사에서 산문집을 내려고 했는데, 시 열 편이 실리게 되어 재수록료가 발생한 적이 있음. 한 편에 구만 원씩 구십만 원이 소요되는데, 출판사에서 재수록료를 인세에서 제하자고 함. 불공정한 처지에 놓여서 놀랐을 때에만 깨어남. 민감하게 굴면 작가가 다침

■ (기타) 동료작가도 ○○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협의하여 책임이 편집 위원에게 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이름을 적고 고소하였음. 출판사 쪽에서는 당사자가 편집위원이 아니라 편집자라고 해서 고소 성립이 안 됨. 다시 편집자로 고소해야 하는데. 편집자를 고소하면 그 사람만 잘리고 끝날 것임. 제일 약자만 희생되고 끝날 것임. 대형출판사의 습관적 저작권 침해 타파하려다 그 교묘함에 치를 떨고 그만둠. ○○에는 작가를 함부로 대하는 관행이 있음. 당시 처음 한 말이 다른 유명작가들도 다 저작권 침해로 이야기로 잘 풀었다는 이야기였음. 대화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함. ○○는 제일 점잖고 이상한 방법으로 권력을 남용함. 문학상이 되게 많은데, 작가회의에서 자기 출판사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상에 불과하지 않나 싶음. 어떤 작가한테 상을 주려고 없던 상도 만들고 있음. 영화 속 조폭 같음. 작가 포섭이나 불상사 생겼을 때 대응 방식 등. 모 작가 표절 사태 때 자회사 대표자가 책임지고 사퇴하였지만, 몇 년 뒤 복귀해서 다시 대표가 됨

■ (기타) ○○○○ 창립 이후 아예 상업성이 공표됨. 문학상을 출판사가 몇 개씩 만들며 스타 작가를 만드는 시스템이 구축됨. 모든 작가를 ○○○○에 빼앗기는 느낌이 들며 2000년대 초 ○○나 ○○가 추천제나 투고제였다가 상으로 바꾸고. 다 ○○○○를 따라 하게 되었음. ○○○○에는 1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음. SNS에서 신간을 일제히 떠들어 댐. 알라딘 한 줄 평이 올라와서 알고 보면 직원들이 올린 것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블로거들도 광고성이라고 적는데 작가는 왜 그보다도 인식이 없는지 답답함. 낙후된 것임

■ (기타) ○○○○ 문예지 출신 시인들, 여성 시인들이 그들의 큰 판에 낙동강 오리알처럼 숨겨져서 성추행을 당함. 지방에서 상습적인 성추행이 벌어짐. 그런 시인들을 자기 식구로 받아들임. 그 문예지 발행인도 몇 번 논란이 있었는데, 점점 세를 불려가고 있음. 예전에는 ○○○이 하는 문예지와 출판사를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그 문예지가 중심이 되었음. 불법 천지라고 할 수 있음. 출판사는 정말 미개함.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 (기타) 등단 제도 자체가 엄청 문인들이 사수해온 시스템임. 지켜야만 그 모든 게 이루어짐. 음지에서 얻는 이익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부패의 온상임

■ (기타) 저작권 신탁 단체가 필요함. 저작권 위원회를 활용할지도 고민해야 함

■ (기타) ○○○○와 ○○의 결탁이 빚어내는 권력 남용이 문제임. 최근에 더 심해짐. 문재인 정권 이후 도종환 장관 등과 더불어서 더욱 자기 식구를 챙김. 한국문학의 대표성을 가진 ○○○○○○라고 하는데, 좋은 곳이 아님. 성폭력 해결 안 되고 은폐됨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발행인 : 박종관
발행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

인쇄일 : 2020.10.05.
발행일 : 2020.10.07.
인쇄인 : 한국학술정보(주)